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한 광역지자체 사회복지기능 개편 방안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한 광역지자체 사회복지기능 개편 방안

연구진

강 영 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지 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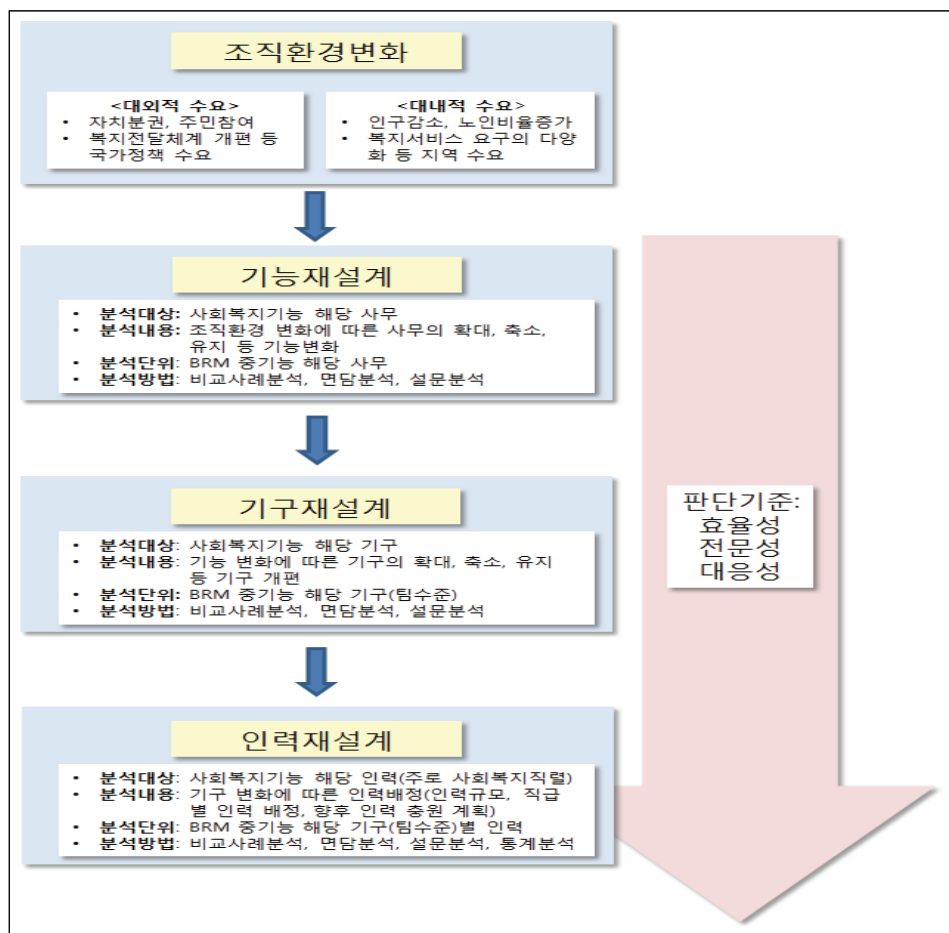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재검토해보고, 이에 부합하는 기구 재설계 및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복지기능은 기존의 지원 중심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치분권 기초가 강화되고 주민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분절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통합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을 재설계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역지자체의 기존 사회복지행정 업무는 주로 중앙의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집행적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하였으나 자치분권 기초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복지행정 영역에서도 기획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사회복지기능 수행의 적정 기구 설계와 이에 따른 적정 인력 규모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연구 방법

- 조직환경변화에 따른 복지기능재설계와 이에 부합하는 광주광역시의 적정 기구 및 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복지기능재설계는 지자체 BRM의 중기능 수준에서 분석할 예정이며, 이에 부합하는 적정 기구 및 인력 재설계 방안은 현행 팀수준에서 제시할 예정임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3. 연구 결과

□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직적 전달체계상의 복지수행 현황 및 유사지자체의 조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에 비해 기획·계획 기능은 약하면서 기초지자체에 비해 집행 사무의 포괄범위가 좁으나 광역도에 비해 광역시의 경우 관리감독 강화 수요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
 - 기획기능 강화 및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타 광역지자체와 기구 및 인력 규모 비교 결과, 광주광역시는 평균 기구수 4.6개에 못미치고, 사회복지직렬 인력 수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표 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요약

구분	분석 결과	검토사항
수직적 전달체계 비교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수행 기구는 총 29개 과이며, 광주광역시는 4개의 과급 기구에서 수행, 기초지자체인 광산구청에서는 5개과에서 수행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사무의 종류와 양은 중앙정부 또는 기초지자체에 비해 다소 적음 - 중앙정부에 비해 기획·계획 기능은 약하면서 기초지자체에 비해 집행 사무의 포괄범위가 좁음 ■ 법령 검토 결과 지자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동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대다수이므로 광역과 기초의 업무 배분 방식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음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분야 적정 사무의 범위 검토 ■ 기획기능 강화 필요 ■ 광역시의 경우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여부 검토
유사지자체 조직 비교 분석 결과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기구수는 평균(4.6개)에 약간 못미침 ■ 광주광역시와 유사하게 4개의 과급 기구를 설치한 지자체들은 과별 기능편제 방식이	■ 기구편제의 유사성이 복지 수요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한 검토 ■ 복지수요의 차별성에 따른

구분	분석 결과	검토사항
	거의 유사함 ■ 광주광역시는 광역지자체 평균에 비해 사회복지직렬 비율이 낮음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사하거나 약간 높음)	기구 편제 차별화 검토

□ 자치분권 강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조직재설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능재설계 모형은 다음과 같음
 - 조직환경 분석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환경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성과지향적 조직 설계를 목적으로 하며, 복지분야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검토하고, 복지수요를 나타내는 지표 추이 및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게 됨
 - 기능 분석은 현재 광주광역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 중 위탁, 타부서이관, 확대·축소·폐지, 신설 기능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효율지향적 조직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표 2〉 기능재설계 모형

구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성과 지향적 조직 설계 목적 (조직환경 분석)	■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 문헌분석
	■ 광주광역시 복지수요 분석 - 지표별 복지수요 분석 - 공무원 인식 조사	- 통계분석 - 유사지자체 비교분석 - 공무원 설문 조사
효율지향적 조직 설계 목적 (기능 분석)	■ 기능 분석 - 위탁기능 분석 - 이관 기능 분석 - 확대·축소·폐지 기능 분석 - 신규 기능 분석	- 공무원 설문 및 면담 조사 - 전문가 FGI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과 관련된 환경분석 결과, 조직재설계를 위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이를 대응할 적정 조직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광주광역시의 복지수요지표 분석 및 공무원 설문 조사 결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요, 노인복지, 일자리 수요 등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빗고을 50+일자리 지원사업,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제도, 빗고을·효령노인복지타운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은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사무는 광역이 담당하는 반면, 일선에서의 집행은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주시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성 있는 기획기능,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및 외부 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 환경분석 결과

구분	분석 내용	검토 사항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측면	■ 사회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현황 - 사회서비스원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 광주광역시에서도 2020년 7월 사회서비스원 개원 예정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수행 관련 대응 조직 적절성
광주광역시 복지수요 측면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수요 - 복지수요지표 분석 및 공무원 설문 조사 결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요, 노인복지, 일자리 수요 등이 증가 예상	■ 광주광역시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 적절성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환경분석 결과, 국정과제 및 광주시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획기능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조정 기능이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능분석 결과, 기능위탁 2개, 기능강화 23개, 기능신설 4개, 기능조정 이관할 기능과 이관받을 기능 각각 1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구분			기능위탁	기능강화	기능 축소·폐지	기능신설	기능조정(이관)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	←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가족	여성정책		• 여성가족정책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보육		• 보육시설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평가인증조력지원사업 • 어린이집 지도점검 • 어린이집 안전관리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 사회복지법인 관리(사회복지과)	
		가족복지		•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가족센터 설치, 운영		
	저출산아동			• 돌봄 기능 • 인구정책 컨트를 기능 • 출산장려 업무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복지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기획기능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익성 증가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실국명 (기관명)	구분		기능위탁	기능강화	기능 축소·폐지	기능신설	기능조정(이관)	
	과명	담당명					→	←
		생활보장		• 자활근로사업				• 사회공헌지원 및 기부금 관련 업무 (자치행정과)
		보호복지						
		다문화가족		• 외국인 지원 업무 •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추진 업무				
		고령사회정책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복지		• 커뮤니티케어 사업 적극 추진				
		노인시설지원						
		노인문화지원	• 도심 내 묘지공원 관리 및 운영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시설						
		장애인재활지원						
합계			2개	23개	0개	4개	1개	1개

□ 보건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인력 운용 방안

○ 보건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 운용 방안

- 환경분석 결과와 기능분석 결과, 유사지자체 분석 결과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적정 기구 개편안을 제시하였음

〈표 5〉 기구재설계 검토 결과

구분	검토내용
국단위	■ 검토내용없음
과단위	■ 검토내용없음
팀단위	■ 저출산아동담당 팀 분리 및 명칭 변경 - 최근 중요해지는 인구정책은 기획 업무의 특성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저출산아동담당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아동정책 업무의 집행 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팀(인구정책)으로 분리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은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담당은 아동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아동권익보호 업무를 포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담당으로 명칭 변경 필요 ■ 법인시설관리담당 신설(사회복지과 소속)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과 더불어 점검 기능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업무 수행이 현재 체제로서는 원활하지 못하므로 지도감독 기능 확대 및 시설점검메뉴얼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팀 신설 필요 - 부산(법인시설지도팀), 경북(법인시설지도팀)에서 유사 팀 운영 ■ 사회서비스혁신TF 신설(사회복지과 소속) - 사회서비스원 설립, 커뮤니티케어 등 여러 부처 및 여러 민간 주체들과 협의의 필요성이 있는 국정과제에 대비한 업무 수행 담당을 위해 팀 신설 필요 - 복지정책담당이 수행하였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등의 업무 등을 이관하여 복지정책담당 업무량 조정 및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 통합 운영 ■ 다문화가족담당 이관 및 통폐합(사회복지과 → 여성가족정책관) - 현재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설립 관련 업무를 신설 지역복지담당에 이관한 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합쳐가는 현재 중앙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하여 가족복지담당과 통폐합 고려 필요 - 다문화가족담당 업무에는 고려인주민, 외국인(학생, 근로자) 지원 업무도 포함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다문화'로 명칭 변경¹⁾

○ 보건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인력 운용 방안

- 기구재설계 결과와 유사지자체 비교 분석,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적정 인력 배분안을 제시하였음

〈표 7〉 조직개편이전 인력배분 검토결과

구분			현원 (2019.6월 현재)	검토내용 (추가 인력 요청사항)	검토결과 (*현원기준)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6명	• 여성재단 지도·감독 전담,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의 업무량은 다소 중복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여성정책 발굴 등 기획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1명 배치	7명
		보육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가족복지	4명	(아래에서 검토)	-
		저출산아동	8명	(아래에서 검토)	-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7명	(아래에서 검토)	-
		생활보장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보훈복지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다문화가족	3명	(아래에서 검토)	-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고령복지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노인시설지원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노인문화지원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장애인시설	4명	• 장애인일자리 업무 추가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필요	5명
		장애인재활지원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합계			73명		

〈표 8〉 조직개편이후 인력배분 검토결과

실국명 (기관명)	구분		검토내용 (신설팀 중심)	최종 인력재배분 결과 (*현원기준)
	과명	담당명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보육		7명 5명
		가족다문화	- 가족다문화팀은 다문화가족팀에서 수행하던 사회서비스 설립 업무만을 제외하고 가족복지팀과 다문화가족팀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함 - 여성폭력방지법 등의 개정으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나 다문화가족팀의 인력(팀장 제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7명
		아동복지	- 기존의 저출산아동팀이 인구정책팀과 아동복지팀으로 분리되는 상황이나 기존의 저출산아동팀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정도에 불과함 - 현재 주로 수행하는 아동지원업무, 돌봄시설관리 업무에 더하여 아동학대방지업무가 확대 추세에 있는데 이는 단순 집행 업무가 아닌 조정 등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이어서 업무량(또는 업무강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팀분리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력 유지	8명
		인구정책	인구정책 업무는 정책의 중요성은 높으나 구체적인 업무를 기획하는 단계이므로 많은 인력보다는 기획능력이 있는 소수 인력으로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2명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커뮤니티케어사업 등의 업무가 신설팀에 이관되므로 현재 인력으로 업무량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됨	7명
		법인시설관리	- 법인시설을 전담하여 지도관리하는 유사지자체(대구, 대전, 인천)의 기구의 인력 규모는 3명에서 5명 정도임 - 타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광주 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담 기	3명

실국명 (기관명)	구분		검토내용 (신설팀 중심)	최종 인력재배분 결과 (*현원기준)
	과명	담당명		
			구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므로 우선적으로 3명을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활보장	-	5명
		보훈복지	-	4명
		-	-	
		사회서비스혁신TF	- 광주시에서는 내년 7월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할 전담팀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팀에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으나 업무의 성격이 여러 주체들과 밀도있는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기존의 집행 위주의 업무와 차별화된 성격이 있으므로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전담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업무,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 팀의 업무량 조정 및 사회서비스 업무의 유기적 통합성을 기하고자 함(타지자체 운영 사례 참고) - 현재는 최소 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명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	5명
		고령복지	-	4명
		노인시설지원	-	4명
		노인문화지원	-	4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	5명
		장애인자립기반	-	5명
		장애인재활지원	-	5명
	합계			8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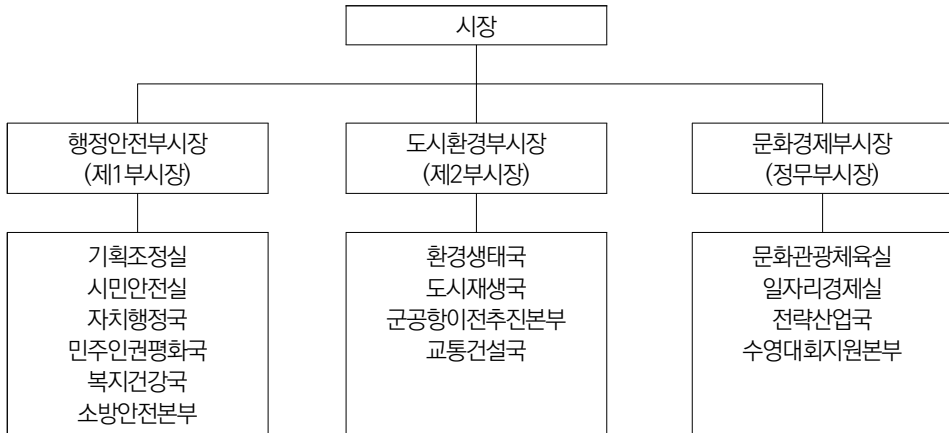
□ 신설 부단체장 역할에 대한 검토

-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제도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민선 단체장 선출을 앞 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비되었으며, 최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부단체장 정수 확대를 예정하고 있음
 - 당시 법 개정으로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2명씩 둘 수 있게 되었음
 - 2000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인구 80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부단체장 제도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그동안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부단체장 정수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부단체장 역할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전문성 보좌역할, 정치적 보좌역할, 매개자적 보좌역할, 독자적 역할 등으로 유형화되거나(이경훈, 2001), 부단체장 운영의 중심이 단체장과 의회 가운데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그리고 기획·자문과 집행 기능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있음(윤영근 외, 2014)
 - 우리나라에서 부단체장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부단체장은 정부부시장의 명칭 정도만 다르고 대동소이함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의 부단체장 제도를 살펴본 결과, 부단체장 운영이 각국의 정치·행정 환경이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주요국의 부단체장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제도의 운영 방식은 다양하지만, 부단체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되, 정책적 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 후 부단체장 운영 방향도 기존 행정부시장의 모호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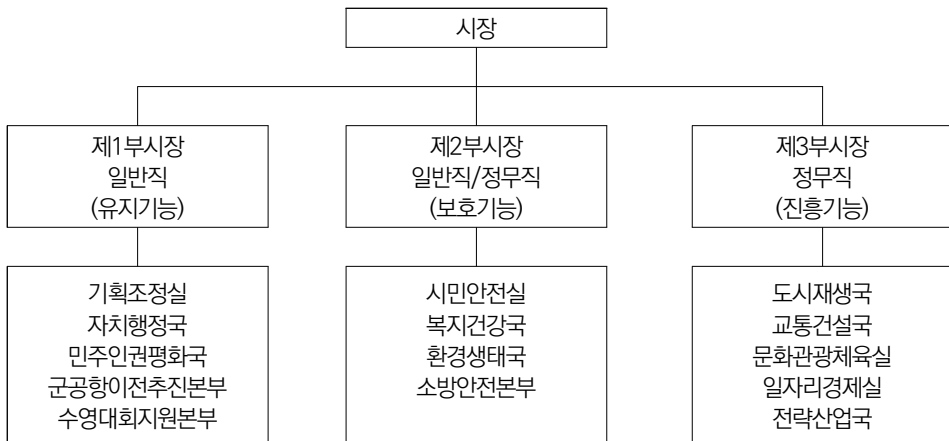
범위를 세분화하여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고,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광주광역시의 부시장은 행정부지사 1인과 2018년 7월 개편된 문화경제부시장 체제임
- 부시장을 1명 증원하는 경우 문화경제부시장은 그대로 두고, 현재 업무범위가 넓은 행정부시장 소관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1안)과 행정기능을 재검토하여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2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제1안) 행정안전부시장 소관 업무는 광주시의 기획과 행정,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민주인권평화국, 복지건강국, 소방안전본부등을 배치, 신설되는 제2행정부시장은 '도시환경부시장'으로 칭하고, 환경생태국, 도시재생국,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교통건설국 등을 배치
- (제2안) 도시의 기능을 유지, 보호, 진흥으로 구분하고 유지기능은 전통적인 행정부시장의 업무로 설정하여 제1부시장으로 두고, 보호기능과 진흥기능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각각 제2부시장, 제3부시장으로 하되, 제1부시장은 일반직으로 하고, 보호기능과 진흥기능을 담당하는 나머지 부시장들은 정책기능을 고려하여 정무직으로 둘 수도 있음

〈그림 2〉 행정부시장 소관업무 분담 (제1안)



〈그림 3〉 행정기능 재설계 후 배치 (제2안)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연구의 체계	7
 제2장 이론적 검토	 9
제1절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배분에 관한 논의	11
1. 정부간 기능 배분	11
2. 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13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정부기능에 관한 논의	17
1. 저출산-고령사회와 정부	17
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지자체의 역할	19
제3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	21
1. 사회복지 전달체계	21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22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27

K R I A

차례

제3장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29
제1절 분석 모형	31
1. 분석 대상	31
2. 분석 방법	32
제2절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33
1. 중앙정부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33
2. 광역지자체 수준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37
3. 기초지자체 수준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40
제3절 기능분류체계에 따른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45
1.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비교	45
2.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비교	61
3. 법령상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75
제4절 유사지자체 사회복지기능수행 현황 비교	85
1.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기구 현황 비교	85
2.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인력 현황 비교	92
제5절 소결	95
 제4장 자치분권 강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97
제1절 기능재설계 모형	99

제2절 조직환경 분석	100
1. 복지분야 국정과제 측면	100
2. 광주광역시 복지수요 측면	111
3. 소결	127
제3절 기능 분석	128
1. 분석 개요	128
2. 기능분석 결과	129
제4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139

제5장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인력 운용 방안 141

제1절 기구-인력 재설계 모형	143
제2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운용 방안	144
1. 검토 요소	144
2. 검토 결과	146
제3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인력운용 방안	149
1. 검토 요소	149
2. 검토 결과	150
제4절 신설 부단체장 역할에 대한 검토	154
1. 논의 배경	154

K R I L A

차례

2. 부단체장 유형	157
3. 해외 사례	161
4. 부단체장 역할 정립 방안	166
제6장 결론	171
제1절 연구의 요약	173
1. 연구 목적	173
2. 연구 방법	174
3. 연구 결과	175
제2절 시사점	188
【참고문헌】	189
【부록】	193

표 차례

〈표 2-1〉 노인복지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화와 중점 영역	19
〈표 3-1〉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분석 대상	31
〈표 3-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부서의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	34
〈표 3-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부서의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	38
〈표 3-4〉 광산구청 사회복지부서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	41
〈표 3-5〉 광산구 운남동 사회복지 부서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	43
〈표 3-6〉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비교	45
〈표 3-7〉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비교	61
〈표 3-8〉 노인복지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결과 요약 ...	75
〈표 3-9〉 노인복지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현황	75
〈표 3-10〉 사회복지사업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결과 요약 ·	78
〈표 3-11〉 사회복지사업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현황 ...	78
〈표 3-12〉 영유아보육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결과 요약 ·	81
〈표 3-13〉 영유아보육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현황	81
〈표 3-14〉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기구 현황	85
〈표 3-15〉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기구 개수 분포	92
〈표 3-16〉 사회복지직렬 인력 현황(광역시도전체)	93
〈표 3-17〉 사회복지직렬 인력 현황(6대 광역시)	94
〈표 3-1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요약	95
〈표 4-1〉 기능재설계 모형	99

K R I A

표 차례

〈표 4-2〉 4대 선도사업별 부처 연계사업 개수	108
〈표 4-3〉 시행주체 4대 선도사업	109
〈표 4-4〉 선도적 수행 필요 기능	110
〈표 4-5〉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광역지자체 기능 변화 예측	111
〈표 4-6〉 고령인구비율(2009~2018년)	112
〈표 4-7〉 노령화지수(2010~2019년)	114
〈표 4-8〉 광주광역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계(2019~2028년)	116
〈표 4-9〉 영유아 인구 추이(2009~2018년)	117
〈표 4-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2008~2017년)	119
〈표 4-11〉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2007~2016년)	121
〈표 4-12〉 사회복지예산비중(2008~2017년)	123
〈표 4-13〉 광주광역시 수요 증가 예상 기능	124
〈표 4-14〉 환경분석 요약	127
〈표 4-15〉 기능 분석 개요	129
〈표 4-16〉 위탁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129
〈표 4-17〉 위탁 기능 검토: 검토 결과	130
〈표 4-18〉 이관할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131
〈표 4-19〉 이관받을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131
〈표 4-20〉 이관할 기능 검토: 검토 결과	132
〈표 4-21〉 이관받을 기능 검토: 검토 결과	132

〈표 4-22〉 확대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133
〈표 4-23〉 축소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135
〈표 4-24〉 확대 기능 검토: 검토 결과	135
〈표 4-25〉 축소 기능 검토: 검토 결과	137
〈표 4-26〉 신규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137
〈표 4-27〉 신규 기능 검토: 검토 결과	138
〈표 4-2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139
〈표 5-1〉 기구-인력 재설계 모형	143
〈표 5-2〉 기구재설계를 위한 검토 요소	144
〈표 5-3〉 기구재설계에 관한 조사 결과: 공무원 의견	145
〈표 5-4〉 기구재설계 검토 결과	146
〈표 5-5〉 최종 기구재설계안	148
〈표 5-6〉 인력재배분에 관한 조사 결과: 공무원 의견	149
〈표 5-7〉 조직 개편 이전 인력 배분 검토 결과	150
〈표 5-8〉 조직개편이후 인력배분 검토결과	151
〈표 5-9〉 현행 지방자치법의 부단체장 제도	154
〈표 5-10〉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부단체장 제도	156
〈표 5-11〉 부단체장의 역할	157
〈표 5-12〉 주요 국가의 부단체장 유형 구분	158
〈표 5-13〉 광역시의 부단체장 사무분장	159

K R I L A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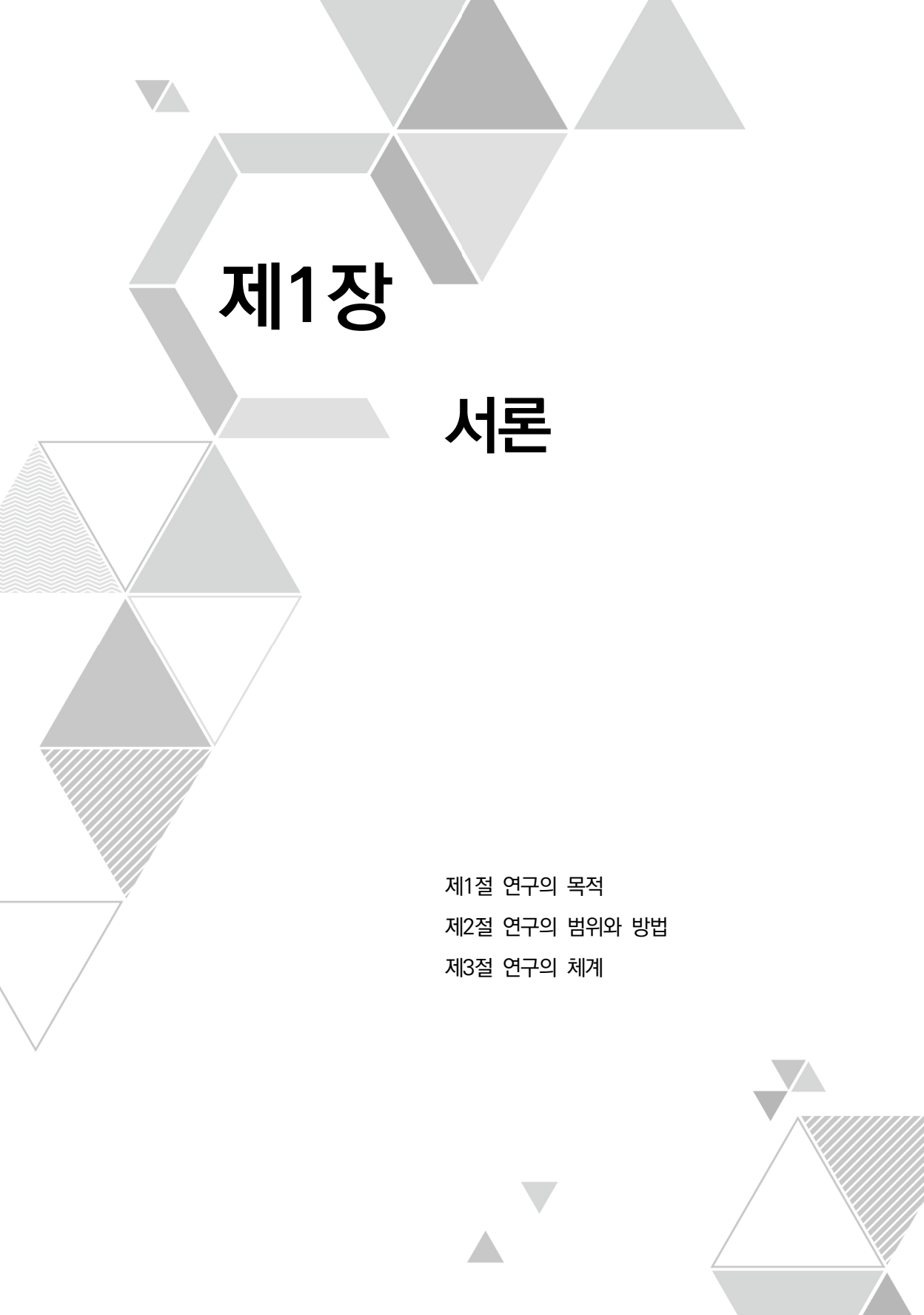
〈표 5-14〉 뉴욕시 부시장의 업무분장	162
〈표 5-15〉 런던시 부시장의 업무분장	163
〈표 5-16〉 동경 부지사의 업무분장	165
〈표 5-17〉 현행 지방자치법의 직무대리 규정	169
〈표 6-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요약	175
〈표 6-2〉 기능재설계 모형	176
〈표 6-3〉 환경분석 결과	177
〈표 6-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178
〈표 6-5〉 기구재설계 검토 결과	180
〈표 6-6〉 최종 기구재설계안	181
〈표 6-7〉 조직개편이전 인력배분 검토결과	182
〈표 6-8〉 조직개편이후 인력배분 검토결과	183

그림 차례

〈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 체계	7
〈그림 2-1〉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판단 기준	13
〈그림 2-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25
〈그림 2-3〉 본 연구의 분석틀	27
〈그림 3-1〉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분석 모형	32
〈그림 3-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부서	33
〈그림 3-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부서	37
〈그림 3-4〉 광산구청 사회복지 부서	40
〈그림 3-5〉 광산구 운남동 사회복지 부서	43
〈그림 3-6〉 사회복지직렬 인력 비율(%)	94
〈그림 4-1〉 사회서비스원 추진체계	101
〈그림 4-2〉 커뮤니티케어의 4대 핵심요소	103
〈그림 4-3〉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104
〈그림 4-4〉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105
〈그림 4-5〉 다양한 재가 서비스	106
〈그림 4-6〉 지역 자율형 케어 체계	107
〈그림 4-7〉 고령인구비율	113
〈그림 4-8〉 노령화지수	115
〈그림 4-9〉 광주광역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계	116
〈그림 4-10〉 영유아 인구 추이	118



〈그림 4-11〉 영유아 인구 증감률(2009년 대비 2018년 기준)	118
〈그림 4-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120
〈그림 4-13〉 영유아 인구 증감률(2009년 대비 2018년 기준)	121
〈그림 4-14〉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122
〈그림 4-15〉 사회복지예산비중(2017년 기준)	124
〈그림 5-1〉 광주시 조직구조	167
〈그림 5-2〉 행정부시장 소관업무 분담 (제1안)	168
〈그림 5-3〉 행정기능 재설계 후 배치 (제2안)	169
〈그림 6-1〉 본 연구의 분석틀	174
〈그림 6-2〉 행정부시장 소관업무 분담 (제1안)	186
〈그림 6-3〉 행정기능 재설계 후 배치 (제2안)	18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이에 부합하는 기구 재설계 및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적정 인력 규모를 도출하는 것임
-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지자체의 복지기능은 기존의 지원 중심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인인구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아동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임
- 또한, 자치분권 기조가 강화되고 주민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분절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
 - 유사한 사업을 분절적인 여러 전달체계로 전달하는 기존 방식의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의식이 커짐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통합 논의-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원 시범 사업-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을 재설계함에 있어 이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 기능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 비해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광역지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음

- 광역지자체의 기존 사회복지행정 업무는 주로 중앙의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집행적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하였으나 자치분권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복지행정 영역에서도 기획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분석 대상

○ 대상범위

-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광주광역시 및 광역지자체의 복지기능 수행 조직 및 인력이 그 대상이 됨

○ 시간범위

- 본 연구의 현황 분석 기준 시점은 2019년 현재
- 데이터 수집 가능 시점에 따라 2016년 말 또는 2018년 말 기준

2) 분석 내용

○ 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배분에 관한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정부기능에 관한 논의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자체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전달체계상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속 기초지자체(광산구) 및 읍면동(운남동)
- 유사지자체(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관련 기구 및 인력 운영 현황

○ 자치분권 강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 광주광역시 자체 복지 수요 및 국정과제 현황 등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인력 운용 방안
 - 사회복지기능 수행 부서의 통폐합, 분할, 신설 등 검토(팀단위)
 - 해당 팀별 적정 인력 도출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의 역할 재검토
 - 부단체장 유형 구분 및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신설 부단체장의 역할 검토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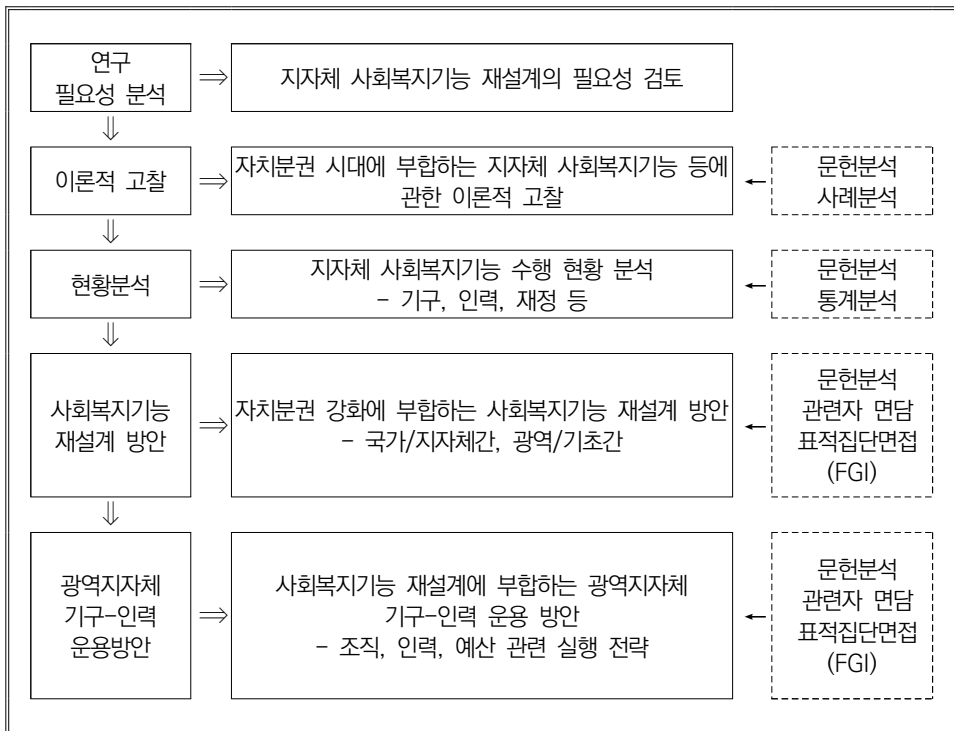
- 문헌 분석 및 사례 조사
 - 지자체 사회복지기능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사회복지분야 국정과제 현황
 - 사회복지기능 수행 부서 현황 조사
 - 부단체장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
- 통계분석
 - 사회복지기능 수행 인력에 관한 통계분석
- 설문 및 면담 조사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수행 부서에 대한 기능재설계 및 인력 수요 관련 설문 및 면담조사
- 표적집단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
 -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도출을 위한 표적집단면담(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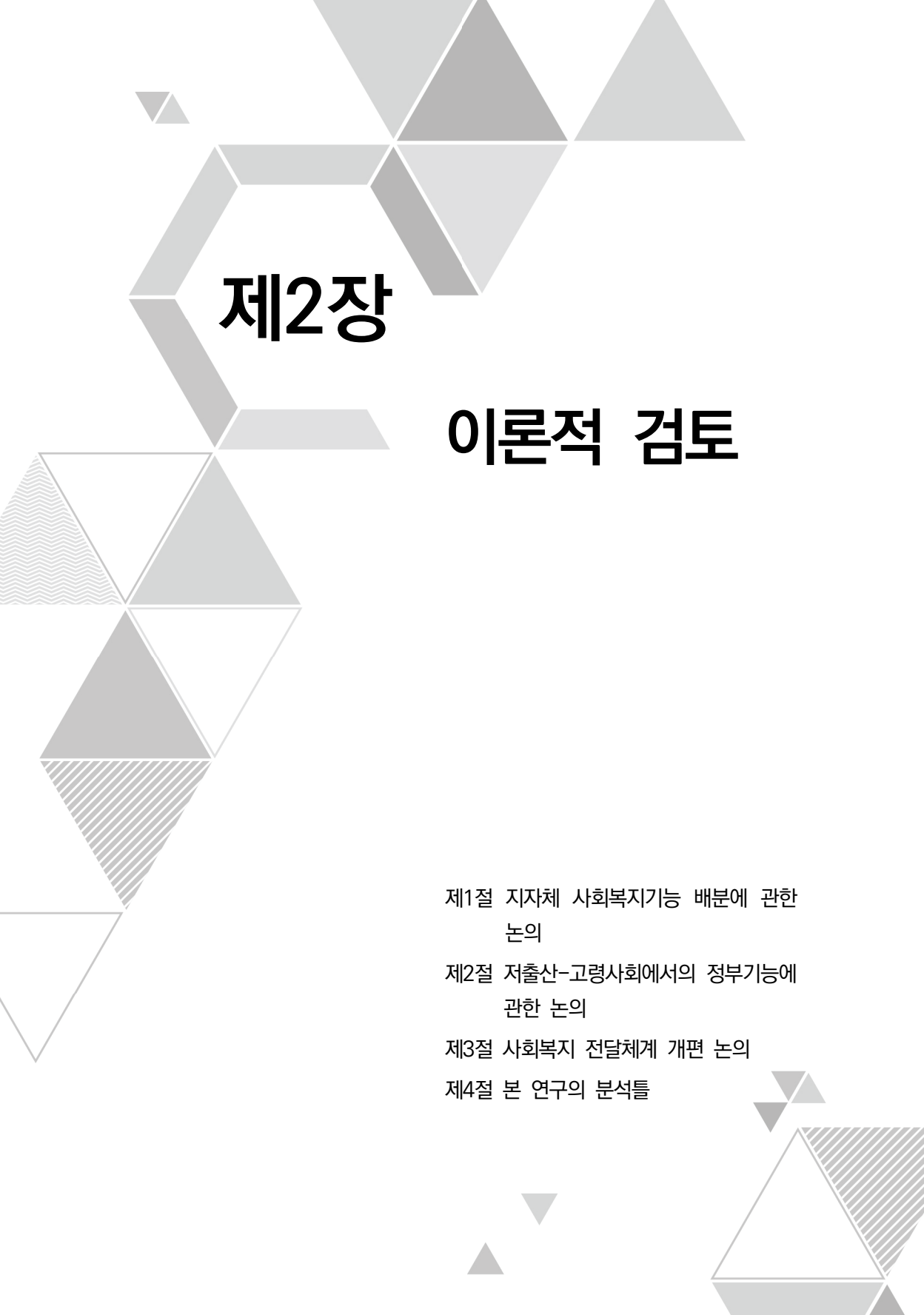
제3절 연구의 체계

○ 본 연구에서의 연구 내용과 해당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한 지자체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에 관한 문헌조사를 토대로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실무 담당자) 면담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광역지자체가 수행하여야 할 실제적인 기능을 도출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구-인력 운영 방안 및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도출할 예정임

〈그림 1-1〉 본 연구의 연구 체계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배분에 관한
논의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정부기능에
관한 논의

제3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배분에 관한 논의

1. 정부간 기능 배분

○ 정부간 기능 배분의 의의²⁾

- 정부의 기능은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제도상 또는 정부가 담당하여 처리하는 행정사무를 의미함
- 정부간 기능 배분은 지방자치로 전제로 한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간의 통치권 배분이라는 정치권력적인 측면과 주민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행정기술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게 됨
- 결국, 정부간 기능 배분은 첫째, 누가 권한을 가질 것인가(Who has authority?)를 정하는 정치권한의 문제, 둘째 누가 지불할 것인가(Who pays?)하는 재정부담의 문제, 셋째 누가 책임질 것인가(Who is accountable?)하는 행정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정부간 기능 배분의 기준 및 모형

-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의 법적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중복배제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1항), ‘보충성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2항), ‘포괄적 이관의 원칙’(지방분권법 제9조 제3항)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판단은 각 기능의 특징, 특히 수혜자 관점에서의 정부 역할에 관한 특징을 판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중에서 어느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게 됨
-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에서 시작되며 시장이 생산을 실패하게 되는 재화

2) 정경배 외(1993), pp.7-8.

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최적의 공급방식은 달라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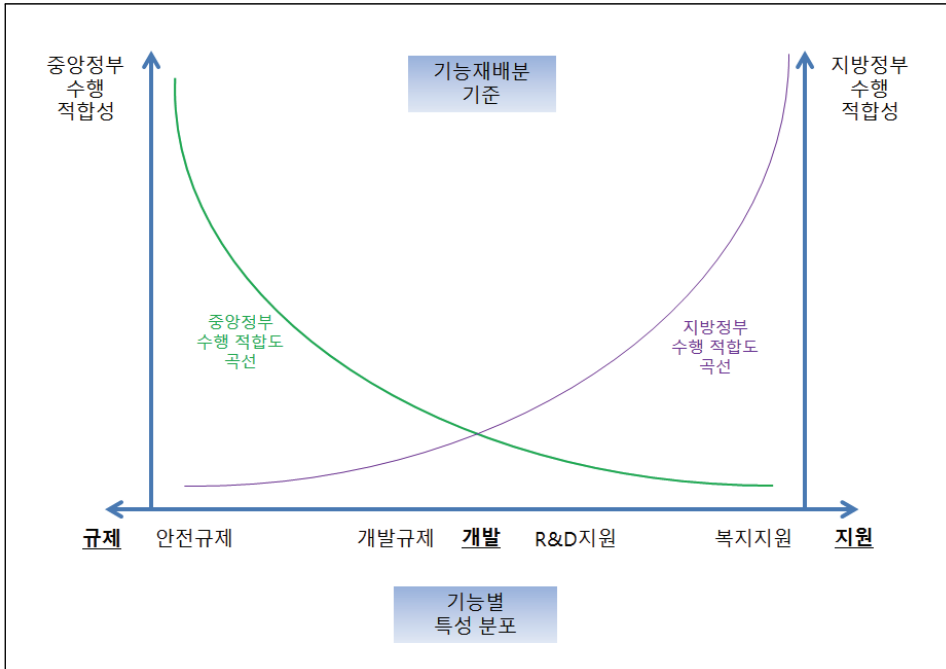
-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 분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정책 분류라고 할 수 있는 Lowi의 정책 분류에서는 정책을 크게 네 가지-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로 분류하고 있음(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 규제정책은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정책이고, 분배 정책은 SOC 사업과 같은 개발정책을 의미하며, 재분배 정책은 복지정책을, 구성정책은 행정청의 구성 및 운영 정책임
-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은 좀 더 실무적인 용어로 ‘규제정책’, ‘개발정책’, ‘지원정책’으로 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함
- 다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지원 기능 중에서도 개발 기능에 가까운 기능이 있을 수 있고, 규제 기능 중에서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동일 선 상에서 나열할 수 있음
-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이 지원 기능에 가까운 경우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³⁾, 개발 기능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정용덕, 2001)⁴⁾, 규제 기능에 가까운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음(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중앙 지방간 기능 배분 기준에 관한 모형을 제시

3) 그러나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재배분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으나(정용덕, 2001), 반면, Lowi는 재분배정책은 강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앙의 우선권에 의한 정책결정은 큰 효율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음(Lowi, 1964; 한국유럽학회, 2011에서 재인용)

4) 지방정부가 계획하는 사업의 편익이 해당 지역 내로 얼마나 ‘내부화(internalize)’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중앙-지방간에 상이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짐(정용덕, 2001:4).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지방 하부구조(예: 고속도로 건설), 공익사업, 또는 관광사업 등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하게 되고, 광역으로 그 편익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과 대부분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하거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 형식으로 운영하게 됨

하면 아래와 같음(강영주 외, 2018)

〈그림 2-1〉 중앙 지방 간 기능 배분 판단 기준



2. 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 사회복지행정의 기능배분의 원칙⁵⁾

- 복지 접근성의 제고: 복지수혜자가 급여나 서비스를 원하지만 전달체계를 모른다든가 알더라도 지리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날 그날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저소득층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인 경우에 접근성을 고려할 여지가 큼
- 지역적 특성의 고려: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복지요구의 양적 증가 및 다양화

5) 정경배 외(1993), pp21-24.

를 감안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소득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청소년비행 문제가 심각한 곳과 같이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음

- 주민참여: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책결정과 사업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나 욕구가 수렴될 수 있어서 복지급여나 서비스가 이들의 욕구에 맞도록 제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일반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의 민간자원 활용의 계기가 됨
- 전문적 급여 및 서비스의 제공: 복지수혜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급여나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의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됨

○ 효율성, 형평성, 재정자주성⁶⁾

- 지방정부에서 이뤄지는 사회복지기능 배분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분 과정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배분 기준은 시각에 따라 행정적 기준, 경제적 기준, 그리고 공공의사 결정론적 기준으로 대별될 수 있음
- 이는 사회 복지 기능을 뒷받침할 자원 배분의 기준으로서는 효율성, 형평성 및 지방 재정의 자주성 등이 지적되며, 예를 들어 지방 서비스의 편익이 타지역에 누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 주민에 귀속 될 경우에는 지방세나 수익자 부담금에 의해서 재원이 충당되어야 하고 반면 편익의 누출이 큰 서비스의 급부는 그 비용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 효율적이라고 봄

○ 재정 지출의 구조적 측면⁷⁾

- 정부 간 복지 기능 재분배의 논거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 분담 실태를 재정지출의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국가 대부분의 사회보장 및 복지 기능이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 정부에서는 광역자

6) 양봉민 외(1992)

7) 문경삼 외(1998)

지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은 복지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대조적으로 도 정부 수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복지기능의 대부분이 수행되고 있어, 특별·광역시 정부보다는 도 정부 수준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복지기능의 분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함

○ 지자체의 특수성 확보⁸⁾

-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행정관료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말하며, 사회복지행정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는 지방분권화란 미명하에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재정력이 약한 지방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을 지양하고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
- 이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제도를 집행하는 기능적 역할에서 벗어나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가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민간복지부문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민간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되 전반적인 지역복지시스템을 기획하고 실행을 주도, 점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함

○ 지자체 복지의 차별성⁹⁾

-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지자체 복지사업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수행 경향성은 중앙 사회보장사업과 비교적 뚜렷한 차별성을 보임
-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사업간의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며, 기초적인 생활보장 영역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건강의료, 고용은 중앙정부가, 지역 수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생활지원, 보호·돌봄, 문화·여가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
- 사업 기획과 운영 권한의 중앙-지방의 기본 분담 체계는 작동하고 있는 것

8) 주상현(2006)

9) 강혜균(2016)

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부담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한 재량적 사업이 제한되니, 중앙정부는 국가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일정 수준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됨

○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 공급 계획 수립¹⁰⁾

- 지역단위 사회복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 결과,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은 상관성이 미약하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은 전국 단위의 기본 선을 마련하는 데 적절하지만,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지역단위 사회복지공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와 ‘최소 수준 보장을 위한 기본선’ 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임으로, 복지수요지수와 복지공급지수, 그리고 복지비율지수의 값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임

○ 복지 분권 확보를 위한 권한 이양 필요성¹¹⁾

- 복지 분권은 선거에 대한 정치적 분권만 높을 뿐,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 권한과 재정적 분권의 수준은 불충분하여 분권의 내용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복지 분권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의 정치적 책임 수준에 맞춰 행정 및 재정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복지사무 이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었던 반면 복지재정 이양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재정의 권한이양은 복지 분권을 이뤄가는 데 핵심선결요건이라 보임

10) 정홍원(2016)

11) 김승연 외(2017)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정부기능에 관한 논의

1. 저출산-고령사회와 정부

-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노인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건강, 사회참여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노후준비율은 낮아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됨¹²⁾
 - 노인들은 소득과 건강 불안에 노출되기 쉬워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출산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행태는 개인의 선호체계가 이전 세대와는 달라졌음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지자체는 기존의 지원 중심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정책 수행자로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 구현 및 사각지대 보완: 중앙정부 정책들의 정확한 전달과 지역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상자 규모나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재정을 고려한 다양한 중앙정부 정책관련 보완의 역할
 - 지역 친화적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지역밀착형 인프라를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구축하는 작업, 고령친화지역을 건설하거나 구성하여 보급하는 일, 세대 및 문화가 통합될 수 있는 지역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일, 동시에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 민간자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대도시인접, 도농혼합지역 등)을 감안할 때 미래형 고령친화 지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중요한 지역 자원으로 확보하는 일 등
 -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장려: 지방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용하여 지역토착적인 욕구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장려하여 다양한 복지 자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생적

12) 정경희, (2009)

으로 활성화 될 있도록 하는 역할

- 저출산 정책은 사회서비스(사회정책)의 하나로 인적 자원의 보전, 보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으로, 사회부조, 사회보험, 아동복지, 교정, 정신위생, 공중보건, 교육, 오락, 노동보호, 주택제공 등을 포함¹³⁾
 - 이에 저출산 정책은 가족형성 지원부터 출산지원, 보육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에 관한 목적을 가짐
-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및 사회부담 가중에 따른 국가 문제로 인식되어, 선진 국가의 인구정책에서 볼 수 있는 종합적·구조적인 문제로, 인구정책 비전, 출산율 제고, 노인빈곤율 저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야 함¹⁴⁾
 - 유럽의 여러 국가 사례를 들어보면 국가정책 요인이 상당한 정도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스웨덴은 1997년 출산율이 최저점(1.5명)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출산율을 회복하여, 스웨덴의 정책 확대는 출산율상승 뿐 아니라 출산간격과 변동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됨
 - 영국은 2001년 합계출산율이 1.63명으로 하락한 바 있으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여, 프랑스도 이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였는데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모토 아래 정부의 포괄적, 적극적 지원전략으로 출산율을 크게 높인 바 있음¹⁵⁾
 - 이탈리아는 10년 동안 합계출산율이 1.25명 수준이었고 최근에 소폭 상승하여 1.4명에 이르렀으나 이미 인구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이탈리아의 저출산정책의 부재가 지적되며, 가족정책이 좁은 범위에 산발적으

13) 윤영진(2010)

14) 최영·김슬기(2017)

15) 정성호(2013), 고승연(2014)

로 존재하고, 예산 규모도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¹⁶⁾

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지자체의 역할

-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주된 역할은 지역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소득 노인의 돌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각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 및 여가생활 관련 서비스, 주거 서비스, 차별화된 노인복지관 운영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범 이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급외자 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2-1〉 노인복지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화와 중점 영역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 파트너십	지방정부 중점
	중앙집중적	↔	지역특화적
기본역할	■ 노인복지 국가 장단기 계획 수립 ■ 전달체계, 예산체계 및 재원조달 방식 확립 ■ 세대별 노후준비 체계 확립 ■ 국가단위 노인건강보장 체계구축 ■ 관련 제반 기본 권리 법제화 및 국제협약 등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 구현 및 사각지대 보완 (규모, 내용 등)	■ 지역 친화적 서비스 개발 및 보급 • 지역밀착형 인프라(디자인, 환경) •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장려 ■ 지역특성 고려 성과 평가 체계구축
중점추진 영역	■ 소득보장(노인기초생활보장 및 기초·국민연금) ■ 건강보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에 대한 돌봄	■ 문화여가 ■ 생활환경(주거·교통) ■ 사회복지서비스 ■ 기타 복지지원서비스(복

16) 전광희, (2017)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 파트너십	지방정부 중점
	중앙집중적	↔	지역특화적
	■ 장기요양보장		지관 및 재가복지 서비스 등)

자료: 김찬우(2015) p.43 <표 3> 재인용

- 저출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데는 지방정부의 사용 및 지원 관련 제약이 적음¹⁷⁾
 - 지방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 중 출산장려금과 유아 양육비 지원 등 출산·양육과 관련된 직접 지원만이 출산 결정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냄
 -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춘 지방정부의 세밀한 지원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저출산을 대응하는 지역의 인구문제에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하려는 인식변화가 요구됨¹⁸⁾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의 수준, 내용, 그리고 원인의 차이 인구문제의 비동질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인구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역할이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정책 지원이라는 제한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역의 인구문제 대처하는 지역 차원의 정책내용개발과 더불어, 다른 정책 사업들과 인구정책의 연계성 확대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음

17) 이미옥 외(2015)

18) 이상립(2014)

제3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논의

1. 사회복지 전달체계

- 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수요로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관련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아래 <그림 2-2> 참고), 현재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¹⁹⁾
 - 첫째, 사회서비스 체계 정비: 공공부문(지자체)의 공공부조/소득보장 관리 시스템에 집중했던 정책을, 사회서비스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체계로 전환 구상
 - 둘째, 돌봄의 국가 책임: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
 - 셋째, 통합성 증진: 동일한 대상, 유사한 욕구·문제에 대한 서비스 기능영역별 통합적 대응 체계 마련
 - 넷째, 분권-지역 주도: 시군구의 영역별 책임 관리, 서비스 기반 마련, 조정·관리(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현행 사회복지서비스는 분야별, 담당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부문별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주거·교육·고용·금융 등 분야별로 서로 다른 중앙부처(해당 부처, 특별행정기관, 보험공단)가 서비스를 관할하고 있음²⁰⁾
 - 부처 내에서도 대상에 따라 별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존재하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중복과 비체계성은 마찬가지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주로 중앙부처에서 관할, 지원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한 공공주도형 복지서비스 전달이 대부분임 ²¹⁾

19) 강혜규(2019)

20) 한국행정학회, (2016)

- 사회보험의 경우 부문별로 공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험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데 주로 보건복지부가 지방에 사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의 독자적 서비스 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서비스는 중앙부처인 복지부, 보건처, 여가부 등에서 주로 관할하며 광역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고 최종적으로 시군구·읍면동의 공공전달체계 혹은 민간비영리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의 전달체계를 가짐
 -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역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지역고용센터를 통해 고용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라 유형화하면 중앙정부 직접 전달형, 중앙-지방 협력형, 출연기관 지원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²²⁾
- 중앙정부 직접 전달형은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주도하여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이며, 중앙-지방 협력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민간기관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출연기관 지원형은 정부의 출연기관이 지자체(의 민간기관, 출연기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임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복지체감도
 - 복지 급여·서비스 정보 및 접근성 관련으로,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21) 강혜규 외(2016)

22) 기획재정부(2015)

지 잘 모름(게이트웨이가 명확하지 않음)

○ 빈번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효성

-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매우 잦음
-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개편에 대한 국정과제 제시가 반복되면서 피로감 발생
-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읍면동 과부하 해소, 자산조사 집중 경감, 상담·사례관리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요자의 체감도 변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급여의 충분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며,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감소는 별반 변화가 없으므로, 개편에 대한 기대 수준과 현실의 격차 존재함
- 실제로 민간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개편 추진은 없었으며,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주요 복지사업기관인 사회복지관의 지방 이양 이후, 중앙부처와의 거리에 대한 불만이 발생함

○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분절적 전달체계²³⁾

- 현재 저출산 정책의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최소화되어 있고, 반면 여러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에 따라 관련 사업이 지자체 수준에서는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황임
-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사업 집행을 위한 획일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원화된 체계로의 전환이 있어야 확보될 수 있음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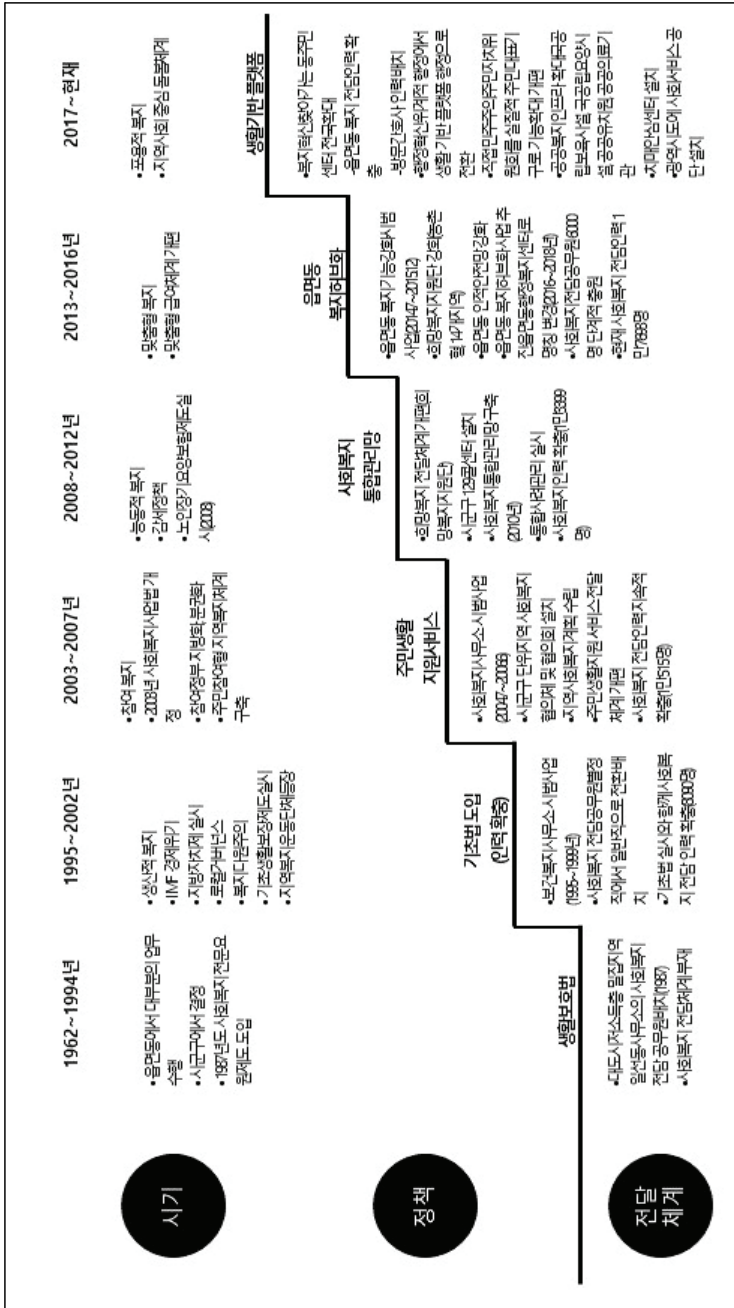
- 2000년대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주요 개편 정책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1999),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전국단위 최초 개편)를 들 수 있음
- 공공부조 중심의 지자체 복지행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복지공무원의 자

23) 강영주 외(2018)

산조사 몰입으로 인한 업무과중 해소와 효율화에 집중하였음

- 2010년대 이후로는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시작하였으며,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였음
 -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하여 수요자의 욕구진단에서 출발하도록 하였고,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과 동시에 지역 주도성을 갖도록 하였음
- 2017년부터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제공 정책을 추진하여 복지행정의 주민 점점 강화와 주민 중심, 자치형 복지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지자체 인력 1만 9천명 증원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서비스와 복지-보건 협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2-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자료: 이재원(2013, 2017)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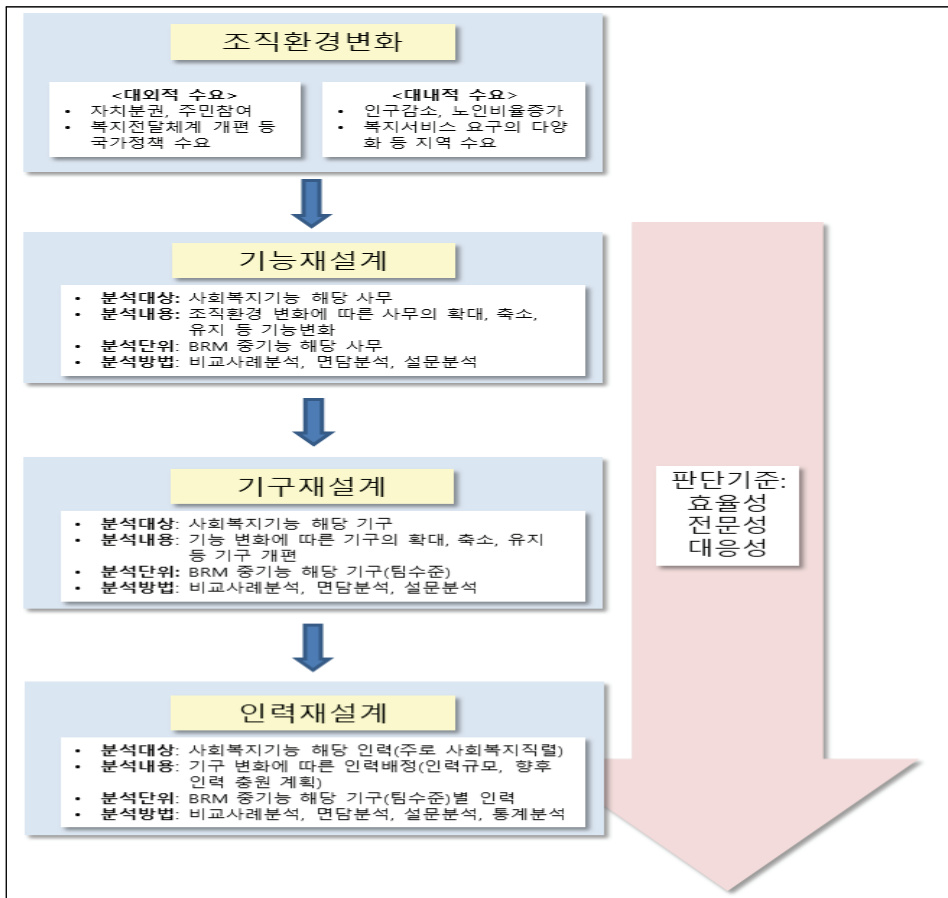
3)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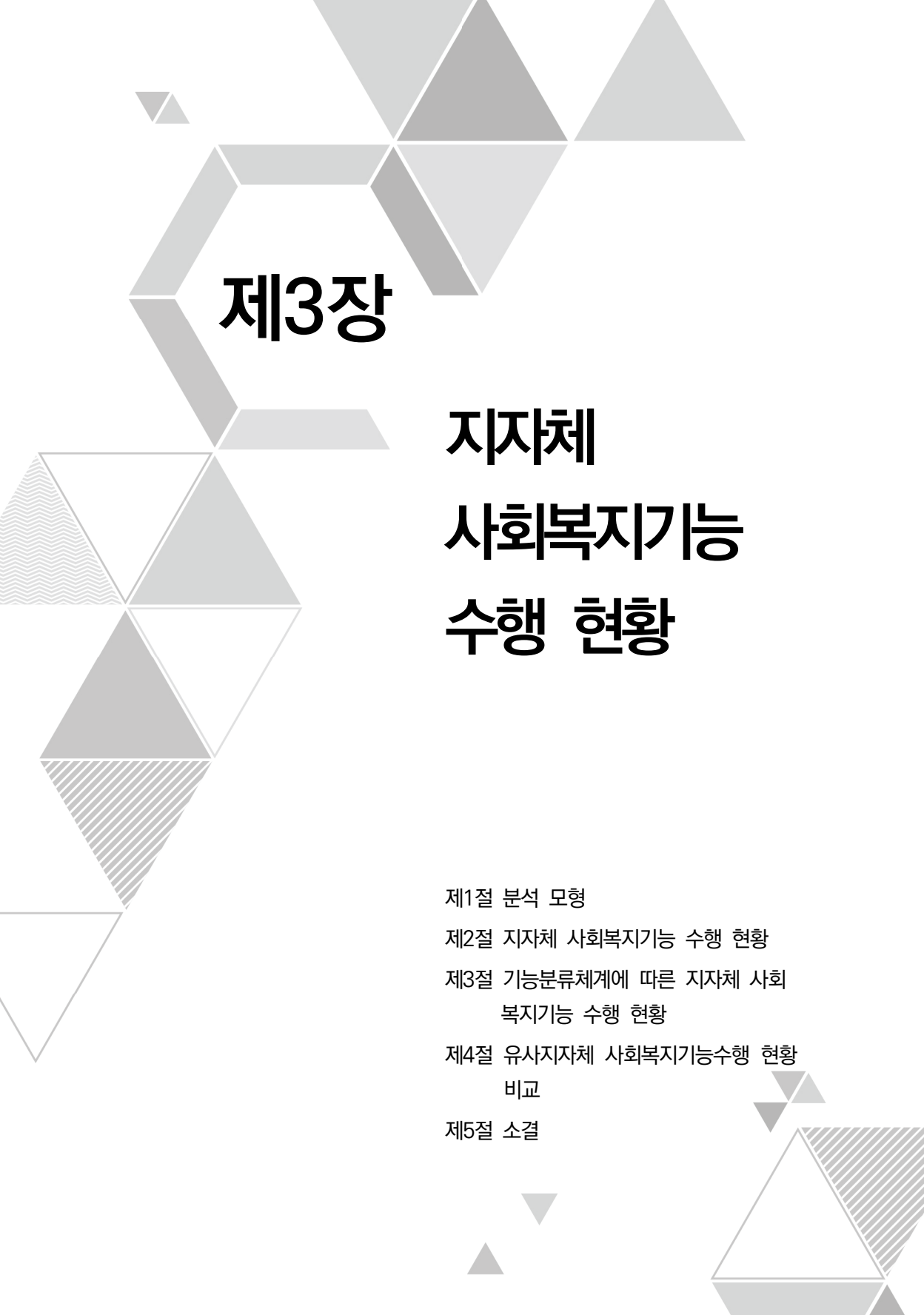
- 준보편적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지역단위의 전문적 돌봄서비스가 확충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광역지자체는 소득보장제도 집행을,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전달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현주, 2019)
 -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소득보장정책 강화는 표준화된 자산조사 중심의 전달체계를 벗어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또한, 탈시설, 사회서비스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집행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추세를 고려한다면, 지자체 중복적인 집행업무의 효율화와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기획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 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통합하여 법률적 운영의 근거가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 복지기능변화에 따른 광역지자체 기구 및 인력 변화를 분석하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사회복지기능변화는 지자체 BRM의 중기능 수준에서 분석할 예정이며, 기구 및 인력 변화도 BRM 중기능 수준에 해당하는 팀수준에서 분석할 예정임

〈그림 2-3〉 본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제1절 분석 모형

제2절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제3절 기능분류체계에 따른 지자체 사회
복지기능 수행 현황

제4절 유사지자체 사회복지기능수행 현황
비교

제5절 소결

제3장 ▶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제1절 ▶ 분석 모형

1. 분석 대상

-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인 광주광역시 본청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위 수준인 국가 수준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과 하위 수준인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 12개과 외 총 29개과가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외 3개과에서 수행, 기초수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는 복지문화국 5개과와 읍면동 수준에서 운남동의 경우 마을복지팀 1개팀에서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1〉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분석 대상

구분	분석 대상	해당 기구
국가 수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련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12개과 인구정책실 13개과 장애인정책국 4개과
광역 수준	광주광역시 본청 사회복지관련 부서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3개과
기초 수준	광주광역시 자치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관련 부서	광산구청 복지문화국 5개과 운남동 마을복지팀 1개팀

2. 분석 방법

-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전달체계 현황과 유사지자체(광역지자체 수준)의 수행 현황을 살펴봄
 - 각각의 조직 현황 즉, 기구, 인력 운영 현황과 기구별 업무분장 현황을 지자체 BRM 기능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석

〈그림 3-1〉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분석 모형

구분	내용		비고
분석 대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부서 광주광역시 본청 사회복지부서 광주광역시 기초지자체 및 읍면동 사회복지부서		복지전달체계의 수직적 분포
	사회복지기능 수행 부서 현황 사회복지직렬 인력 현황		유사지자체(광역) 비교
↓			
분석 방법	기관별 분석	조직 현황: 기구, 인력 등	각 기관 홈페이지 등 참고
		수행 기능 현황: 과별 업무분장	
		지자체와 기능 비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자체 BRM 기능 분류 체계 적용

제2절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1. 중앙정부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조직별로 수행하는 사무와 인력을 나타낸 바는 다음과 같음

〈그림 3-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부서



〈표 3-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부서의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

설·국 (인원)	과	수행 업무(중앙정부)	해당 인력
사회복지 정책실 (152명)	복지정책관 (60명)	복지정책과	20명
		기초생활보장과	14명
		지립지원과	11명
		기초의료보장과	14명
		지역복지과	14명
복지행정지원관 (49명)	복지행정지원관 (49명)	급여기준과	7명
		복지정보기획과	19명
		복지정보운영과	8명
		사회서비스정책과	12명
		사회서비스사업과	7명
사회복지 정책실 (152명)	사회서비스정책관 (43명)	사회서비스사업과	14명
		사회서비스사업과	14명
		사회서비스사업과	14명
		사회서비스사업과	14명
		사회서비스사업과	14명

실·국 (인원)	과	수행 업무(중앙정부)	해당 인력
인구 정책실 (161명)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외 12개 사무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총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외 12개 사무	9명
	인구정책총괄과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외 17개 사무	16명
	출산정책과	■ 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외 23개 사무	10명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아동복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외 14개 사무	23명
	아동권리과	■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외 10개 사무	12명
	아동학대대응과	■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외 14개 사무	10명
	노인정책과	■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 ■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외 9개 사무	12명
	노인지원과	■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외 1개 사무	9명
	요양보합제도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외 19개 사무	10명
노인정책관 (51명)	요양보합운영과	■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변경·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외 8개 사무	10명

실·국 (인원)	과	수행 업무(중앙정부)	해당 인력
실·국 (인원)	치매정책과	■ 치매 종합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외 8개 사무	9명
	보육정책과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외 20개 사무	17명
	보육사업기획과	■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외 10개 사무	9명
	보육기반과	■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외 8개 사무	11명
장애인정책국 (53명)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외 10개 사무	17명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외 13개 사무	9명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외 15개 사무	11명
	장애인서비스과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외 13개 사무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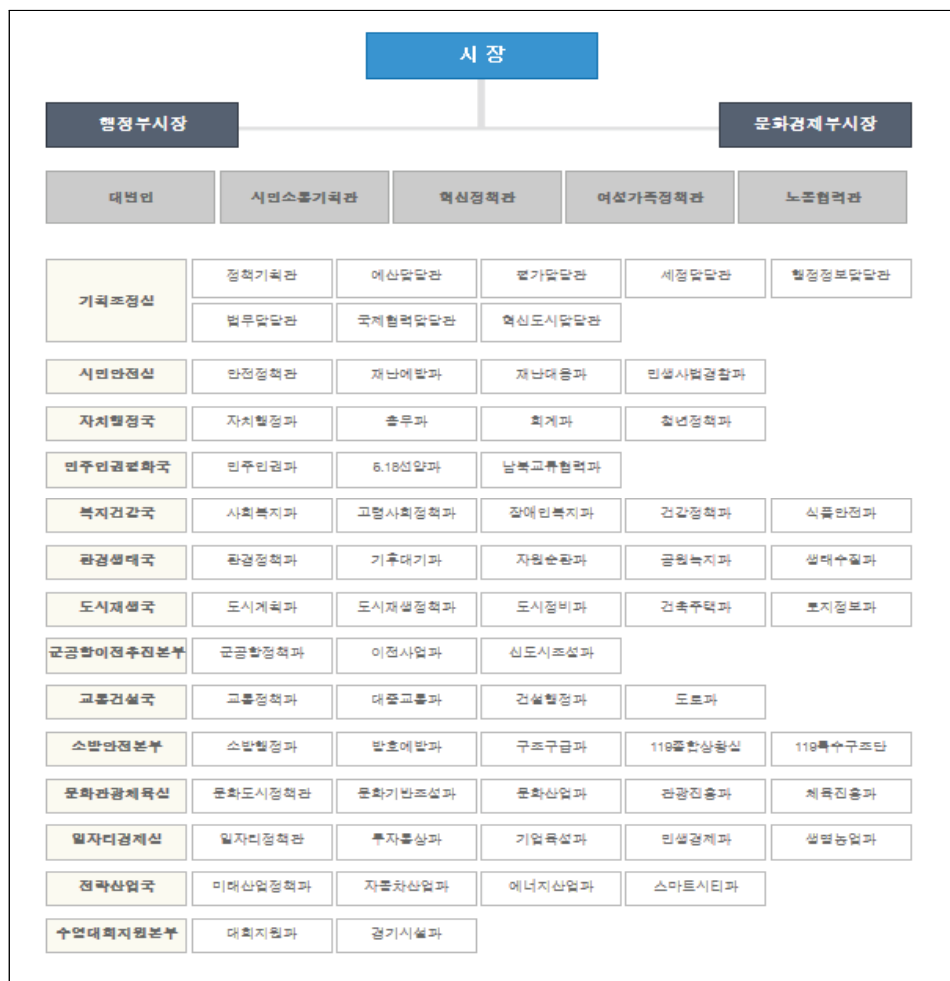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부서인내 현황(2019년 4월 기준)

2. 광역지자체 수준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 광주광역시 본청

- 광역지자체인 광주광역시 본청에서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조직별로 수행하는 사무와 인력을 나타낸 바는 다음과 같음

〈그림 3-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부서



〈표 3-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부서인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

실·국	과	팀(담당)	수행 업무(광역지자체)	해당 인력
복지건강국 (92명)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	■ 양성평등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기본조례 관리·운영 외 6개 사무	7명
		보육	■ 중장기보육계획 및 연차별 보육계획 수립 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외 14개 사무	6명
		가족복지	■ 성매매, 폭력예방교육 ■ 아이돌봄 외 2개 사무	4명
		저출산이동	■ 저출산 대책 ■ 인구정책추진 외 3개 사무	3명
		복지정책	■ 지역사회보장 4개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 외 11개 사무	7명
	사회복지과 (20명)	생활보장	■ 생활보장업무전반 ■ 광주시민복지기준 종합추진 외 24개 사무	5명
		보훈복지	■ 4.11, 6.6현충일 기념식 추진 ■ 독립운동 사적지 표식 설치 외 8개 사무	4명
		다문화가족	■ 사회서비스원 및 고려인주민지원사업 등 ■ 다문화 지원 사업	3명
	고령사회정책과 (19명)	고령사회정책	■ 고령친화도시 조성 ■ 노인화관 건립, 노인단체 관리 외 3개 사무	5명

실·국	과	팀(담당)	수행 업무(광역지자체)	해당 인력
		고령복지	■ 노인일자리활동지원사업,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지도감독, 광주형 취약계층 고용인센티브제 도입 등 ■ 고령복지팀 - 기초연금 - 노인돌봄업무 - 단기사서비 스 - 독거노인 및 무료급식(경로식당) 외 2개 사무	4명
		노인시설지원	■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및 기능보강 ■ 노인복지의료복지시설운영에 관한사항 외 8개 사무	4명
		노인문화지원	■ 공설모지 정비에 관한 사항 ■ 우치지역 도시가스 설치 등 시행에 관한 사항 외 6개 사무	5명
	장애인복지과 (15명)	장애인복지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업무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지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사단 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외 8개 사무	5명
		장애인시설	■ 장애인시설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업무추진 중 외 5개 사무	4명
		장애인재활지원	■ 장애인재활지원업무 전반 ■ 장애인단체 지원 업무 등 외 4개 사무	5명

3. 기초지자체 수준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 광주광역시 광산구

- 기초지자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조직별로 수행하는 사무와 인력을 나타낸 바는 다음과 같음

〈그림 3-4〉 광산구청 사회복지 부서



〈표 3-4〉 광산구청 사회복지부서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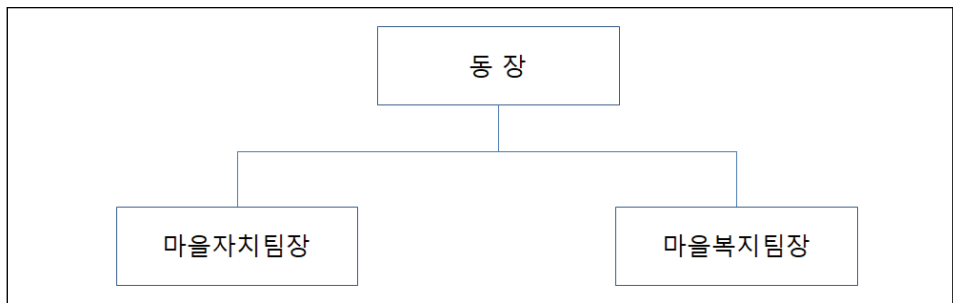
실·국 (인원)	과	팀(담당)	수행 업무(기초지자체)	해당 인력
복지문화국 (209명)	복지행정과 (45명)	복지기획	- 지역사회복지장제 수립 등 - 복지문화국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외 7개 사무	8명
		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결정 및 통지 - 의사무능력자 관리 외 14개 사무	9명
		통합조사	- 사회보장급여신청자(국민기초,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등) 통합조사 - 복지대상(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 등) 신청자 통합조사 외 2개 사무	8명
		통합관리1	통합관리1팀 업무 전반 총괄	10명
		통합관리2	사회복지 통합관리사 급여급 외 6개 사무	9명
	노인장애인가동과 (24명)	노인복지	- 노인 돌봄 사업(기본)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관리·지원 외 7개 사무	7명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팀 업무 전반 - 장애인기업 맞춤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외 4개 사무	4명
		장애인시설지원	- 장애인 인권 정책 개발 등 인권 전반, 장애인시설관리, 광산구청사 카페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장애인생산품관리, 장애인단체지원 외 1개 사무	4명
		이동복지	- 병원이동돌봄서비스, 이동복지교사관리, 다함께 돌봄사업 -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종사자관리, 방과후돌봄서비스, 이동급식지원 외 8개 사무	8명
		여성친화정책	- 여성정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여성친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외 32개 사무	7명
	여성가족과 (26명)	보육지원	- 보육정책수립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외 58개 사무	15명

실·국 (인원)	과	팀(담당)	수행 업무(기초지자체)	해당 인력
희망복지과 (24명)	다문화정책	다문화정책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추진 전반 외 12개 사무	3명
			- 복지연계팀 운영 총괄 - 희망복지 시책업무 추진 외 19개 사무	7명
			-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 시군구 사례관리사업비 관리 및 집행 외 27개 사무	9명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및 행정 예산관리 총괄 -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총괄 외 32개 사무	7명
	공통체복지과 (90명)	공통체복지	- 공동체복지팀 운영총괄 - 사회복지이용시설(노인, 장애인, 종합)지도감독 외 10개 사무	5명
			- 공동체자활팀 운영 총괄 -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외 10개 사무	5명
		주거복지	- 주거복지팀 업무 총괄 - 집검다리하우스 업무 추진 외 3개 사무	3명
			- 복지관 실무 전반 - 재정 및 조직운영관리 외 35개 사무	24명
		광산구장애인복지	- 기관운영 - 복지관 업무 총괄, 비전 및 목표 수립 - 대외 협력 외 107개 사무	32명
			-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총괄 - 첨단종합사회복지관 행정 및 사업 실무 총괄 외 6개 사무	12명
	어등지역자활	어등지역자활	- 어등지역자활센터 운영총괄 - 어등지역자활센터 사업총괄 외 6개 사무	8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사무소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 기초지자체의 하부행정기관인 광역시 광산구 운남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조직별로 수행하는 사무와 인력을 나타낸 바는 다음과 같음

〈그림 3-5〉 광산구 운남동 사회복지 부서



〈표 3-5〉 광산구 운남동 사회복지 부서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

팀(담당) (인원)	담당 업무
마을복지팀 (8명)	■ 경로당 및 경로행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지원(총괄), 사회복지 관련 시상 및 포상, 건강증진과 ■ 복지행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지투, 장애인보장구, 기초연금 제외) ■ 여성보육과(한부모) 업무에 관한 사항 ■ 희망복지과(연말이웃돕기, 명절위문대상자 선정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 ■ 공동체복지과(자활, 희망키움통장, 주거복지 제외) 업무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 신청 및 관리·사후관리(소관업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지원(실무), 복지시책,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관리, 희망복지과(희망나눔캠페인, 명절위문대상자 선정 등 복지공감의 날),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지원(실무), 복지시책,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관리, 희망복지과(희망나눔캠페인, 명절위문대상자 선정 등 복지공감의 날),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방문상담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팀(담당) (인원)	담당 업무
	■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통합사례관리 ■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서비스 연계 ■ 여성보육과(보육지원팀) ■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통합사례관리 ■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서비스 연계 ■ 문화누리카드 ■ 여성보육과 업무에 관한 사항(여성친화정책팀, 다문화정책팀) ■ 노인장애인가동과(아동급식 제외) 업무에 관한 사항 ■ 복지행정과 업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보장구) ■ 복지대상자 신청 및 관리·사후관리(소관업무) ■ 복지행정과(기초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 ■ 노인장애인가동과(아동급식) 업무에 관한 사항 ■ 여성보육과(출산정책, 둘째아병원비 지원, 양육수당, 아동수당) 업무에 관한 사항 ■ 공동체복지과(자활, 희망키움통장,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 보건소(건강증진과)

제3절 기능분류체계에 따른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1.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비교

- 지자체 BRM 기준에 따라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BRM 분류에 따른 사무와 해당 조직, 관련 법령을 제시하였음

〈표 3-6〉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비교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기초 생활보장	생활보호 대상자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홍보에 관한 사항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난민의 구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홍보에 관한 사항	복지 정책팀 / 생활 보장팀	- 지역사회보장 4개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BSC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생활보장업무전반 - 긴급복지사업 지원 - 노량호루라기 사업 추진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노동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정책과 / 지립지원과	-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 정부유관국립인 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보장팀 / 건강증진팀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차상위 탈빈곤 지원 - 수급자 탈수급 지원 - 돌봄이웃(기초수급자)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서비스	자활정책 및 운영	지립지원과	- 종합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변형·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홍보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중앙·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능력판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자활연수원 설립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생활보장팀	- 자활사업 - 자활사업 참여자 탈빈곤 지원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정책	고용촉진지원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보육가족 및여성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련정책 및사업 총괄과	인구 정책 총괄과	•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조정 •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조정 •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변경·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치매 종합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거점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어르신종합복지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치지역 도시가스 설치 및 공급 등 시행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원 및 고려인주민지원사업 등 • 다문화 지원 사업 •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저출산 대책 • 인구정책추진	• 모자보건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총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령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 •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 및 국민 인식개선 추진	다문화 가족팀 / 여성가족 정책관	• 사회복지서비스원 및 고려인주민지원사업 등 • 다문화 지원 사업 •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저출산 대책 • 인구정책추진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관광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분야 여성정책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남임부부 지원사업			
	보육복지	보육시설 관리	보육정책과 / 보육기반과	•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 •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 인증 제도 운영 •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 시간연장형, 종일형,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정책관	•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공립 확충 사업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지도점검 총괄, 어린이집 안전 관리 등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 공공형어린이집 시지체사업 • 보육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정양육지원 및 보육교사상담 포함)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보육정책 및 행정업무	보육정책과 / 보육사업기획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보육재정의 충장기 투자계획, 편성, 집행관리 •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배우치)의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지원체계 기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보육재정의 충장기 투자계획, 편성, 집행관리 •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배우치)의 운영 및 관리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지원체계 기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 중장기보육계획 및 연차별 보육 계획 수립 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 민간어린이집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아동 환경·문화 체험 학습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 보육 사회복지법인 관리(허가,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영유아 보육법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이동보호	이동보호 관리	이동 관리과 / 이동 학대 대응과	•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아동 간성관계에 관한 사항 •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에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 정책관	• 성매매, 폭력예방교육 • 아동돌봄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아동복지 정책	아동복지 정책	아동 복지 정책과	•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관리 •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아동복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 그돌봄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입양특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 중앙입양원 및 입양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림돌협의회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 정책관	• 아동 친화도시 업무 추진 • 아동·청소년의회 구성·운영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 아동복지법 • 입양특례법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보훈	여성복지	여성정책 및 활동지원	인구 정책 총괄과	- 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 임산·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출산 및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 정책관	- 양성평등정책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추진 -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기본조례 관리·운영 - 성평등 자수 제고방안 마련 - 기금운용 - 위안부 소녀상 관련 여성단체활동 지원 - 여성위원회 - 빛고을행복이카데미 - BSC, 정부합동평가	- 각종 기념일 등 애관한 규정 - 국가유공자단체 등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관리	보훈대상 지원			보훈 복지팀	4.11, 6.6현충일 기념식 추진 - 독립운동 사적지 표시 설치 - 보훈시설 위탁관리 - 보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미망인회, 고엽제, 6.25참전회(경찰유공자외),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 국가 기념식 개최 (3.15, 4.19, 6.25) - 신년 참배행사 지원(3.1운동, 8.15 등)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사회복지 일반				•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 사회복지분야: 임무효율화 방안 마련 •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동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 총괄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업무(4,19단체, 해병대 등)	• 사회복지법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법 • 음금의료에관한법률 • 감염병예방법 • 약사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정책지원	사회복지 정책지원	복지정책과 / 복지정보기획과 / 사회복지서비스정책과 / 사회복지자원과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평가에 관한 사항 • 광주시민복지기준 종합추진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 총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및 시설중사(의)교육 •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사랑방에 관한 사항 • 기부식물지원(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장원회 운영, 복지협치 이행사업 추진 • 광주형 복지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팀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평가에 관한 사항 • 광주시민복지기준 종합추진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 총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및 시설중사(의)교육 •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사랑방에 관한 사항 • 기부식물지원(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장원회 운영, 복지협치 이행사업 추진 • 광주형 복지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지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 사회복지장정보 업무의 기획·총괄 • 사회복지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시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회복지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 사회복지장정보시스템의 정비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장정보 통계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총괄 •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의 총괄 기획 및 사업관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의료지원	의료급여 업무	요양 보험 제도와 / 복지 정보 운영과	- 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제도 운영 및 사회복지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 민간기부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지원			
				•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급여의 신청·조사·결정·급여·사후관리에 관한 기준·방법·절차·서식 등의 표준화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 사회보장정보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	생활 보장팀	•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 • 의료급여법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정책 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자격정보와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장모	장모문화 계획수립			노인문화지원팀	• 장사법인 설립하기 및 비영리법인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 장사법인, 장례식장, 무연고사망자 관련 업무 • 자격증 발급관련 서류심사 및 자격증 발급	• 장사등에관한 법률
		장모시설 관리			노인문화지원팀	• 공설묘지 정비에 관한 사항 • 장례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 • 빙고올타운 주변 수목원 및 돌레길 조성 업무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취약계층 지원	부령인의사상 지지원	부령인및행려 지지원	사회 서비스 지원과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에 우 애관한법률
				-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 대책 수립 -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시행, 평가 - 장애인생산물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보호조기의 개발·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육성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 정책팀 / 장애인 재활 지원팀	- 장애인복지정책업무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지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수단법 인 허가 및 지도감독 - 장애인 재활 지원 업무 전반 - 장애인단체 지원 업무 등 -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택의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활안 정지원	장애인복지사 업무정책	장애인 정책과 / 장애인 지원 기반과 / 장애인 권익 지원과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장애인복지시설관리	장애인 권익 지원과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장애인 수련 시설 건립 -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및 지도감 독(장애등급 심사지원) - 장애인시설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시설 운영 - 매점, 자판기 우선 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수급자 선정 및 국비·지방비 부담기준 등)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연금, 수당, 의료비) 보조기구 사례관 리,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의료및 재정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기반과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청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활동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 사항			

2.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비교

- 지자체 BRM 기준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BRM 분류에 따른 사무와 해당 조직, 관련 법령을 제시하였음

〈표 3-7〉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비교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운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지원	복지 정책팀 / 생활 보장팀	- 지역사회보장 4개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BSC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 (위기가구, 발굴단 등)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생활 보장 업무 전반 - 긴급복지사업 지원 - 노령호루라기 사업 추진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종합관리	생활 보장팀 / 통합 조사팀 / 통합팀	- 기초생활보장 결정 및 통지 - 의사무능력자 관리 -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반환명령 - 생계급여 지급, 정부양곡, 광주형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관리 및 지급, 수급자 자격확인 - 사회보장급여신청자(국민기초,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통합조사	- 찾아가는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지역복지자원 개발 및 서비스 연계 - 문화누리카드 - 방문상담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지원(실무) - 복지대상자 신청 및 관리·사후관리(소관업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차상위 탈 빈곤 지원 - 수급자 탈 수급 지원 - 돌봄이웃(기초수급자)증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운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노동			중진팀	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 • 돌봄이웃 자녀 교복지원사업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활서비스	지활정책 및 운영	생활보장팀	• 자활사업 • 자활사업 참여자 탈빈곤지원 • 자선형성 지원 사업 추진	어등지역 지활팀 / 공동체지활팀	• 어등지역지활센터 운영총괄 • 자활사업단관리 • 내일키움/희망키움사업관리 • 공동체지활팀 운영총괄 • 지역지활센터 점검 및지원 • 조건부 수급자관리 및지활지원계획 전반 • 조건부 수급자 맞춤형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연계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고용정책	고용촉진 지원 실업대책 마련 및 취업지원					
	근로자복지	근로자복지 정책 및 운영	복지정책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			
	노동정책	노동조합단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운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체의							
		육성및관리 노사화합 및 인정정책							
노인 청소년	노인 생활안전	노인복지 정책 및 운영	고령사회 정책팀 / 고령 복지팀 / 노인시설 지원팀	- 고령친화도시 조성 - 서부권역 특화형 노인복합시설 건립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 빛고을50+일자리 지원 - 노인 일자리 활동지원 사업 - 광주형 취약계층 고용인센티브제 도입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진담기관 지원 - 노인복지시설 확충 계획 및 기능보강 - 노인장기요양제도운영에 관한사항 등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거점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어르신종합복지센터)	- 노인 돌봄 사업(기본) 및 독거 - 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관리·지원 - 대한노인회광산구지회 지원 및 경로당 등록 관리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업무 추진 - 노인일자리사업, 광산시니어클럽에 관한 사항 - 간강생활지원사업 - 인생이모작지원사업 운영	- 노인복지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온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보육가족 및여성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치지역 도시가스 설치 및 공급 등 시행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정책	청소년관련 정책수립							
	가족기능 강화	가족관련 정책 및 사업	다문화 가족팀 / 여성가족 정책관	• 사회복지서비스 및 고려인 주민지원사업 등 • 다문화 지원 사업 •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저출산 대책 • 인구정책추진	다문화 정책팀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 외국인주민 관련 외부기관 연계 및 업무 협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관리 • 고려인 마을 지원 사업 관련 업무 • 세계인의 날 행사 기획 및 추진 업무 • 외국인주민지원 정책의 원화 관련 업무 • 이주여성 개면지원 사업 등 시책업무 추진 • 외국인주민 지역지원 연계 추진 및 홍보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운영 • 결혼중개업소 등록 및	• 여성보육과 업무에 관한 사항(여성친화정책팀, 다문화정책팀)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온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보육복지						지도, 점검		
	보육시설 관리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가족 정책관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공립 확충 사업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지도점검 총괄, 어린이집 안전 관리 등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 공공형어린이집 시지체 사업 • 보육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정양육지원 및 보육교사상담 포함)	• 어린이집 시설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관린동 어린이집 건축 협의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환경개선 용지지원 사업 추진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가정·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 및 운영 • 시설안전 총괄 및 상호회 운영		
					• 중장기보육계획 및 연차별 보육계획 수립 시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민간어린이집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보육정책수립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지도점검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CCTV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보에 관한 사항		
	보육정책 및 행정업무		여성가족 정책관	보육지원팀 / 드림스타트팀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유관동 주민센터 업무(단위 사무)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장학영역				- 어린이집아동 현장·문화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 보육 사회복지법인 관리(허가,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활동지원 - 민간·협동어린이집 설립인가 및 운영 - 원장 업무 및 각 반 담임 업무 지원 - 영유아 교직원, 외부강사 간담회관리(보건증 외)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전반에 관한 사항 -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및 행정 예산관리 총괄 - 취약계층 아동가구 조사, 서비스 기획 조정 및 서비스 제공 총괄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행동 e음 승인 등 총괄 - 복지프로그램 정서/행동(부모/가족)지원 및 운영 - 보육(인/지/언어)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아동보호 관리	여성가족 정책관	- 성매매, 폭력예방교육 - 아이돌복	아동복지팀 / 보육지원팀	-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관리, 다함께돌봄사업 -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종사자관리,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급식지원		- 전라남도 아동양육성 기본조례 - 어린이수생 활 안전 관 리 특별법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운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여성복지						-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 진화도시 추진 - 지역사회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지역돌봄기관 연계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 체계 구축·운영 실무 - 어린이집 및 영유아 급식 조리 및 제공			
	아동복지 정책	여성가족 정책관	- 아동 진화도시 업무 추진 - 아동·청소년의회 구성·운영 - 아동·청소년 진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여성정책및 활동지원	여성복지 정책관	- 양성평등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기본조례 관리·운영 - 성평등 지수 제고방안 마련 - 위안부 소녀상 관련 여성단체활동 지원, - 여성위원회 - 빛고을행복이카데미 - BSC, 정부합동평가	여성 진화 정책팀	- 여성정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여성진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계획수립 등 종합관리 - 여성 가족진화마을센터 운영 계획수립 - 여성정책 평가 추진 - 공공돌봄지원센터(맘스리센터)관련 업무 추진 - 출산장려업무(출산 축하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온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 금, 출산장려금, 둘째아 버원비, 출산축하용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포함) 생계비 및 교육급여 관리 • 가족복지 일반업무 • 아이돌보미사업 추진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사업관리 • 여성단체운영 지도 관리 • 여성권익증진사업 • 양성평등기금 관리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회 운영 관리 • 여성폭력(성·가정폭력)관련 시설운영지원 관리 • 아이키우기 좋은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		
보호	보호관리	보호대상 지원	보호 복지팀	• 4.11, 6.6현충일 기념식 추진 • 독립운동 사적지 표적 설치 • 보호시설 위탁관리 •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수립 • 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미망인회, 고엽제, 6.25참전회(경철유공자	복지 기획팀	• 보호단체 관리 및 지원, 5.18 및 청천유공자 수당지급 등		•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공자 단체 등 설립에 관한 법률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운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정책지원		외)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 • 국가 기념식 개최 (3.15, 4.19, 6.25) • 신년 참배행사 지원(3.1 운동, 8.15 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업무(4.19단체, 해병대 등)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기능보강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평가에 관한 사항 • 광주시민복지기준 종합추진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 총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및 시설종사자교육 •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사랑방에 관한 사항 • 기부식품지원(푸드뱅크, 푸드마켓)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자원회 운영, 복지협치 이행사업 추진 • 광주형 복지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복지 기획팀 / 첨단 종합 사회 복지팀 / 복지 연계팀 / 희망 복지팀 / 공동체 복지팀				• 사회복지법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온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 신규 정책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에 관한 사항 - 보건기획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업무) - 시립병원 운영 및 공공 보건사업 지원 등 - 예산 및 일상경비출납에 관한 사항 - BSC 등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정부합동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자원관리 및 D/B구축 -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문형서비스연계 협력 추진 - 휴먼서비스네트워크 추진(운영보고회, 발굴) - 복지공감의 날 운영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지원 - 복지대상자 상담, 접수, 통합사례관리 추진 - 기본동 사례관리 지원(우산동, 월곡1, 운남, 송정1동, 동곡) 129 콜센터 상담 처리 및 지원 - 슈퍼비전 및 교육지원 - 고난도 프로젝트현황 및 사례관리 발굴 지원 'Go to work' 프로젝트 지원 - 마을지향 복지관 비전 수립(상상마을 프로젝트) - 광주형 복지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 사회복지이용시설(노인,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온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정책영역	의료지원	의료급여 업무				장애인, 종합) 지도 감독 • 복지시설 기능 관리 및 보장 사업		의료급여법
			성금모금			• 공동모금회 사업 • 온라인 모금활동 추진		
						•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담 업무 • 의료급여자격관리전반(취득, 중지, 중絶변경등) • 의료급여 연장증인 및 신택비용원 업무 및 심의		
			생활보장팀	•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	생활보장팀	• 의료급여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치석관리 및 유관기관 연계 •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및 결정 • 의료급여 동일성분 투자 관리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정책영역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정책 책임자						
	장묘 관리	장묘문화 계획수립	노인문화 지원팀	• 장사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법인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등				장사등에관 한법률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운남동 주민센터 업무(단위 사무)	관련법령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생 활안정지 원	장애인복지 사업및정책 사업및정책	장애인 복지 정책팀 / 장애인 재활 지원팀	- 장애인복지정책업무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지 원 장애인복지기금 사 업 추진 수단법인 허가 및 지도감독 - 장애인재활지원업무 전반 - 장애인단체 지원 업무 등 -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 인편의시설 운영 등	장애인 복지 /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복지팀 업무 전반 - 장애인기업 맞춤형 스 미트샵 구축사업 - 장애인복지 특수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 운영(운영지원, 회계, 기획홍보, 교육 등) - 시민교육, 문화예술체 험, 남성·여성 장애인 모임 지원 - 장애인 복지관 급식 지 원 관리(위생, 식단 등) -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장애인복지 법
	부랑인의 사상자 지원	부랑인및행 려지원	노인문화 지원팀	- 장사법인, 장례식장, 무 연고사망자 관련업무 - 자격증 발급관련 서류심 사 및 자격증 발급 - 공설묘지 정비에 관한 사항 - 장례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 - 빛고을타운 주변 수목원 및 둘레길 조성 업무			장사등에관 한법률
	부랑인의 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 우 에 관 한 법률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운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장애인복지 시설관리	장애인복지 시설관리	장애인 복지 정책팀 / 장애인 시설팀	•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및 지도감독(장애등급 심사 지원) • 일반서무, 예산결산, BSC관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및 보조금 지원, 일상경비지출, 기록물, 물품 보안 공유재산 관리, 장애인통계 • 장애인시설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장애인지역사회활성화사업 운영 • 매장, 자판기 우선 허가	장애인 복지	• 장애인 주차구역 및 편의시설 제공 및 관리 감독 • 장애인 작업 재활 시설 지원 • 장애인 생산물 관리 • 장애인 단체 지원 •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 장애인 인권 정책 개발 • 장애인 근무 카페 운영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 재활 사업 사례 관리 및 작업 재활 사업 운영 • 언어심리 재활사업 • 직업지원팀 업무 총괄 (직업교육, 구직지원, 직업사례관리) • 지역사회조직 및 관리 • 평생교육팀 업무 총괄 (가족지원, 자립지원, 문화예술, 옹호활동) • 마을지향복지사업(마을 인연잇기) • 장애인 구직 지원 및 구직 후 적응지도 • 복지네트워크 구축					

정책영역	구분(BRM 기준)		광주광역시청		광산구청		온남동 주민센터		관련법령
	대기능	중기능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업무(단위 사무)		
		장애인의료 및재정지원	장애인 복지 정책팀 / 장애인 생활 재활 지원팀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권익옹 호기관 운영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 • 호남권역 재활전문병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지역보건의료센터 공모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공모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연금,수당,의료비)보조기구 사례관리 •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 •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					
		장애인의료 및재정지원				장애인 복지	• 장애인 영급 관리 • 장애인 일자리 관리 • 장애인 등록 및 주택 관리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3. 법령상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 법령상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또는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기능 수행과 관련된 법령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많으므로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포함-만을 대상으로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음

〈표 3-8〉 노인복지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결과 요약

구분	중앙	광역	기초	비고 (국가위임여부)
단위사무	34개	41개	36개	해당없음

〈표 3-9〉 노인복지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제 비교 현황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 2 정의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	○
	제4조의2 안전사고 예방	○	○	○
	제5조 노인실태조사	○		
	제6조 노인의 날 등	○	○	○
	제6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배포	○		
	제6조의3 인권교육	○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	○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	○	○
제2장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 노인사회참여지원	○	○	○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	○
	제23조의3 생산품 우선구매	○	○	○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		○
	제25조 생업지원	○	○	○
	제26조 경로우대	○	○	○
	제27조 건강진단 등	○	○	○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	○
	제27조의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제27조의4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	○	○
	제28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		○	○
	제29조 삭제			
	제29조의2 삭제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	○	○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	○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
	제33조의2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	○
	제33조의3 삭제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
	제37조의2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	○
	제37조의3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	○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	○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	○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39조의4 긴급전화의 설치 등	○	○	○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제39조의9 금지행위			
	제39조의10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		
	제39조의11 조사 등	○	○	○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13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제39조의14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	
	제39조의15 노인학대 등의 통보			
	제39조의16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39조의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9조의18 위반사실의 공표	○	○	○
	제39조의19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	○	○
	제39조의20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40조 변경·폐지 등		○	○
	제41조 수탁의무			
	제42조 감독		○	○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	○
	제44조 청문		○	○
	제45조 비용의 부담			
제5장 비용	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	○	○
	제47조 비용의 보조	○	○	○
	제48조 유류물품의 처분			
	제49조 조세감면			
제6장 보칙	제50조 이의신청 등		○	○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52조 삭제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	○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	○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7장 벌칙	제55조의2 벌칙			
	제55조의3 벌칙			
	제55조의4 벌칙			
	제56조 벌칙			
	제56조의2 삭제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9조 벌칙			
	제59조의2 가중처벌			
	제60조 양벌규정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표 3-10〉 사회복지사업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결과 요약

구분	중앙	광역	기초	비고 (국가위임여부)
단위사무	26개	31개	18개	해당없음

〈표 3-11〉 사회복지사업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현황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 2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	○
	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	○	○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	○	○
	제6조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
	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	○
	제6조의3 삭제			
	제7조 삭제			
	제7조의2 삭제			
	제8조 삭제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	○	○
	제10조 지도·훈련	○		
	제11조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제11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		
	제11조의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 국가시험	○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장의2 삭제	제15조의2 사회복지의 날	○	○	○
	제15조의3 삭제			
	제15조의4 삭제			
	제15조의5 삭제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	
	제17조 정관		○	
	제18조 임원		○	
	제18조의2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임원의 보충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	
	제22조의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	
	제22조의3 임시이사의 선임		○	
	제22조의4 임시이사의 해임		○	
	제23조 재산 등		○	
	제24조 재산 취득 보고		○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	
	제27조 남은 재산의 처리			
	제28조 수익사업			
	제29조 삭제			
	제30조 합병	○	○	
	제31조 동일명칭 사용 금지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	○	
제2장의2 삭제	제33조의2 삭제			
	제33조의3 삭제			
	제33조의4 삭제			
	제33조의5 삭제			
	제33조의6 삭제			
	제33조의7 삭제			
	제33조의8 삭제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	○
	제34조의2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3 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	○	○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5조 시설의 장			
	제35조의2 종사자			
	제35조의3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제36조 운영위원회			
	제37조 시설의 서류 비치			
	제38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신고 등			○
	제39조 삭제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	○
제3장의2 재가복지	제41조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제41조의2 재가복지서비스	○	○	○
	제41조의3 삭제			
	제41조의4 가정봉사원의 양성	○	○	○
제4장 보칙	제42조 보조금 등			
	제42조의2 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	○	○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		
	제43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제43조의2 시설의 평가	○	○	
	제44조 비용의 징수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8조 압류 금지			
	제49조 청문	○	○	○
	제50조 포상	○		
	제51조 지도·감독 등	○	○	○
	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제5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의2 삭제			
	제53조의3 삭제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 과태료	○	○	○

〈표 3-12〉 영유아보육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결과 요약

구분	중앙	광역	기초	비고 (국가위임여부)
단위사무	46개	45개	44개	해당없음

〈표 3-13〉 영유아보육법 중앙-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주체 비교 현황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육이념			
	제4조 책임	○	○	○
	제5조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	○	○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	○	○
	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		
	제9조의2 보호자 교육	○	○	○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
	제11조의2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	○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	○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
	제1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		
	제15조의2 놀이터 설치	○	○	○
	제15조의3 비상재해대비시설	○	○	○
	제15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장 보육교직원	제16조 결격사유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의2 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	○
	제20조 결격사유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의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제23조의3 교육명령	○	○	○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
	제24조의2 보육시간의 구분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2 부모모니터링단		○	○
	제25조의3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	○	○
	제26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	○	○	○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	○	○
	제29조 보육과정			
	제29조의2 어린이집 생활기록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 급식 관리			
	제33조의2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6장 비용	제34조 무상보육	○	○	○
	제34조의2 양육수당	○	○	○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	○	○	○
	제34조의4 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 조사·질문	○	○	○
	제34조의6 삭제			
	제34조의7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	○	○
	제35조 삭제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	○	○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8조 보육료 등의 수납		○	
	제39조 세제 지원			
	제39조의2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	○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	○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	○	○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 지도와 명령	○	○	○
	제42조 보고와 검사	○	○	○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제43조의2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	○	○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	○
	제44조의3 이행강제금		○	○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	○	○
	제45조의2 과징금 처분	○	○	○
	제45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		

장	조	수행주체		
		중앙	광역	기초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제49조 청문	○	○	○
	제49조의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	○	○
제8장 보칙	제50조 경력의 인정			
	제51조 권한의 위임	○	○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	○	○
	제51조의3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
	제52조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	○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제9장 벌칙	제54조 벌칙			
	제54조의2 삭제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	○	○

제4절 유사지자체 사회복지기능수행 현황 비교

1.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기구 현황 비교

-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기구 현황
 -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기구 현황을 실·국·본부/ 과·담당관/ 담당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2019년 6월 기준)
 - 사회복지기능 관련 실·국·본부(3급 이상)의 개수는 1개에서 2개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경기, 서울,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모두 1개의 3급 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능 관련 과·담당관(4급)의 개수는 3개에서 14개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광주 등 7개 광역지자체가 4개의 4급 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와 유사하게 4개의 과급 기구를 설치한 지자체들은 과별 기능편제 방식이 거의 유사하여, 복지정책일반, 노인정책, 장애인정책, 여성가족정책으로 편제하고 있음
 - 4개의 과급 기구를 설치한 지자체들은 대체로 여성가족정책 기능 수행에 가장 많은 인력을 배분하고 있음

〈표 3-14〉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기구 현황

지자체	실·국·본부	과·담당관	담당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1급)	여성정책담당관 (36명)	여성정책기획팀, 젠더정책팀, 여성단체협력팀, 성평등노동팀, 여성일자리팀, 여성안심사업팀, 젠더자문관
		여성권익담당관 (16명)	여성권익기획팀, 여성권익사업팀, 늘푸른여성팀
		보육담당관 (32명)	보육기획팀, 공보육기반팀, 공보육운영팀, 보육지원팀, 보육사업팀, 현장관리팀
		가족담당관 (20명)	가족정책팀, 가족문화팀, 아동친화도시팀, 아동복지팀

지자체	실·국·본부	과·담당관	담당	
		아이돌봄담당관 (14명)	아이돌봄정책팀, 아이돌봄사업팀, 아이돌봄협력팀	
		외국인다문화담당 관(20명)	외국인정책팀,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주민인권팀, 글로벌센터운영팀	
	복지정책실 (1-2급)	복 지 기 획 관	복지정책과 (39명)	복지정책팀, 복지협력팀, 생활보장팀, 보훈복지팀, 복지정보팀, 법인시설팀
			지역돌봄복 지과 (23명)	지역돌봄기획팀, 찾아가는복지팀, 복지공동체팀, 복지시설팀, 민간자원팀
			어르신복지 과(25명)	어르신정책팀, 어르신돌봄팀, 요양보호팀, 장사문화팀
			인생이모작 지원과 (16명)	인생이모작정책팀, 인생이모작사업팀, 인생이모작시설팀
			장애인복지 정책과 (22명)	장애인복지정책팀,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권익보장팀
			장애인자립 지원과 (17명)	장애인자립정책팀, 장애인재가복지팀, 장애인편의시설팀
			자활지원과 (16명)	자활정책팀, 자활지원팀, 자활시설팀, 자활사업팀
			사회서비스 혁신추진반 (13명)	사회서비스정책팀, 사회서비스운영팀, 사회서비스원설립TF팀
부 산	복지건강국 (3급)	복지정책과 (44명)	사회복지정책팀, 자립지원팀, 생활보장팀, 법인시설지도팀, 고독사예방팀, 지역복지팀	
		장애인복지과 (23명)	장애인복지기획팀, 장애인자립지원팀, 장애인권익지원팀, 장애인일자리팀,	
		노인복지과 (31명)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고령친화산업팀, 장노년지원팀, 장노년일자리팀	
		건강정책과 (46명)	공공의료정책팀, 건강관리팀, 건강도시팀, 감염예방팀, 감염병대응팀, 가족건강팀, 정신건강팀, 공공의료진흥팀,	
		보건위생과 (33명)	의료지원팀, 의료시설팀, 의료관광팀, 의약품관리팀, 위생협력팀, 식품안전팀, 지방약무사무	
	여성가족국 (3급)	여성가족과 (31명)	여성가족팀, 일가정양립팀, 여성권익증진팀, 다문화외국인지원팀, 여성가족개발원경영혁신추진단	

지자체	실·국·본부	과·담당관	담당
		출산보육과 (24명)	출산장려팀, 보육행정팀, 보육평가팀,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과 (22명)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지원팀, 아동복지팀, 아동친화팀
대 구	보건복지국 (3급)	복지정책관 (33명)	복지기획팀, 보훈선양팀, 복지시설팀, 생활보장팀, 희망복지팀, 대구시립희망원혁신대책TF팀
		보건건강과 (38명)	보건행정팀, 의료관리팀, 약무팀, 건강증진팀, 정신건강팀, 감염병관리팀, 역학조사관
		어르신복지과 (19명)	어르신정책팀, 어르신복지팀, 어르신시설팀, 장사문화팀
		장애인복지과 (22명)	장애인정책팀, 장애인복지팀, 탈시설자립지원팀, 장애인시설팀, 재활복지팀
		위생정책과 (8명)	공중위생팀, 식품안전팀, 식품관리팀
	여성가족청 소년국 (3급)	여성가족정책과 (24명)	여성정책팀, 가족다문화팀, 양성평등팀, 여성권익팀
		청소년과(18명)	청소년육성팀, 청소년보호팀, 아동복지팀
		출산보육과 (18명)	인구정책팀, 출산장려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보건복지국 (3급)	복지정책과 (27명)	복지정책, 복지지원, 생활보장, 자활지원, 사회서비스
		장애인복지과 (23명)	장애인정책, 장애인권익지원, 장애인자립기반, 장애인서비스
		보훈다문화과 (16명)	보훈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생활지원
		보건정책과 (32명)	보건정책, 의약관리, 감염병예방, 감염병대응, 해외의료사업
		건강증진과 (20명)	건강증진, 정신건강, 치매관리, 만성병관리
		위생안전과 (23명)	위생정책, 식생활안전, 유통식품관리, 가공식품, 공중위생
인 천	여성가족국 (3급)	여성정책과 (25명)	여성정책, 여성지원, 여성권익, 가족지원
		출산보육과 (23명)	보육정책, 보육지원, 보육기반, 출산인구정책, 출산지원
		아동청소년과 (22명)	청소년정책, 청소년육성, 아동복지, 아동권리
		노인정책과 (22명)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노인지원, 장사문화

지자체	실·국·본부	과·담당관	담당
광 주	복지건강국 (3급)	사회복지과 (21명)	복지정책, 생활보장, 의료급여관리, 보훈복지, 다문화가족
		고령사회정책과 (19명)	고령사회정책, 고령복지, 노인시설지원, 노인문화지원
		장애인복지과 (15명)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시설, 장애인재활지원
		건강정책과 (24명)	보건기획, 건강증진, 정신보건, 의약관리, 감염병관리, 공중보건
		식품안전과 (14명)	식품안전, 위해식품지도, 공중위생
	-	여성가족 정책관(25명)	여성정책, 보육, 가족복지, 저출산아동,
대 전	보건 복지국 (3급)	복지정책과 (33명)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 다문화가족팀, 보훈팀, 공공의료혁신TF팀, 복지특별여성보좌관
		노인복지과 (17명)	노인정책팀, 노인건강팀, 노인시설팀, 장사시설팀
		장애인복지과 (14명)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 장애인시설팀,
		보건정책과 (31명)	보건정책팀, 의료관광팀, 의약관리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공중보건, 정신건강팀,
		식품안전과 (12명)	식품안전기획팀, 식품안전관리팀, 공중위생팀
	공동체 지원국 (3급)	공동체정책과 (22명)	공동체정책팀, 공동체기반팀, 마을협력팀, 자원봉사팀
		사회적경제과 (13명)	사회적경제팀, 경제공동체팀, 로컬푸드팀
		청년정책과 (12명)	대학청년팀, 청년활동지원팀
		교육복지청소년과	교육지원팀, 교육복지팀, 청소년팀, 아동팀, 보육팀
울 산	복지여성국 건강국 (3급)	복지인구정책과 (34명)	복지기획, 인구출산, 보육, 아동복지, 생활보장, 보훈
		어르신복지과 (15명)	고령사회, 어르신지원, 어르신일자리
		장애인복지과 (12명)	장애인지원, 장애인재활, 장애인자립기반
		여성가족청소년과 (34명)	여성정책, 가족복지, 청소년, 다문화
		시민건강과 (19명)	보건공공병원, 건강도시, 감염병관리

지자체	실·국·본부	과·담당관	담당
		식의약안전과 (16명)	위생, 의약관리, 식품안전
세 종	보건복지국 (3급)	복지정책과 (28명)	사회정책조정, 희망복지, 복지자원, 생활보장
		여성가족과 (17명)	여성정책, 인구가족, 보육기획, 보육지원
		아동청소년과 (21명)	아동정책, 청소년청년, 아동친화도시
		노인장애인과 (17명)	노인복지, 장애인정책, 장애인자립지원
		보건정책과 (33명)	보건의료정책, 감염병대응, 식품안전, 위생관리, 보건환경연구원설치TF
경 기	보건복지국 (3급)	복지정책과 (52명)	복지기획팀, 복지나눔팀, 생활보장팀, 희망복지팀, 보훈지원팀, 법인지원팀, 자립지원팀,
		청년복지정책과 (19명)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노인복지과 (27명)	노인정책팀, 노인시설팀, 노인지원팀, 노인일자리팀
		장애인복지과 (25개)	장애인정책팀, 장애인권익지원팀, 장애인자립지원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일자리팀
		보건정책과 (34개)	보건정책팀, 공공의료운영팀, 공공의료사업팀, 의약관리팀, 응급의료팀
		감염병관리과 (22명)	감염병정책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조사팀
		건강증진과 (24명)	건강정책팀, 지역보건팀, 정신보건팀
		식품안전과 (19명)	식품안전정책팀, 식품안전관리팀, 위생관리팀, 음식문화팀
	여성가족국 (3급)	여성정책과 (33명)	여성정책팀, 양성평등정책팀, 여성권익지원팀, 여성일자리팀, 경력단절여성지원팀
		가족문화과 (27명)	다문화정책팀, 가족정책팀, 가족친화지원팀, 다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
		보육정책과 (30명)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보육컨설팅팀, 공보육확충팀
		아동청소년과 (40명)	아동청소년정책팀, 청소년활동팀, 청소년자립보호팀, 아동복지팀, 아동권리팀, 선감학원대책TF팀
강 원	보건복지여 성국	복지정책과 (25명)	복지기획, 생활보장, 지역복지, 보육아동

지자체	실·국·본부	과·담당관	담당
	(3급)	경로장애인과 (18명)	경로정책, 경로시설, 장애인정책, 장애인재활
		여성청소년가족과 (16명)	여성정책, 여성복지, 다문화가족, 청소년
		보건정책과 (21명)	보건행정, 방역관리, 건강증진, 질병관리
		공공의료과 (13명)	공공의료정책, 의료원경영개선, 응급의료
		식품의약과 (13명)	위생관리, 식품안전, 의약품관리
총 북	보건복지국 (3급)	복지정책과 (24명)	복지기획팀, 복지사업관리팀, 생활보장팀, 아동복지팀, 보육지원팀
		노인장애인과 (24명)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장애인시설팀
		보건정책과 (34명)	보건정책팀, 건강증진팀, 정신보건팀, 의료관리팀, 해외의료팀, 질병관리팀
		식의약품안전과 (14명)	위생정책팀, 식품안전팀, 의약품관리팀
	-	여성정책관 (32명)	여성정책1팀, 여성정책2팀, 여성일자리팀, 가족지원팀, 청소년팀, 시설관리팀
총 남	저출산복지 보건실(3급)	출산보육정책과 (20명)	인구출산정책, 보육정책, 보육지원, 아동지원
		노인복지과 (16명)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사회복지과 (25명)	사회복지, 지역복지, 생활보장, 보훈
		장애인복지과 (16명)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 장애인시설, 장애인재활
		보건정책과 (25명)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응급의약, 공공의료, 병원선운영
		건강증진식품과 (21명)	식생활안전, 생명사랑, 건강증진, 치매관리, 식품위생
	-	여성가족정책관 (23명)	여성정책, 양성평등, 권익보호, 가족다문화, 청소년
전 북	복지여성보 건국(3급)	사회복지과 (27명)	행복정책기획, 저소득지원, 자활지원, 보육정책, 보훈복지
		여성청소년과 (23명)	여성정책, 여성권익, 청소년, 출산아동

지자체	실·국·본부	과·담당관	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 (20명)	노인복지, 노인시설안전,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안전
		보건의료과 (25명)	보건의료산업, 정신건강, 응급의료, 감염병관리
		건강안전과 (19명)	건강정책, 건강지원, 위생관리, 식의약안전
전 남	보건복지국 (3급)	사회복지과 (11명)	복지정책팀, 생활지원팀, 출산정책팀, 지역복지팀
		고령사회정책과 (14명)	어르신복지팀, 어르신일자리팀, 어르신시설팀
		장애인복지과 (13명)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재활팀, 장애인시설팀
		건강증진과 (61명)	공공보건팀, 건강증진팀, 질병관리팀, 정신보건팀,
		식품의약과 (20명)	식품안전팀, 음식문화팀, 의료관리팀, 통합의약팀
	-	여성가족정책관 (20명)	여성정책팀, 보육지원팀, 아동복지팀, 가족행복팀, 다문화팀
경 북	복지건강국 (3급)	사회복지과 (23명)	복지정책팀, 법인시설지도팀, 사회보장담당, 사회서비스팀
		노인효복지과 (24명)	효복지정책팀, 노인보건팀,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과 (17명)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자립팀, 장애인시설팀
		보건정책과 (20명)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건강증진팀, 의료관광팀, 치매관리팀, 질병관리팀
		식품의약과 (19명)	식의약정책팀, 공중의약팀, 식품안전팀
	-	여성가족정책관 (40명)	여성정책팀, 여성지원팀, 가족복지팀, 보육팀, 아동팀, 다문화팀, 청소년팀
경 남	복지보건국 (3급)	복지정책과 (24명)	복지정책, 사회서비스관리, 복지고용, 기초생활, 맞춤형복지,
		장애인복지과 (17명)	장애인정책, 장애인권익지원, 장애인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보건행정과 (51명)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건강증진, 정신보건, 공공의료정책, 공공보건, 병원선
		식품의약과 (23명)	식품의약정책, 식품안전, 유통식품, 의약, 응급의료
	-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 여성권익, 아동, 청소년, 다문화

지자체	실·국·본부	과·담당관	담당
제 주	보건복지여 성국 (3급)	(28명)	
		복지정책과 (13명)	복지정책, 생활보장, 지역복지
		노인장수복지과 (22명)	노인정책, 노인시설, 노인일자리, 양지공원
		장애인복지과 (12명)	장애인정책, 장애인시설, 장애인자활, 장애인일자리
		여성가족청소년과 (18명)	여성권익정책, 가족친화, 청소년 아동보육
		보건건강위생과 (26명)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증진, 정신건강, 감염병관리, 위생관리

〈표 3-15〉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기구 개수 분포

실·국·본부 개수	과·담당관 개수	해당 지자체
1개	3개	강원, 충북, 전북
	4개	광주, 울산, 세종, 경북, 전남, 경남, 제주
	5개	충남, 대전
2개	6개	부산, 대구
	7개	인천
	8개	경기
	14개	서울

2.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인력 현황 비교

○ 광역지자체 복지기능 해당 인력 현황

- 지자체의 사회복지직렬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음(2016년 12월 말 기준)
-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직렬 인력 규모는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직렬 인력 규모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 기능을 주로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
- 광주광역시는 광역지자체 평균에 비해 사회복지직렬 인력 규모가 낮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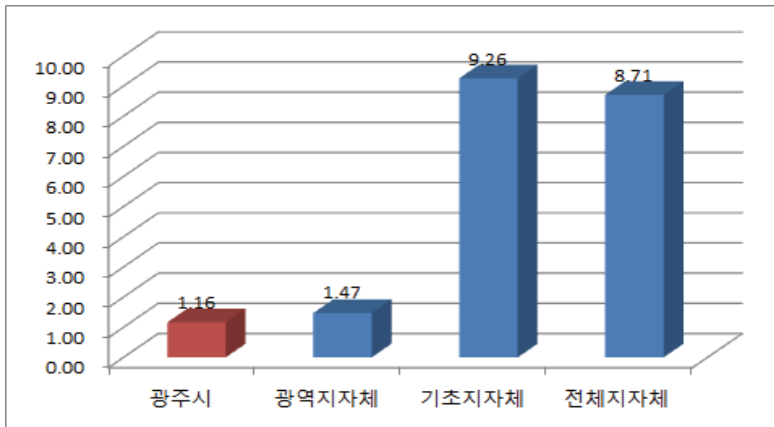
- 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3-16〉 참고)(세종시를 제외한 평균은 1.15%이므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약간 높음)
- 6대 광역시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정원 수에서는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사규모 지자체인 대전과 비교해서도 다소 부족함(〈표 3-17〉 참고)

〈표 3-16〉 사회복지직렬 인력 현황(광역시도전체)

(2016년 12월 말 기준)

지자체	전체(명)		사회복지(명)	
	현원	여성	현원	여성
서울	9,014	2,930	68(0.75%)	48
부산	4,039	1,210	55(1.36%)	35
대구	3,268	897	46(1.41%)	33
인천	3,433	1,110	38(1.11%)	29
광주	2,062	662	24(1.16%)	21
대전	2,152	663	32(1.49%)	24
울산	1,738	545	23(1.32%)	17
세종	1,290	510	85(6.59%)	61
경기	3,483	1,120	50(1.44%)	36
강원	1,963	487	19(0.97%)	13
충북	1,576	476	13(0.82%)	11
충남	1,794	414	21(1.17%)	17
전북	1,678	518	21(1.25%)	16
전남	1,834	481	18(0.98%)	14
경북	2,033	511	21(1.03%)	12
경남	1,991	624	25(1.26%)	15
제주	1,827	528	16(0.88%)	13

〈그림 3-6〉 사회복지직렬 인력 비율(%)



〈표 3-17〉 사회복지직렬 인력 현황(6대 광역시)

(2019년 5월 기준)

지 역	계	5급	6급	7~9급
평 균	52(40)	10(6)	19(17)	23(17)
부 산	73(68)	16(9)	25(24)	32(35)
대 구	59(44)	12(6)	21(21)	26(17)
인 천	60(37)	10(7)	23(15)	27(15)
대 전	44(32)	7(6)	17(16)	20(10)
울 산	35(26)	7(4)	13(13)	15(9)
광 주	40(33)	5(4)	14(12)	21(17)

주: ()은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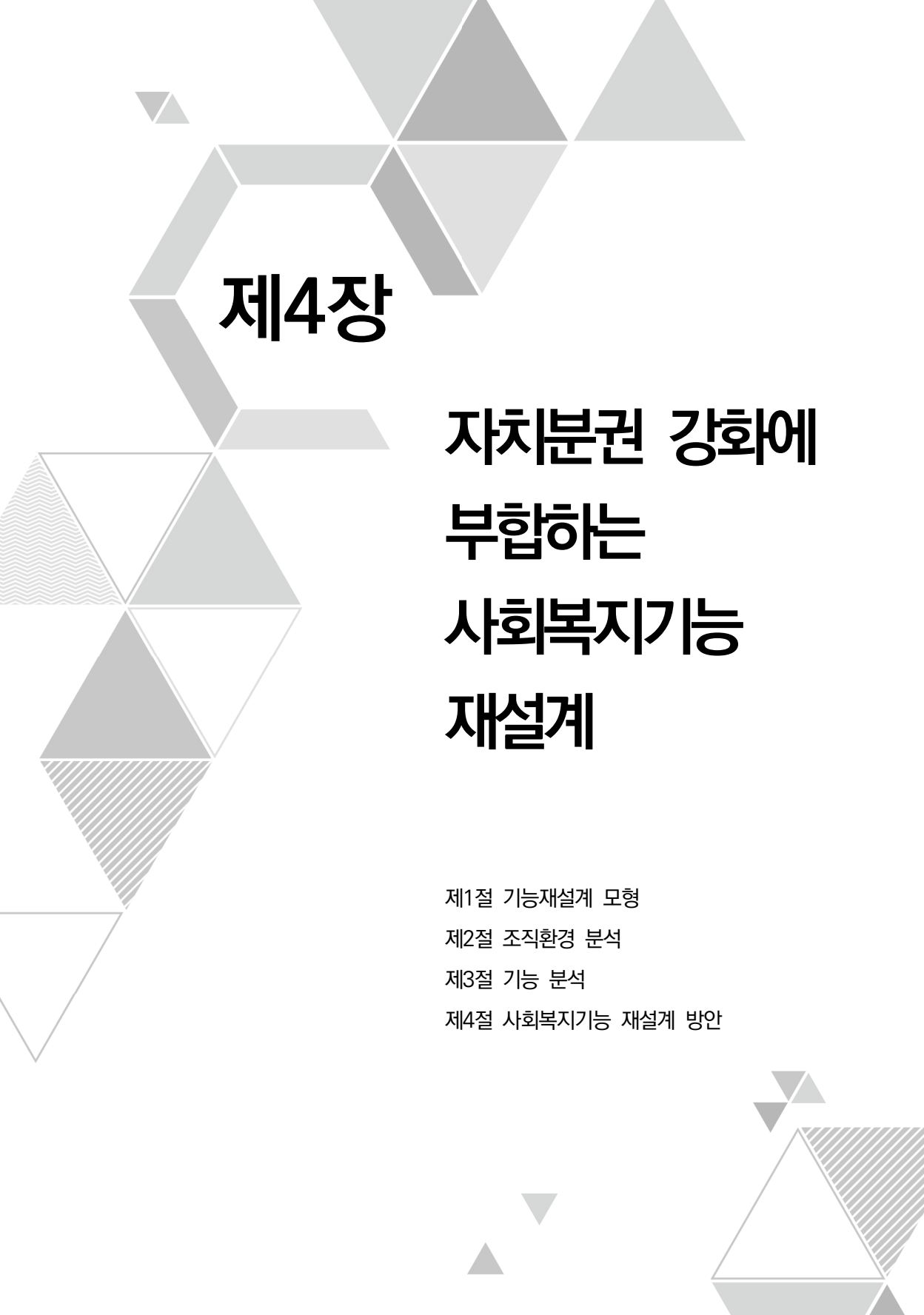
제5절 소결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직적 전달체계의 복지수행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유사지자체의 조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에 비해 기획·계획 기능은 약하고 기초지자체에 비해 집행 사무의 포괄범위가 좁으나 광역·도에 비해 광역시의 경우 관리감독 강화 수요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
 - 기획기능 강화 및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타 광역지자체와 기구 및 인력 규모 비교 결과, 광주광역시는 평균 기구 수 4.6개에 못미치고, 사회복지직렬 인력 수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그러나 세종시를 제외하면 사회복지직렬 인력 규모는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편임)

〈표 3-1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요약

구분	분석 결과	검토사항
수직적 전달체계 비교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수행 기구는 총 29개과이며, 광주광역시는 4개의 과급 기구에서 수행, 기초지자체인 광산구청에서는 5개과에서 수행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사무의 종류와 양은 중앙정부 또는 기초지자체에 비해 다소 적음 - 중앙정부에 비해 기획·계획 기능은 약하면서 기초지자체에 비해 집행 사무의 포괄범위가 좁음 ■ 법령 검토 결과 지자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동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대다수이므로 광역과 기초의 업무 배분 방식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음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분야 적정 사무의 범위 검토 ■ 기획기능 강화 필요 ■ 광역시의 경우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여부 검토

구분	분석 결과	검토사항
유사지자체 조직 비교 분석 결과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기구 수는 평균(4.6개)에 약간 못미침 ■ 광주광역시와 유사하게 4개의 과급 기구를 설치한 지자체들은 과별 기능편제 방식이 거의 유사함 ■ 광주광역시는 광역지자체 평균에 비해 사회복지직렬 비율이 낮음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사하거나 약간 높음)	■ 기구편제의 유사성이 복지수요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한 검토 ■ 복지수요의 차별성에 따른 기구 편제 차별화 검토 ■ 사회복지기능 담당 인력의 적정성 검토



제4장

자치분권 강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제1절 기능재설계 모형

제2절 조직환경 분석

제3절 기능 분석

제4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제4장 자치분권 강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제1절 기능재설계 모형

- 본 장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 재설계를 위해 조직환경 분석과 기능분석을 실시하여 조직재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됨
- 조직환경 분석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환경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성과 지향적 조직 설계를 목적으로 하며, 복지분야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검토하고, 복지수요를 나타내는 지표 추이 및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할 것임
 - 기능 분석은 현재 광주광역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 중 위탁, 타부서이 관, 확대·축소·폐지, 신설 기능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효율지향적 조직 설계를 목적으로 함

〈표 4-1〉 기능재설계 모형

구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성과 지향적 조직 설계 목적 (조직환경 분석)	■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 문헌분석
	■ 광주광역시 복지수요 분석 - 지표별 복지수요 분석 - 공무원 인식 조사	- 통계분석 - 유사지자체 비교분석 - 공무원 설문 조사
효율지향적 조직 설계 목적 (기능 분석)	■ 기능 분석 - 위탁기능 분석 - 이관 기능 분석 - 확대·축소·폐지 기능 분석 - 신규 기능 분석	- 공무원 설문 및 면담 조사 - 전문가 FGI

제2절 조직환경 분석

1. 복지분야 국정과제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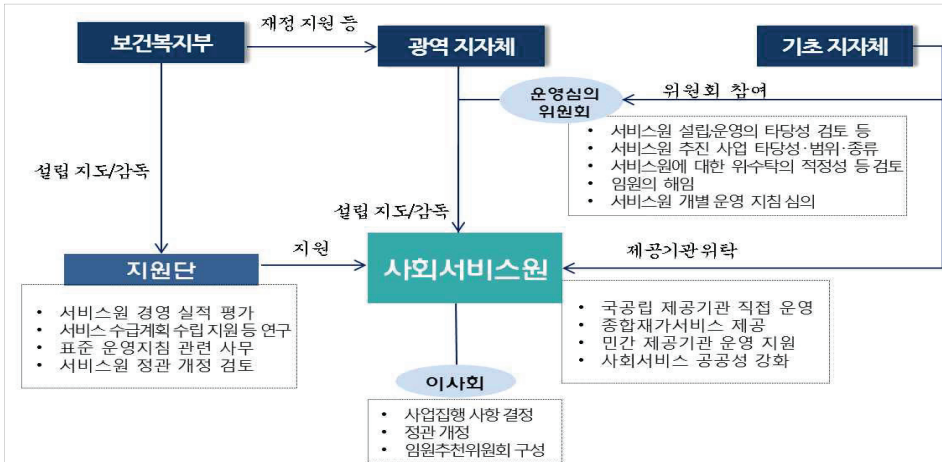
1)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현황

가. 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019년 현재, 전국적 확대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4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시범사업의 내용은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민간 단체 지원 등이며 시범사업 시행 후 정책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함
- 사업시행 시기 및 예산 규모는 지자체별 차등 설계·자율 집행에 의해 결정됨
 - 중앙정부로부터 사회서비스원 초기 설립비와 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지원받음
 - 지역 내에서 추진하던 기존 사업들과 연계·구축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구성하되,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이 제정될 시 본 사업형태로 전환 운영함
- 사회서비스원 관련 주체는 보건복지부, 중앙지원단,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으로 구성됨
 - 보건복지부는 종합적 계획수립, 대상 지역 선정, 중앙지원단 운영 등 총괄 지원을 담당함
 -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하며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 업무를 수탁 수행함
 - 광역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운영 시설 품질 향상,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의 시범사업 운영을 담당함
 -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지원기관

품질 향상 등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함

〈그림 4-1〉 사회서비스원 추진체계



출처: 보건복지부(2019)

-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공익법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재단법인이나 지방공기업을 개편하는 것도 가능함
 - 운영을 위한 임원 임명, 정관 및 제규정 제정, 설립 허가 등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의 의견, 저성과 국공립 시설 등을 위탁받아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재가서비스 사업의 규모화, 종사자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실현시킬 수 있음
 -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통합 서비스, 기본 근무시간, 월급제
-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간과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민간 기관에 상담, 시설 대체인력, 안전 점검 전문가 지원,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해줄 수 있음
- 민관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역사회 보장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음
- 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소속 시설의 직원은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 기존 운영 시설을 수탁하는 경우 종사자 고용보장원칙을 적용함
- 임·직원 급여는 사업 규모, 재정 여건, 개별 사업지침 등을 고려하여 책정 및 지급함
- 사회서비스원 운영 재정은 현행 수입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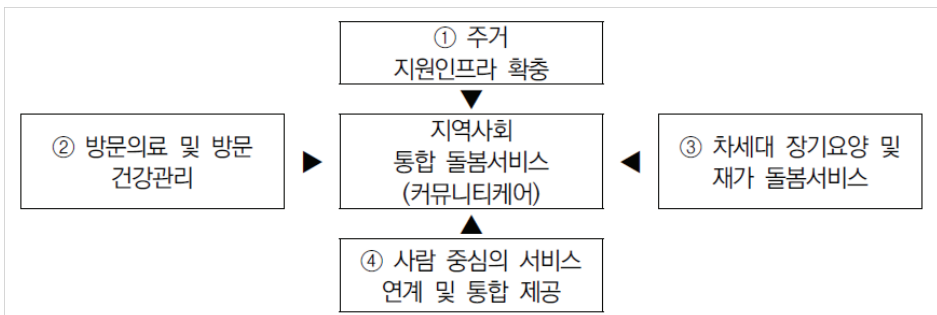
나. 커뮤니티 케어

-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인 ‘포용적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목적으로 소득보장 및 건강, 의료보장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음
- 포용(inclusiveness)적 복지의 실현책으로 각종 연금 및 수당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치매국가 책임제를 통한 정부 개입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포용적 복지국가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돌봄 사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커뮤니티케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현 정부는 기존 서비스가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체계를 사람 중심의 연계적·통합적 제공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 기반의 사회보장제도를 설립하고자 함

- 정부는 2019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동년 6월 향후 2년간 8개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통한 추진계획을 밝힘(보건복지부, 2019.1.10.)
- 2026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층 돌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 기존 요양 시설 중심의 돌봄은 획일적 서비스, 회전문 현상 등의 문제와 요양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노인층과 지역사회의 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함
 - 2018년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추진단을 구성하여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함
-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서비스를 ‘시설보호중심’에서 ‘지역보호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임
 - 2019년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기반으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한 후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에는 지역별 맞춤형 커뮤니티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는 주거 인프라 확충, 방문 의료·건강관리, 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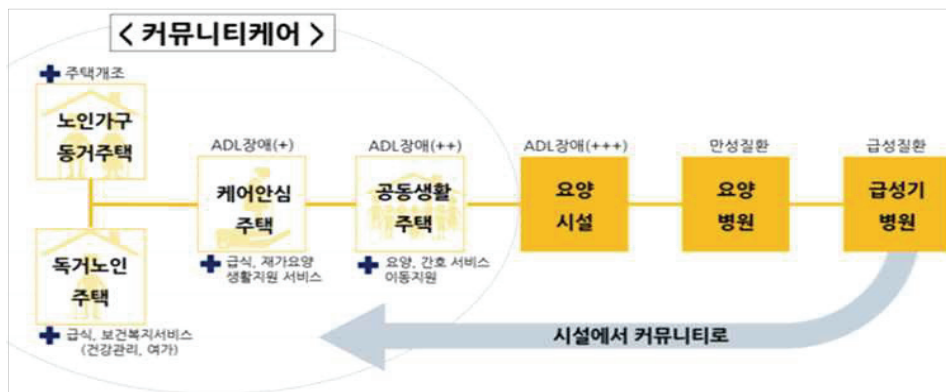
〈그림 4-2〉 커뮤니티케어의 4대 핵심요소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11. 20.) 보도자료.

-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은 노인들이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요양시설 퇴소자 등을 우선하여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집수리 사업 등을 실시함
 -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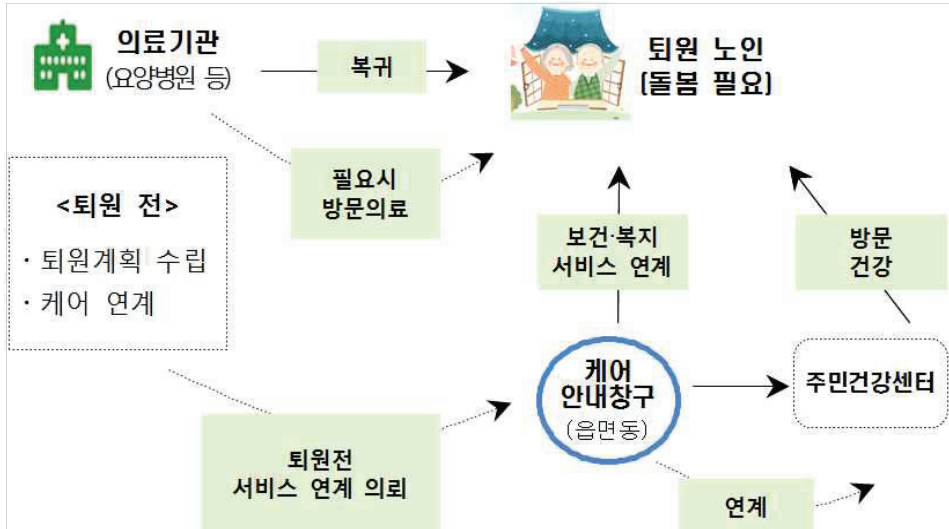
〈그림 4-3〉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출처: 광주복지재단(2019)

- ‘주민건강센터’ 확충을 통한 방문 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활성화
 - 기존 보건지소 기능전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주민건강센터를 대폭 확보함
 - 지역사회 내의 거동 불편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상담 및 관리, 경로당·노인 등에서의 건강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 접근성 확보
 - 지역 병원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협업하는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운영하여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함

〈그림 4-4〉 방문 건강 및 방문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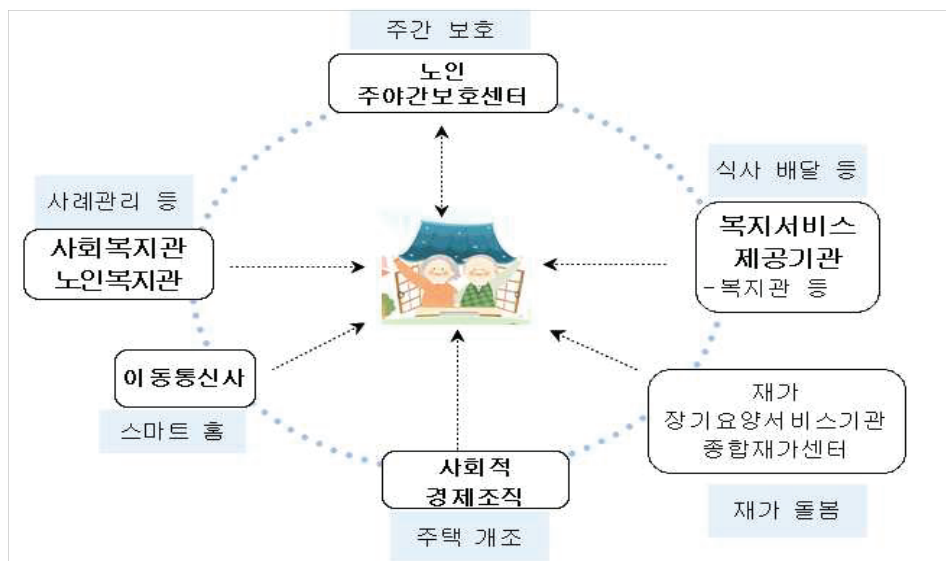


출처: 광주복지재단(2019)

- 장기요양보험 확대 및 차세대 재가 돌봄 서비스를 통한 노인 복지 확대
 - 장기요양보험²⁴⁾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받는 노인들을 2025년까지 11%이 상(OECD 수준)으로 증대
 -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 돌봄, 주·야간보호, 식사배달, 사례관리 등을 통한 다양한 재가서비스 지원

24)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그림 4-5〉 다양한 재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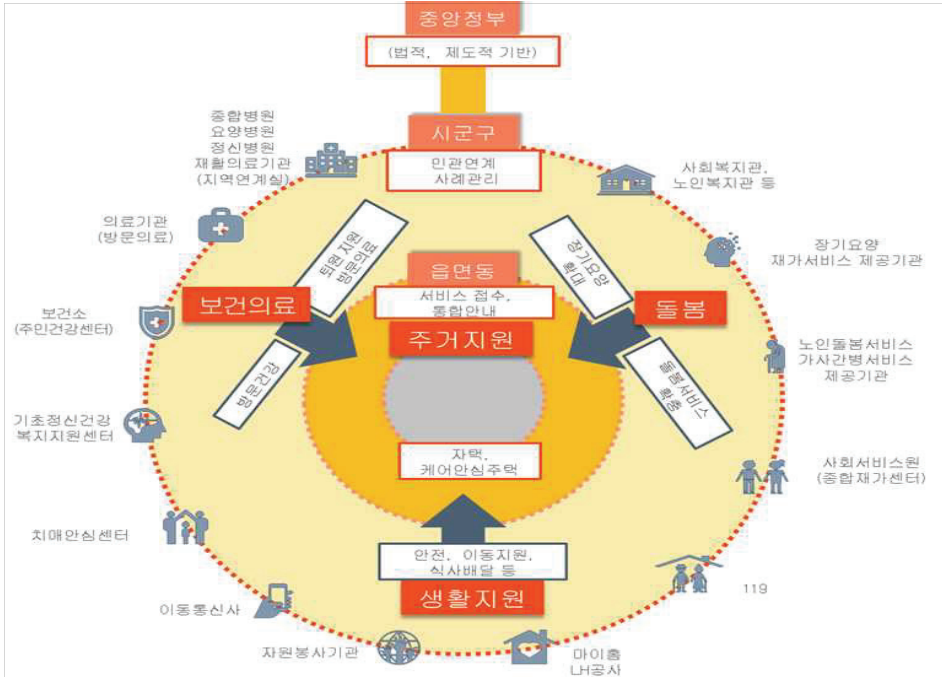


출처: 광주복지재단(2019)

○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 보건-복지 간의 분절적인 서비스를 넘어 상호 연계된 서비스를 지향
- 지역사회 내의 민관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서비스 연계를 위한 ‘케어안 내 창구’ 신설
- 지역 사회의 자율형 케어 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인력 대폭 확충

〈그림 4-6〉 지역 자율형 케어 체계



출처: 광주복지재단(2019)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한 지역별 모델 개발 및 커뮤니티케어 제공기관 마련
 - 커뮤니티케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의 서비스 제공 핵심 인프라 마련
 -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및 복지 서비스 제공자 확충을 통한 재정적·인적 인프라 마련
- 보건복지부는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8개 지자체에서 시행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분야를 발표함
 - 노인통합 돌봄모델(4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모델(2개), 정신질환자 지역 사회정착 지원모델(1개), 노숙인 자립 지원모델(1개)

- 읍면동 차원의 ‘케어안내창구’, 시군구 차원의 ‘지역 케어회의’를 통해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실시
- 보건복지부는 4개 선도사업에 대한 개요 및 추진일정, 선도사업 대상 지역과의 연계 방식(보건복지부 연계사업, 타 부처 연계사업)을 제시하였음
- 4가지 복지 분야 중 정부는 노인·장애인 관련 연계 사업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어 상세 사항을 제시하였음
- 노인 연계 사업별 시행주체는 지자체,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지자체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과 ‘안심생활지원’의 지원 사업을 담당함.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 소속 환자 퇴원을 위한 기관 자체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방문 진료의 일차적 시행을 담당함
- 장애인 연계사업별 시행주체는 지자체, 의료기관으로 노인 연계사업과 비슷한 형태이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수행기관의 3개 기관이 연계되어 실시함

〈표 4-2〉 4대 선도사업별 부처 연계사업 개수

(단위 : 개)

구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
연계사업	7	2	2	1
우선선정사업	10	11	5	1
기존사업 연계	2	2	2	3
합계	19	15	9	5

출처: 보건복지부(2019)

〈표 4-3〉 시행주체 4대 선도사업

구분	내용
지자체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 안심생활지원 •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및 의료기관	• 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민간 기관	• 안심생활지원 • 케어안심주택운영지원 • 의료취약계층 건강권 증진사업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 제공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자원 활용
다기관 연계	•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 개발원, 직업재활수행기관)

* 본 표의 내용은 노인 연계사업과 장애인 연계사업의 내용에 한함
출처: 보건복지부(2019)

-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체계는 일정 수준 갖춰져 있으나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합의와 노력이 필요함
 -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요양병원·지역의료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방문)보건의료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함
- 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중앙 정부의 방향성과 각 지역의 실정에 모두 부합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Bottom-up 지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지방 정부 주도적인 변화를 꾀함
 - 지자체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자들의 인식 전환

을 주도함으로써 상호 간의 협력·연계를 활성화시켜야 함

-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에 구축해온 보건·복지 체계를 바탕으로 두고 각 분야의 연계를 엮은 포괄적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음

2) 광주광역시 공무원 인식 조사 결과

-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회복지기능이 무엇인지, 이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 및 유리한 점에 관한 질문에 대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부서 공무원들의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현재 주요국정과제인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이에 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담당 직원 수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있었음

〈표 4-4〉 선도적 수행 필요 기능

구분			선도 필요 기능	유리한 점	장애 요인
실국명	과명	담당명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다문화 가족팀	- 커뮤니티 케어 - 사회서비스원 설립	- 복지 현장에서의 다 양한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담당 직원 수의 부 족으로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움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정책 팀	- 협회, 시설 단체의 예·결산, 이사회 회 의록, 후원금 내역 공개	- 투명한 회계처리, 이 사회 운영사항 공개	-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공개할 의무가 없음
-	여성가족 정책관실	가족복지 팀	- 사회복지 시설·보조 금 집행상태에 대한 분석		

-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광역지자체 기능 변화에 관한 예측 질문에 대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부서 공무원들의 응답은 아래와 같음
 - 광역지자체도 사회서비스원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모델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4-5〉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광역지자체 기능 변화 예측

실국명	구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변화 예측
	과명	담당명	
복지 건강국	고령사회 정책과	노인시설 지원담당	- 사회서비스원과 민간위탁기관과의 차별화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 면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시해야 된다고 봄
	사회 복지과	다문화 가족팀	-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등 공공부문의 사회서비 스 직접제공자임 - 광주시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잘하고 있는 점은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모델이 되도록 지원하고, 서비 스원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제도 개선 방안 모색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정책팀	- 공공성 강화로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임

2. 광주광역시 복지수요 측면

1) 지표별 복지수요 현황

- 광주광역시 고령인구비율
 - 고령인구비율은 전체인구에서 만 65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며,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 2018년 고령화인구비율로 광주광역시는 12.8%로 전국 14.8%보다 1.9%p 낮음

- 지난 10년간(2009~2018년) 고령인구비율을 누계로 하면 광주광역시
106.2%로 전국 125.0%보다 18.9%p 낮음
- 광주광역시의 고령인구비율은 전국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지난
2009년 8.7%의 고령인구비율이 2018년 12.8%로 4.2%p 가량 증가한 것
으로 고령인구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4-6〉 고령인구비율(200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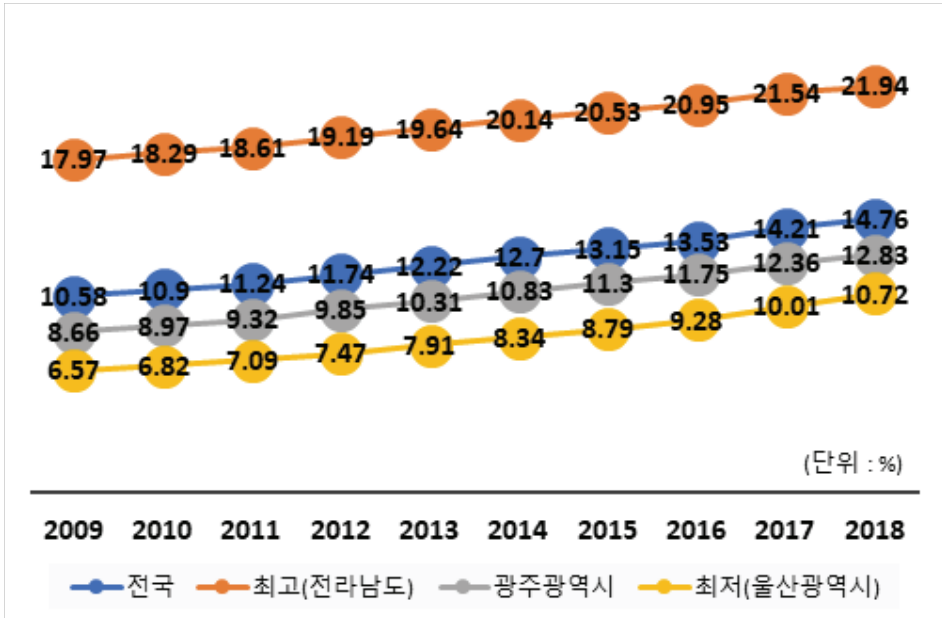
(단위: %)

행정구역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9~18 년누계
전라남도	18.0	18.3	18.6	19.2	19.6	20.1	20.5	21.0	21.5	21.9	198.8
경상북도	15.4	15.6	15.7	16.2	16.8	17.3	17.8	18.2	19.1	19.8	171.8
전라북도	15.0	15.2	15.6	16.2	16.7	17.2	17.8	18.3	18.9	19.5	170.5
강원도	14.4	14.8	15.2	15.7	16.2	16.6	16.9	17.2	18.1	18.8	163.7
충청남도	14.8	14.9	15.0	15.3	15.6	16.0	16.4	16.7	17.2	17.5	159.4
충청북도	13.0	13.2	13.4	13.8	14.1	14.5	14.8	15.1	15.8	16.4	144.1
부산광역시	10.8	11.3	11.8	12.5	13.3	14.0	14.7	15.3	16.3	17.1	136.9
제주특별자치도	11.9	12.2	12.6	13.0	13.4	13.6	13.8	13.9	14.2	14.4	132.8
경상남도	11.6	11.8	12.1	12.5	13.0	13.4	13.8	14.2	14.9	15.5	132.8
전국	10.6	10.9	11.2	11.7	12.2	12.7	13.2	13.5	14.2	14.8	125.0
대구광역시	9.7	10.0	10.4	10.9	11.6	12.2	12.7	13.2	14.0	14.7	119.5
서울특별시	9.2	9.7	10.2	10.8	11.5	12.0	12.6	13.1	13.8	14.4	117.3
광주광역시	8.7	9.0	9.3	9.9	10.3	10.8	11.3	11.8	12.4	12.8	106.2
대전광역시	8.4	8.7	9.0	9.4	9.8	10.3	10.9	11.3	12.0	12.7	102.5
인천광역시	8.3	8.6	8.9	9.4	9.8	10.3	10.7	11.0	11.7	12.3	101.0
경기도	8.4	8.7	9.0	9.4	9.8	10.2	10.5	10.8	11.4	11.9	100.0
울산광역시	6.6	6.8	7.1	7.5	7.9	8.3	8.8	9.3	10.0	10.7	83.0
세종특별자치시	-	-	-	15.2	14.7	12.7	10.6	10.0	9.6	9.3	82.1

주: 산식 = 고령인구비율(%)=(65세이상인구÷전체인구)×100

자료제공: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4-7〉 고령인구비율



주1 : 최고, 최저 기준은 2009~2018년 누계

○ 광주광역시 노령화지수

-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율로, 연금 및 재정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됨
- 2019년 노령화지수로 광주광역시는 92.5%로 전국 116.4%보다 23.9%p 낮음
- 광주광역시의 노령화지수는 전국 기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지난 2010년 47.6%의 노령화지수가 2019년 92.5%로 45.1%p(1.9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노령화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4-7〉 노령화지수(2010~2019년)

(단위: %)

행정구역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라남도	123.4	128.4	134.5	141.0	147.6	154.2	162.1	170.0	175.4	181.0
경상북도	108.2	111.3	116.6	122.6	129.4	136.7	143.1	151.9	159.7	167.1
강원도	95.2	100.4	107.2	114.5	121.5	128.9	136.3	145.9	154.1	162.9
전라북도	97.0	101.2	107.6	114.0	120.4	128.3	136.8	144.5	150.6	157.4
부산광역시	82.3	88.1	96.0	104.1	112.5	121.4	129.3	138.7	147.4	156.0
서울특별시	66.2	71.4	78.5	86.0	93.6	101.7	109.0	116.9	124.4	132.0
충청북도	81.7	84.4	88.6	93.3	98.1	103.8	109.6	116.1	122.0	128.4
충청남도	91.9	93.9	96.9	100.8	105.2	110.4	115.1	119.6	123.4	127.6
대구광역시	62.4	66.7	72.5	78.9	85.7	92.9	99.8	107.3	114.9	121.8
전국	67.3	71.0	76.1	81.5	87.0	93.0	98.6	104.8	110.5	116.4
경상남도	70.3	73.6	77.8	82.5	87.5	92.8	98.1	104.0	109.5	115.1
제주특별자치도	64.8	68.8	73.2	77.4	80.9	84.6	88.3	91.7	94.8	98.4
대전광역시	49.1	51.9	55.9	60.2	64.9	71.2	77.0	83.3	89.2	95.7
인천광역시	51.2	54.7	59.1	63.6	68.5	73.9	78.6	84.4	89.7	95.4
광주광역시	47.6	50.6	55.4	60.3	65.4	71.0	76.8	82.5	87.4	92.5
경기도	47.6	50.5	54.5	58.6	62.7	67.6	71.9	76.6	81.3	86.3
울산광역시	37.2	40.1	43.7	47.9	52.1	56.6	61.1	66.4	71.3	76.5
세종특별자치시	-	-	111.5	89.9	83.1	56.9	48.9	46.0	43.6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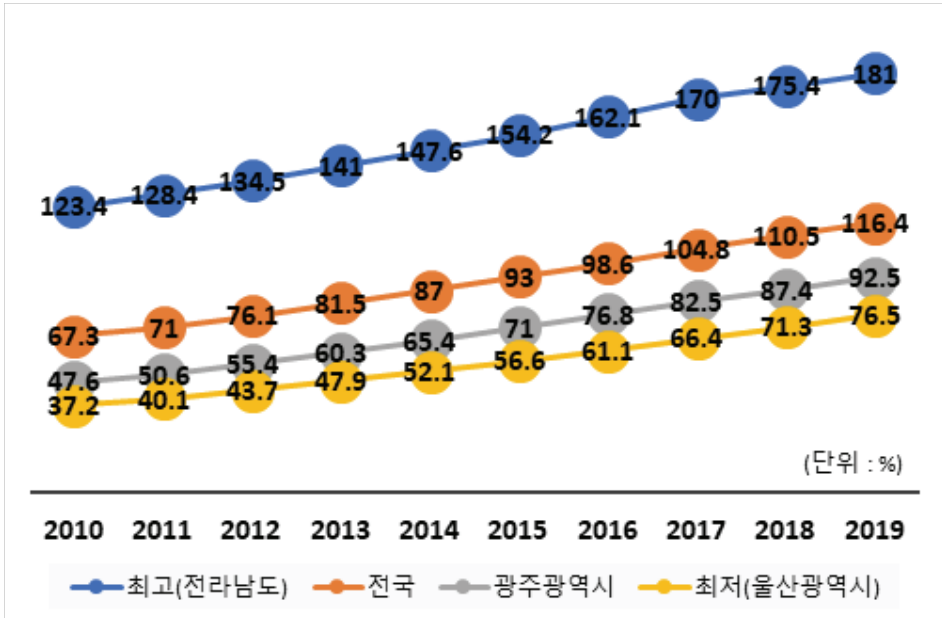
주1: 산식 = 노령화지수={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주2: 2017년 6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주3: 매년 7.1.시점의 자료,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 상관없이 대한민국 상주 인구임(외국인 포함)

자료제공: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과

〈그림 4-8〉 노령화지수



○ 광주광역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로 인구의 연령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부양비는 점점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유년부양비는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광주광역시 총부양비는 36.4%이며 10년 뒤 2028년 총부양비는 48.6%로 12.2%p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 특히 유소년부양비는 2019년 18.9%에서 2028년 18.7%로 크게 증감이 없으나, 노년부양비가 2019년 17.5%에서 29.9%로 12.4%p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돼, 이는 노년인구 증가율이 출산 저하율보다 높음에 따라 총부양비에 노년인구 부양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표 4-8〉 광주광역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계(2019~2028년)

(단위: %)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36.4	18.9	17.5	92.5	37.5	18.9	18.6	98.7	38.4	18.8	19.6	104.0	39.4	18.7	20.7	110.2	40.5	18.6	21.9	117.6
2024				2025				2026				2027				2028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총	유소년	노년	노령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수
42.1	18.7	23.4	125.1	43.9	18.8	25.1	133.6	45.6	18.8	26.8	143.1	46.9	18.7	28.2	150.5	48.6	18.7	29.9	159.2

주1: 총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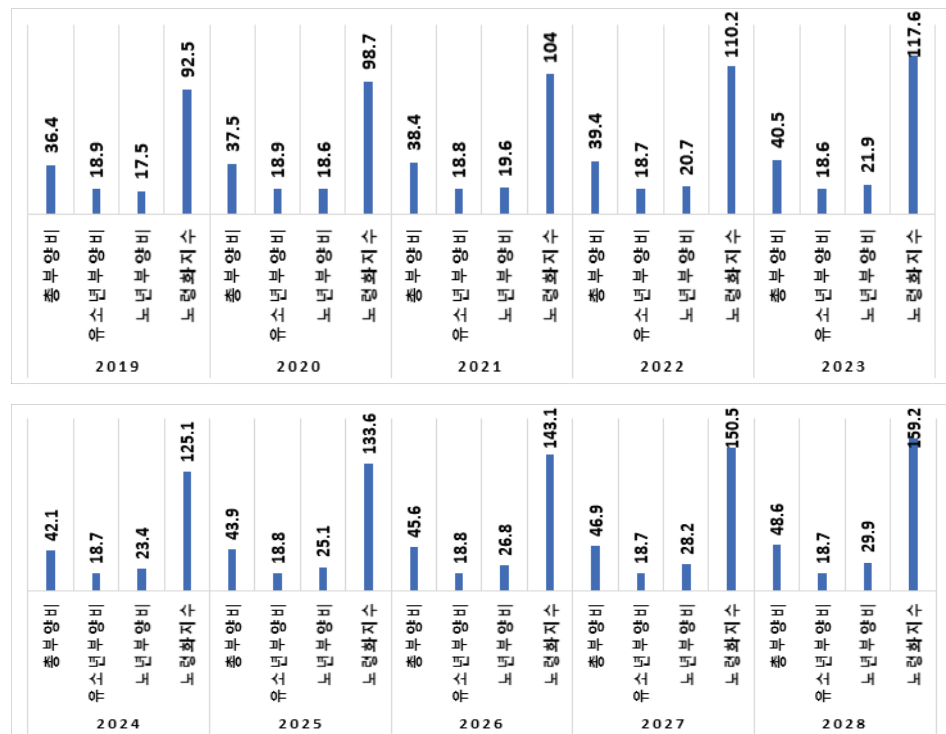
주2: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주3: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노년인구

주4: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백명당 노년인구

출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그림 4-9〉 광주광역시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계



○ 광주광역시 영유아 인구 추이

-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지원 등에 기준이 될 지표임
- 2018년 영유아 인구로 광주광역시는 71,502명으로 전국 평균 109,021명보다 37,519명 적음
- 지난 2009년 대비 2018년 대비 증감률로 광주광역시는 △16.4%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 감소분 △16.9%와 비슷한 규모임
- 광주광역시의 영유아 인구 감소 추이는 전국 평균 기준에 해당하나, 감소의 규모는 전국 감소 규모 상위 5위권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할 수 있음

〈표 4-9〉 영유아 인구 추이(2009~2018년)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9년 대비 18년 증감률(%)
세종특별자치시	-	-	-	7,360	8,052	11,783	17,888	20,671	23,564	25,520	246.7%
제주특별자치도	34,643	34,496	34,791	35,433	35,380	35,968	36,800	37,120	36,646	35,190	1.6%
울산광역시	66,078	66,090	67,754	69,826	69,574	70,124	70,709	69,468	66,455	61,743	-6.6%
경기도	725,746	734,996	748,040	758,105	746,577	737,803	738,754	729,339	706,088	677,880	-6.6%
부산광역시	153,636	153,080	156,472	160,319	159,465	159,816	162,479	160,015	152,465	142,927	-7.0%
인천광역시	152,192	152,329	158,758	164,473	163,530	162,895	162,895	158,698	150,553	141,271	-7.2%
충청남도	117,882	119,513	123,274	120,211	118,938	117,484	117,546	115,819	112,339	106,134	-10.0%
충청북도	84,846	85,391	87,291	88,139	86,592	85,340	84,670	82,861	79,261	75,035	-11.6%
경상남도	187,727	188,640	192,054	195,016	191,336	190,029	189,730	184,865	177,307	165,098	-12.1%
대구광역시	124,359	123,208	124,198	126,056	123,728	122,409	122,626	120,756	115,998	109,021	-12.3%
경상북도	134,724	134,446	136,529	138,395	136,156	134,949	135,507	133,079	126,956	117,991	-12.4%
전라남도	95,844	95,123	96,196	97,468	95,456	94,151	94,460	91,910	87,010	80,516	-16.0%
광주광역시	85,754	85,822	87,003	87,735	85,828	84,480	83,026	80,055	76,483	71,502	-16.6%
전국 평균	171,034	170,936	173,576	165,653	162,897	161,284	161,171	157,652	151,089	142,079	-16.9%
대전광역시	87,627	87,180	89,215	90,620	89,639	87,879	85,620	83,041	78,013	71,977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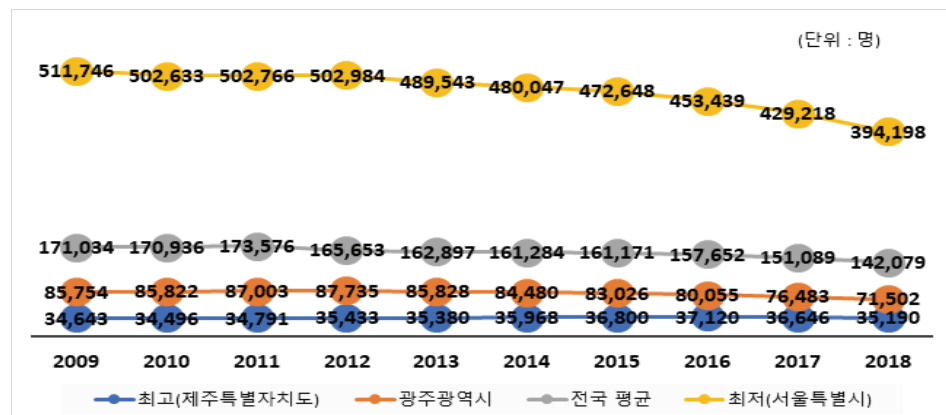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9년 대비 18년 증감률(%)
전라북도	96,787	96,178	97,233	98,167	96,006	94,369	93,151	89,923	84,546	77,965	-19.4%
강원도	76,946	75,851	75,635	75,796	73,455	72,309	71,392	69,029	65,614	61,381	-20.2%
서울특별시	511,746	502,633	502,766	502,984	489,543	480,047	472,648	453,439	429,218	394,198	-23.0%

주1: 만6세미만의 주민등록인구

주2: 표는 증감률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 세종시는 2012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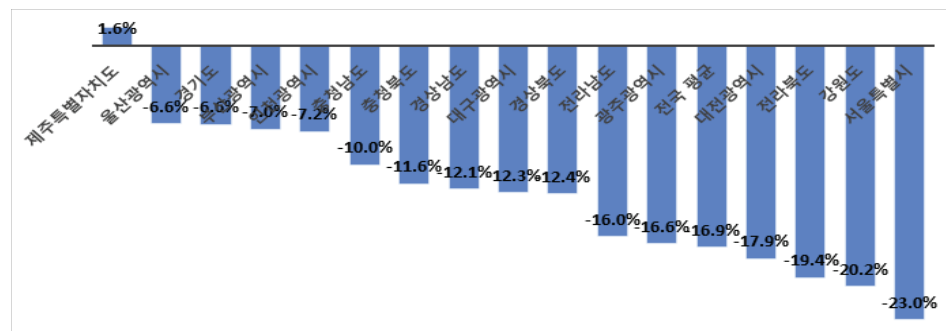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4-10〉 영유아 인구 추이



주1: 최고, 최저 기준은 2009년 대비 2018년 증감률

〈그림 4-11〉 영유아 인구 증감률(2009년 대비 2018년 기준)



주: 시계열이 동일하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 제외함

○ 광주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애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의 수를 말하며,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자료임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로 광주광역시는 65,712명으로 전국 평균 93,038명 보다 27,326명 적음
- 지난 2008년 대비 2017년 대비 증감률로 광주광역시는 7.1%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은 △2.7% 감소했음
- 광주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추이는 전국 평균적으로 감소하나 광주광역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음

〈표 4-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2008~2017년)

행정구역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8년대비 17년증감 률(%)
인천광역시	69,786	73,055	73,749	71,700	70,860	70,984	72,113	97,334	100,301	98,789	41.6%
서울특별시	206,133	215,016	214,256	206,808	199,310	201,958	206,687	258,427	267,023	263,347	27.8%
경기도	207,821	212,037	209,175	199,335	192,170	189,259	189,400	257,850	263,841	261,050	25.6%
세종특별자치시	-	-	-	-	3,442	3,304	3,274	4,192	4,286	4,284	24.5%
대전광역시	46,635	48,633	48,338	46,549	44,992	44,066	43,469	53,930	54,490	52,357	12.3%
광주광역시	61,339	65,487	65,821	62,482	60,684	59,962	59,598	71,683	69,420	65,712	7.1%
부산광역시	138,890	144,860	145,198	141,597	135,973	130,835	126,962	152,389	149,528	145,113	4.5%
대구광역시	100,113	107,918	108,586	104,532	99,473	96,803	93,539	113,152	107,763	103,132	3.0%
울산광역시	18,741	19,393	18,851	17,191	15,804	15,353	15,363	21,375	18,776	18,821	0.4%
전국평균	95,621	98,033	96,864	91,828	82,002	79,464	78,160	96,845	95,918	93,038	-2.7%
제주특별자치도	23,147	24,373	24,595	23,746	21,986	21,187	20,101	24,513	23,335	21,937	-5.2%
경상남도	106,597	107,294	104,797	98,939	93,977	89,622	86,996	107,148	104,213	100,904	-5.3%
강원도	64,679	66,973	66,503	62,543	58,820	56,184	54,841	63,448	62,509	60,627	-6.3%
충청북도	57,400	58,505	57,408	53,370	49,669	46,372	44,964	55,359	53,748	51,505	-10.3%
전라북도	115,093	113,782	110,894	103,085	95,656	90,280	87,008	103,248	99,708	94,639	-17.8%
충청남도	74,105	74,780	72,989	66,884	58,363	54,970	53,288	64,120	62,677	60,411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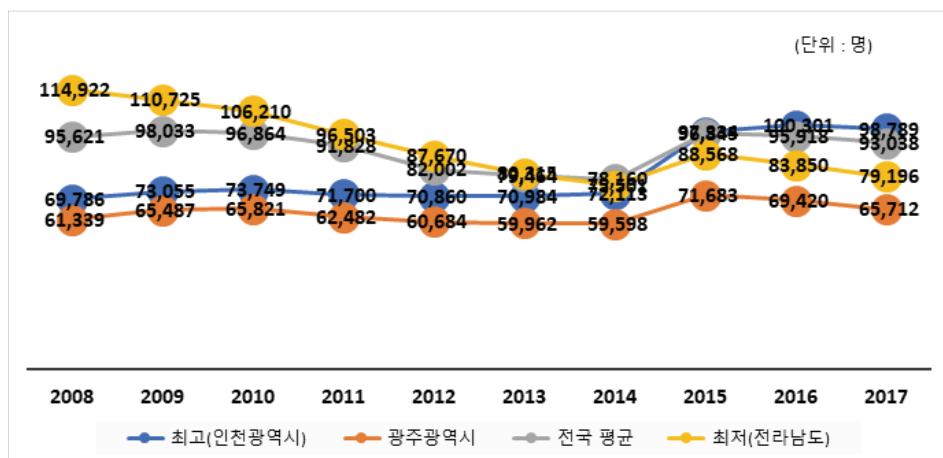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8년대비 17년증감 률(%)
경상북도	124,538	125,702	122,450	113,990	105,193	99,437	95,609	109,627	105,146	99,822	-19.8%
전라남도	114,922	110,725	106,210	96,503	87,670	80,315	75,501	88,568	83,850	79,196	-31.1%

주: 만6세미만의 주민등록인구

주2: 표는 증감률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 세종시는 2013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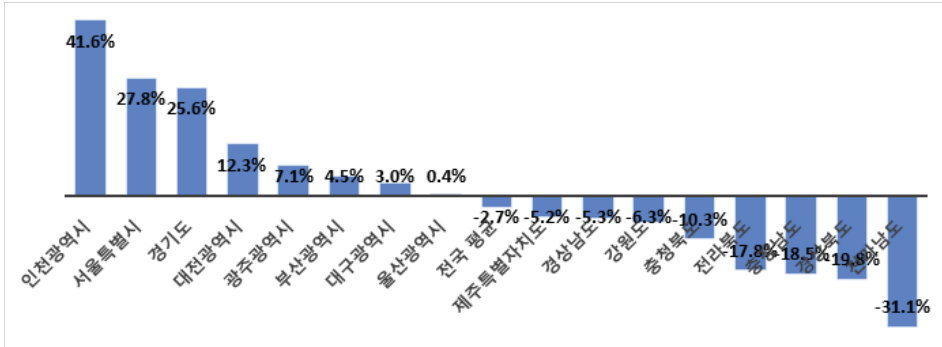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그림 4-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주1: 최고, 최저 기준은 2008년 대비 2017년 증감률

〈그림 4-13〉 영유아 인구 증감률(2009년 대비 2018년 기준)



주: 시계열이 동일하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 제외함

○ 광주광역시 인구 십만명 당 사회복지 시설 수

- 인구 십만명 당 사회복지 시설 수는 단위 인구(10만명)로 환산한 사회복지 시설의 수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 * 사회복지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의 취약자 계층의 보호·생활지도·재활훈련 그리고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임
- 2016년 광주광역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는 10.35개이며 10년 전 5.16.개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했으나, 동기간 전국 평균이 2016년 14.15개이며 10년 전인 4.81개보다 세 배가량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 규모가 적음

〈표 4-11〉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2007~2016년)

(단위: 개)

행정구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원도	9.58	11.80	15.20	17.45	19.27	20.08	23.86	25.51	26.52	27.34
충청북도	9.76	14.35	17.15	20.20	21.50	22.48	22.70	23.05	23.55	24.50
전라남도	6.22	10.73	12.75	16.89	5.90	18.54	20.66	22.09	22.94	23.37

행정구역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충청남도	7.52	9.66	11.04	15.37	15.61	16.36	17.19	18.81	19.30	19.70
경상북도	5.82	8.12	10.41	13.05	13.71	14.82	15.60	16.59	17.80	18.07
전라북도	11.01	13.36	14.29	17.66	16.60	17.19	17.35	17.85	17.54	17.96
인천광역시	3.08	4.94	7.12	10.11	10.71	11.39	12.19	14.54	16.13	16.79
경기도	5.08	6.46	9.19	11.81	11.72	12.87	13.37	14.24	14.65	16.59
제주특별자치도	9.66	9.81	11.37	13.65	14.06	14.39	15.66	15.64	15.86	15.27
대구광역시	3.57	4.21	5.26	8.04	9.77	11.97	13.99	14.28	14.71	14.65
전국 평균	4.81	6.54	8.37	10.74	11.01	11.75	12.38	13.12	13.55	14.15
대전광역시	4.61	6.14	7.41	9.24	9.57	9.97	9.92	10.71	11.06	11.42
광주광역시	5.16	6.47	7.67	9.35	9.70	9.73	10.39	10.84	10.94	10.35
경상남도	5.16	6.14	7.32	8.97	9.28	9.40	9.69	9.70	9.75	9.78
세종특별자치시	-	-	-	-	-	19.45	17.19	14.09	10.43	8.64
서울특별시	1.85	3.68	5.05	6.54	6.65	6.94	7.49	7.93	8.12	7.96
울산광역시	3.64	3.42	4.04	5.42	5.20	5.06	6.40	6.52	6.99	7.42
부산광역시	3.21	4.15	5.11	6.47	5.97	7.32	5.75	5.80	5.83	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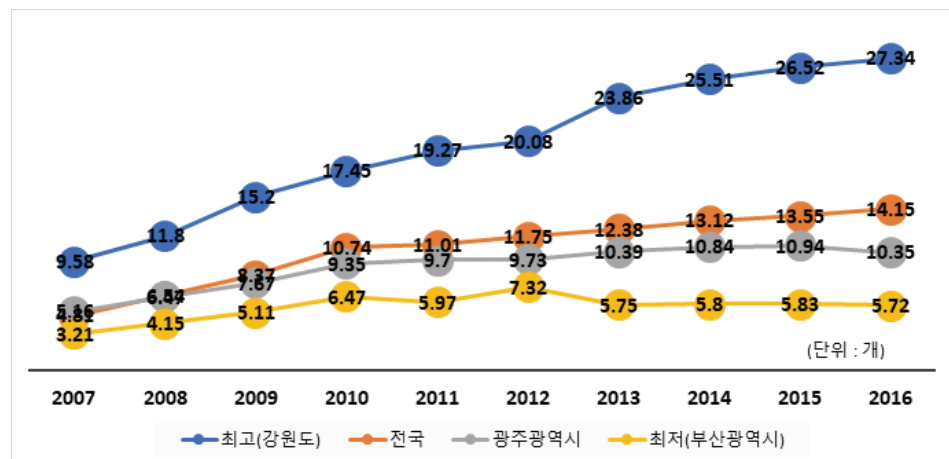
주1: 산식 =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총 사회복지시설수÷주민등록인구)×100,000

주2: 2017년 6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주3: 매년 7.1.시점의 자료,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 상관없이 대한민국 상주 인구임(외국인 포함)

자료제공: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출처: 시도통계연보·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4-14〉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사회복지예산비중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와 보건분야(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의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부재정에서 복지와 관련된 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봄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지난 2008년 32.71%에서 2017년 43.18%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 전국 평균 30.52%보다 높음
- 지난 10년간(2008~2017년) 사회복지예산비중을 누계로 하면 광주광역시 는 395.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전국 평균 271.31%)

〈표 4-12〉 사회복지예산비중(2008~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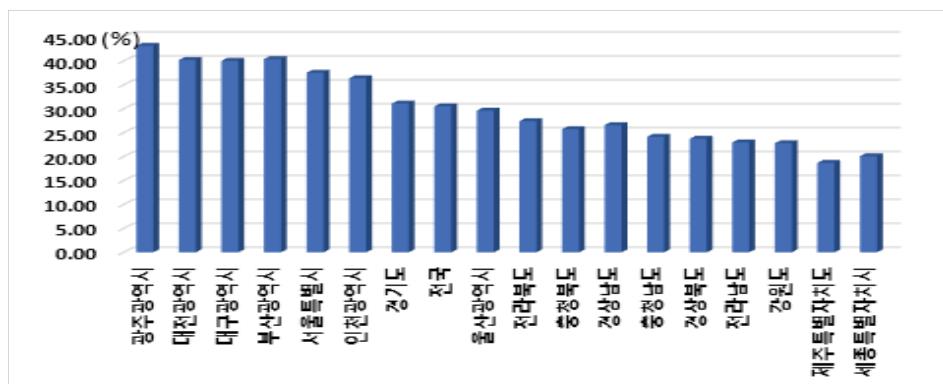
(단위: %)

행정구역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8~17 년누계
광주광역시	32.71	36.97	38.62	36.88	38.24	39.11	41.39	42.69	45.54	43.18	395.33
대전광역시	29.66	32.94	34.34	34.94	36.53	38.76	41.46	41.59	41.10	40.21	371.53
대구광역시	28.68	34.37	34.89	35.90	35.37	35.30	39.41	38.78	39.83	40.04	362.57
부산광역시	30.12	33.90	33.16	33.08	35.11	35.42	38.52	40.22	40.59	40.39	360.51
서울특별시	22.60	25.28	26.42	29.10	31.65	36.30	37.96	39.45	38.39	37.55	324.70
인천광역시	23.92	26.84	29.62	30.79	32.16	31.92	36.43	36.59	37.60	36.39	322.26
경기도	18.85	22.15	23.60	24.26	26.07	31.02	33.45	32.11	31.91	31.12	274.54
전국	20.61	23.98	24.55	24.89	25.62	28.21	30.64	31.27	31.02	30.52	271.31
울산광역시	18.30	23.18	24.66	24.56	25.16	28.44	29.89	31.09	29.01	29.63	263.92
전라북도	21.35	24.31	24.27	23.02	23.12	24.31	26.34	27.56	28.10	27.43	249.81
충청북도	19.51	23.06	22.55	22.89	23.28	24.22	26.53	27.25	27.10	25.75	242.14
경상남도	17.87	21.65	22.06	21.77	22.36	24.27	26.57	27.24	27.12	26.61	237.52
충청남도	17.72	21.12	20.35	20.56	19.82	22.54	24.12	24.56	24.37	24.17	219.33
경상북도	17.40	21.35	21.15	20.39	19.92	21.58	23.37	24.35	23.98	23.73	217.22
전라남도	17.11	19.06	19.18	18.75	17.57	20.20	22.54	24.06	23.48	22.98	204.93
강원도	16.71	19.07	19.07	19.50	19.49	19.92	22.57	22.93	21.68	22.82	203.76
제주특별자치도	12.15	14.07	13.90	12.41	11.67	13.35	14.93	19.29	18.36	18.72	148.85
세종특별자치시	-	-	-	-	18.89	20.34	17.02	18.81	17.28	20.11	112.45

주: 산식 = 일반회계중 사회복지예산비중=[(사회복지분야 예산액+보건분야 예산액)÷전체 예산액]×100

자료제공: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 출처: 행정안전부(지방재정연감)

〈그림 4-15〉 사회복지예산비중(2017년 기준)



2) 광주광역시 공무원 인식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예상하는 광주광역시 수요 증가 기능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가장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이고, 노인청소년 분야, 노동분야, 보육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보훈 분야 순임
 - 가장 수요 증가 수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능(중기능 수준)은 일자리 정책추진 및 관리기능, 고용촉진정책수립, 베이비부머세대지원 순이고, 적십자회비모금기능은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4-13〉 광주광역시 수요 증가 예상 기능

정책 영역	정책 분야	중기능	평균	고령화 사회 정책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 정책관	장애인 복지과
사회 복지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2.64	4.33	3.50	2.25	0.33
		차상위생활안전지원	2.79	4.67	3.25	2.50	0.67
		자활사업운영	2.57	4.00	3.50	2.25	0.33
		평균	2.67				

정책 영역	정책 분야	중기능	평균	고령화 사회 정책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 정책관	장애인 복지과
	노동	고용기획 확대	2.23	3.33	2.67	2.00	1.00
		고용촉진정책수립	3.15	4.67	3.33	3.00	1.67
		고용촉진훈련사업	2.54	4.33	2.67	2.25	1.00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3.46	5.00	3.00	4.00	1.67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1.38	0.33	1.67	2.25	1.00
		근로복지증진	2.15	3.00	2.00	2.50	1.00
		노사협력지원	1.92	2.67	2.00	2.25	0.67
		근로자교육지원	2.23	4.00	2.67	2.00	0.33
		평균	2.38				
	노인 청소년	노인단체및행사지원	2.08	2.00	2.33	2.75	1.00
		노인복지시설관리	2.38	1.67	2.67	3.50	1.33
		노인복지재정지원	2.54	3.00	2.67	2.75	1.67
		노인복지정책계획수립	2.15	2.00	2.33	2.75	1.33
		노인여가복지지원	2.46	2.67	2.67	3.00	1.33
		노인취업지원	2.69	3.67	2.33	3.00	1.67
		베이비부머지원	2.85	4.00	3.67	2.50	1.33
		재가노인복지관리	2.38	2.33	3.33	2.50	1.33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2.62	3.00	3.33	2.75	1.33
		청소년보호지원	2.38	3.33	3.33	2.25	0.67
		평균	2.45				
	보육 가족 및 여성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2.62	3.33	2.67	3.50	0.67
		가족보호정책수립	2.15	2.67	2.33	2.75	0.67
		보육료지원	1.85	2.67	3.67	0.75	0.67
		보육시설운영지원	2.31	3.00	2.67	2.50	1.00
		보육시설종사자관리	2.31	3.33	2.67	2.25	1.00
		보육프로그램지원	1.85	2.00	2.67	2.00	0.67
		보육정책기획및관리	2.23	3.00	2.33	2.75	0.67
		국내외입양관리	1.92	1.67	2.67	2.25	1.00
		아동보호관리	1.77	2.67	1.67	2.00	0.67
		아동학대방지	2.15	2.67	3.00	2.50	0.33
		요보호아동관리	2.38	3.33	3.00	2.50	0.67
		요보호아동상담및보호조치	2.54	4.00	3.00	2.50	0.67
		아동복지증진	2.08	2.33	2.67	2.50	0.67
		여성권익증진	2.46	3.33	2.33	3.25	0.67
		여성능력개발	2.31	3.33	2.33	2.75	0.67

정책 영역	정책 분야	중기능	평균	고령화 사회 정책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 정책관	장애인 복지과
		요보호여성보호지원	2.54	3.33	2.33	3.00	1.33
		평균	2.22				
	보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우 및 지원	1.00	0.33	2.00	1.00	0.67
		평균	1.00				
	사회 복지 일반	사회복지단체관리	1.38	0.33	2.67	1.75	0.67
		사회복지사업운영	1.54	0.00	2.33	2.50	1.00
		사회복지시설관리	2.14	1.33	3.25	2.75	0.67
		사회복지시책홍보및교육	1.42	0.67	2.50	2.00	0.67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0	2.33	3.00	1.75	1.00
		적십자회비모금	-0.15	-4.00	1.67	1.00	0.33
		의료급여수급지원	1.57	0.67	2.75	1.75	0.67
		자원봉사시설관리	1.08	-1.33	1.67	3.00	0.33
		장사제도관리	1.00	1.00	2.00	1.00	0.00
		장사시설운영관리	1.08	1.00	2.00	1.25	0.00
		평균	1.31				
	취약 계층 지원	노숙인시설운영	1.23	2.67	1.33	0.75	0.33
		부랑인및행려자보호	1.31	3.00	1.33	0.75	0.33
		의사상자구호	1.00	0.67	1.33	1.67	0.33
		장애인고용촉진 및지원	2.23	4.00	2.00	2.00	1.00
		장애인권익보장	2.23	4.00	2.33	1.75	1.00
		장애인단체지원	0.77	-1.33	2.00	1.25	1.00
		장애인등록업무	1.54	2.00	2.33	0.75	1.33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2.08	3.33	2.67	1.50	1.00
		장애인지원사업	2.31	4.33	2.33	1.75	1.00
		장애인지원사업관리	2.62	4.33	2.33	1.75	2.33
		장애인거주시설관리	1.77	2.33	2.67	1.50	0.67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2.15	3.00	2.67	1.50	1.67
		장애인생활시설관리	2.46	2.67	2.33	3.25	1.3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2.62	3.67	2.33	2.75	1.67
		장애인대상각종재정지원	0.62	-1.33	2.33	0.75	0.67
		평균	1.80				

3. 소결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과 관련된 환경분석 결과, 조직재설계를 위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광주광역시의 복지수요지표 분석 및 공무원 설문 조사 결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요, 노인복지, 일자리 수요 등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빚고을 50+일자리 지원사업,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제도, 빚고을·효령노인복지타운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은 기획 및 타당성 검토 등의 기능은 광역이 담당하는 반면, 일선에서의 집행은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주시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성 있는 기획기능,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및 외부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14〉 환경분석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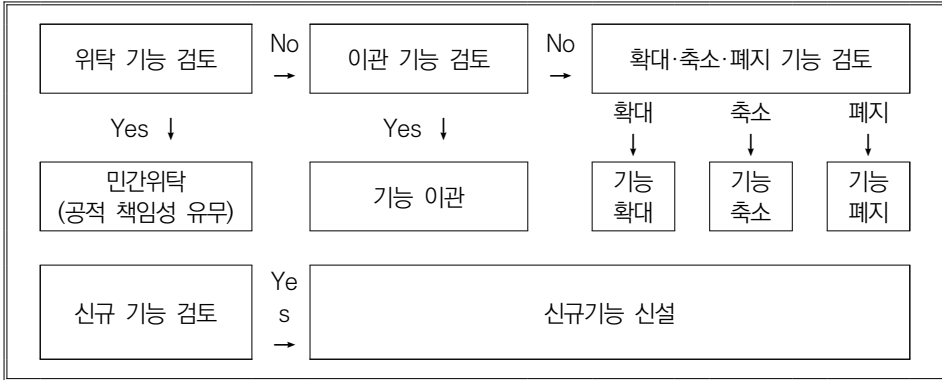
구분	분석 내용	검토 사항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측면	■ 사회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현황 - 사회서비스원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 광주광역시에서도 2020년 7월 사회서비스원 개원 계획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수행 관련 대응 조직 적절성
광주광역시 복지수요 측면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수요 - 복지수요지표 분석 및 공무원 설문 조사 결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요, 노인복지, 일자리 수요 등이 증가 예상	■ 광주광역시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 적절성

제3절 기능 분석

1. 분석 개요

- 기능분석은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체제의 운영방식을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적정대안의 도출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방법을 활용하고자 함
 - 기능분석은 크게 기존기능에 대한 분석과 신규기능 분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 분석의 경우에는 위탁기능 검토, 이관기능 검토, 확대·축소·폐지 기능 검토의 세 가지 분석방법이 적용됨
- 위탁 기능 검토
 - 단위기능별로 광주광역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지 또한 역할이 필요하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민영화 또는 대안적 수행방법을 채택하되, 적합성 분석은 조사표 조사와 국내외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워크숍을 활용함
- 이관 기능 검토
 - 단위기능별로 부서간 연계성을 분석하여 기능의 조정 및 기능 간 범주화를 도모하되, 부서 간 연계성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표 조사와 전문가 워크숍을 활용함
- 확대·축소·폐지 기능 검토
 - 단위기능별로 향후 수요 정도를 조사하여 해당 기능의 강화, 유지 및 축소 또는 폐지를 판단하되, 중요도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표 조사와 전문가 워크숍을 활용함
- 신규 기능 검토
 - 광주광역시의 비전실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신규기능을 발굴 및 제시하되, 수요도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표 조사와 전문가 워크숍을 활용함

〈표 4-15〉 기능 분석 개요



2. 기능분석 결과

1) 위탁 기능 검토

○ 조사표 및 면담조사 결과

- 광주광역시 공무원대상의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위탁대상 가운데 2건 전체를 민간위탁 검토 대상으로 결정하며, 해당 기능 관련법과 위탁규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외 사례 등 유사사례 존재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위탁가능여부를 판단함
- 관련 법 또는 위탁규정에서 위탁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고, 국내외사례 중 유사사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함

〈표 4-16〉 위탁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구분			기능	위탁이유 및 관련조치	위탁유형
실국명	과명	담당명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	노인문화지원팀	도심 내 묘지공원 관리 및 운영	- 도심확장에 따른 묘지공원(80개소)의 정비 및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관리 필요	협약 위탁

구분			기능	위탁이유 및 관련조치	위탁유형
실국명	과명	담당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 정책팀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 환자 재활치료를 위해 조선대 병원에서 재활병원 위탁운영	시설 위탁

○ 검토 결과

- ‘도심 내 묘지공원 관리 및 운영’ 등 2개의 사무 모두 위탁가능한 것으로 판단됨²⁵⁾

〈표 4-17〉 위탁 기능 검토: 검토 결과

구분			기능	관련법	위탁규정	관련사례	위탁여부
실국명	과명	담당명					
복지 건강국	고령 사회 정책과	노인문화 지원팀	도심 내 묘지공원 관리 및 운영	○	○	○	가능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 정책팀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	○	○	가능

2) 이관 기능 검토

○ 조사표 및 면담조사 결과

- 조사표 결과, 2개의 기능을 이관할 기능으로 1개의 기능을 이관받을 기능으로 응답하였음
- 각 기능은 기획기능, 내부관리기능, 집행기능, 서비스전달기능의 4가지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각 기능별로 이관 적합성 판단기준에는 차이가 있는데 기획기능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내부관리 및 집행기준은 효율성²⁶⁾을, 서비스전달기능²⁷⁾은

25) 이 두 사무는 현재 위탁 중에 있는 사무로서 여기서는 지속적 위탁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26) 효율성 기준은 주로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한 효율성으로 판단함

- 주민편의성을 기준을 적용하여 이관의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하게 됨
- 이관 검토 기능이 각 기능속성별 판단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함

가. 이관할 기능

〈표 4-18〉 이관할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구분			기능	이관이유 및 관련조치	이관대상 부서
실국명	과명	담당명			
복지 건강국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팀	장애인 체육관(운암동)	- 대상이 장애인일 뿐 각종 체육 사업 시행 중(올림픽이나 장애인 올림픽 대회 등)	체육진흥과
-	여성 가족 정책관	보육팀	사회복지법인 관리	- 통합적인 관리 문제(단독법인) ⇒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통합적 관리 필요	사회복지과

나. 이관받을 기능

〈표 4-19〉 이관받을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구분			기능	이관이유 및 관련조치	현재 수행부서
실국명	과명	담당명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생활 보장팀	사회공헌지원 및 기부금 관련 업무	- 사회공헌지원이 저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모금회의 주 재원이 사회공헌 즉 기부금 자원인데 반해 현재 자치행정과 사회공헌지원팀에서 별도의 기부금 업무를 보고 있어서 중복의 의미가 많아 효율성이 약화 되므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자치행정과

27) 주민입장에서 접근성이 높아서 서비스를 전달받기에 편의성이 높은지의 여부로 판단함

○ 검토 결과

- ‘사회복지법인 관리 업무’, ‘사회공헌지원 및 기부금 관리 업무’는 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가. 이관할 기능

〈표 4-20〉 이관할 기능 검토: 검토 결과

구분			기능	기능속성	판단기준 적용			조정여부
실국명	과명	담당명			전문성	효율성	주민 편의성	
복지 건강국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팀	장애인 체육관(운암동)	서비스전달			○	미조정
-	여성 가족 정책관	보육팀	사회복지법인 관리	집행		○		조정

나. 이관받을 기능

〈표 4-21〉 이관받을 기능 검토: 검토 결과

구분			기능	기능속성	판단기준 적용			조정여부
실국명	과명	담당명			전문성	효율성	주민 편의성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생활 보장팀	사회공헌지원 및 기부금 관련 업무	집행		○		조정

3) 확대·축소·폐지 기능 검토

○ 조사표 및 면담조사 결과

- 즉, 해당분야가 광주광역시 비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가 및 상위단체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주민의 수요변화 등을 기준으로 판별하되, 기능 폐지의 경우에는 해당업무에 관련된 법규의 폐지여부 등을 반영하여 최종 적인 기능의 수요증감을 확정함

가. 기능 강화

〈표 4-22〉 확대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구분			기능	강화이유 및 관련조치
실국명	과명	담당명		
복지 건강국	고령 사회 정책과	노인 문화 지원팀	묘지공원 관리	- 묘지공원주변 도심화로 인한 묘지공원의 생활공간화 필요성 증대
			장사업무 관리	- 화장 문화의 변화로 화장 및 봉안 등의 다양한 업무 개발 및 지원 필요
		고령사회 정책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진행 중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여가 수요 증가
	사회 복지과	과장	저소득층 자활 자립 추진업무	-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자립토록 지원 (자활생산품, 자활기업 등 지원강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익성 증가	-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용역, 돌봄 장애인 등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공적 기관으로 직영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	- 포용복지로 인한 복지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사업과 중복되는 사례들이 발생되므로 집중과 선택 필요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기능 강화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적법성, 전달 체계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커뮤니티케어 사업 적극 추진	-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로 지역 내에서 생활하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생활 보장팀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사업	- 고령화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로 업무량 폭주 ⇒ 행정(사회)7급 1명 증원 필요
			자활근로사업	- 저소득 일자리 확대로 자활근로사업 업무량 증가 ⇒ 행정 7급 1명 증원 필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 저소득 지원 업무(국민기초수급자 업무, 의료급여 업무, 자활근로업무, 기타 광주형 복지정책 등)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장팀에서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에는 업무량 증가로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등 신규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복지팀 신설 필요
		다문화 가족팀	외국인 지원 업무	- 결혼이주여성성이 중심이 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치중되어 있음
				- 유학생 등 외국인 지원 상담 등 외국인지원 수요 증가

구분			기능	강화이유 및 관련조치
실국명	과명	담당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 정책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업무	- 별도 전담팀 필요 예시) "사회서비스관리팀" - 유사업무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병행으로 효율적 업무 추진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운영	- 장애인회관, 자아예인복합수련시설, 어린이재활 병원 건립을 위한 건축직 배치 요청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원	- 장애인 일자리 발굴 지원을 위해 직제(장애인일 자리팀) 신설 요청
-	여성 가족 정책관	여성 정책팀	여성·가족 정책	- 여성정책 ⇒ 여성·가족정책으로 - 여성가족정책 발굴 및 실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 마을이 한 아이를 돌보는 시대
			여성재단 지도·감독	- 전담 직원 필요
		보육팀	보육시설운영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예산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일·가정양립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양 육사업 확대 필요 ⇒ 예산 증액
			평가인증조력지원사업	- 평가인증 의무제 시행에 따른 컨설팅 수요 증가 ⇒ 예산 증액
			어린이집 지도점검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인식전환 교육, 제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안전교육, 공기 청정기, 통학차량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교사들 근무시간 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파견
		가족 복지팀	아이돌봄 서비스	- 정부 지원금 확대, 아이돌봄비 자격 기준 강화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증가로 인한 사전 상담
		저출산 아동팀	돌봄 기능	- 초등돌봄절벽 등으로 일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출산기피까지 이어져 저출산문제로 부상, 돌봄기능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필요 ex)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 아이돌봄담당관
			인구정책 컨트롤 기능	- 포괄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인구정책은 효율적으로 시정전반을 통합·조정해야하므로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야 함
			출산장려 업무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장려업무 강화 필요 ex) 광주 1명, 부산 출산보육과 출산장려팀 4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자립전담기관 설치(2020년), 19년 시범사업(자립수당, 주거지원), 19년 신규사업(경계선지능 아동자립지원) 등 추진

나. 기능 축소

〈표 4-23〉 축소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구분			기능	축소이유 및 관련조치
실국명	과명	담당명		
복지 건강국	고령 사회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팀	요양시설 확충	- 재가서비스(커뮤니티 케어 등) 강화로 복지정책 방향 전환
	사회 복지과	과장	시민복지기준마련 계획수립	- 당초 계획했던 기준이 달성되어 실효성이 없음 (중앙부처 지원수준 향상으로 퇴색됨)
-	여성 가족 정책관	여성 정책팀	성별영향평가업무	- 여성, 남성 ⇒ 화합할 수 있는 가정중심사회
		보육팀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아동 현장문화체험학습 운영)	-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다양한 현장문화체험학습 시행 중이므로 프로그램 삭제 필요

○ 검토 결과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등 24개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가. 기능 강화

〈표 4-24〉 확대 기능 검토: 검토 결과

구분			기능	판단기준 적용			적합여부
실국명	과명	담당명		광주시 비전 부합성	국가 및 상위단체 정책대응	환경 및 주민수요 변화	
복지 건강국	고령 사회 정책과	노인문화 지원팀	모지공원 관리				부적합
			장사업무 관리				부적합
		고령사회 정책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	적합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	적합
	사회 복지과	과장	저소득층 자활 자립추진업무	○		○	적합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약성 증가		○		적합

구분			기능	판단기준 적용			적합여부
실국명	과명	담당명		광주시 비전 부합성	국가 및 상위단체 정책대응	환경 및 주민수요 변화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		○		적합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기능 강화			○	적합
			커뮤니티케어 사업 적극 추진		○		적합
		생활 보장팀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사업				부적합
			자활근로사업	○		○	적합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부적합
		다문화 가족팀	외국인 지원 업무			○	적합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업무		○		적합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 정책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운영				부적합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원	○		○	적합
-	여성 가족 정책관	여성 정책팀	여성가족정책			○	적합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	적합
			여성재단 지도·감독			○	적합
		보육팀	보육시설운영		○		적합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적합
			평가인증조력지원사업		○		적합
			어린이집 지도점검		○	○	적합
			어린이집 안전관리		○	○	적합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	적합
		가족 복지팀	아이돌봄 서비스		○		적합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적합
		저출산 아동팀	돌봄 기능			○	적합
			인구정책 컨트롤 기능		○	○	적합
			출산장려 업무		○	○	적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	○	적합

나. 기능 축소

〈표 4-25〉 축소 기능 검토: 검토 결과

실국명	구분		기능	판단기준 적용			적합여부
	과명	담당명		광주시 비전 부합성	국가 및 상위단체 정책대응	환경 및 주민수요 변화	
복지 건강국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팀	요양시설 확충				부적합
	사회 복지과	과장	시민복지기준마련 계획수립				부적합
-	여성 가족 정책관	여성 정책팀	성별영향평가업무				부적합
		보육팀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아동 현장문화체험학습 운영)				부적합

4) 신규 기능 검토

○ 조사표 및 면담조사 결과

- 조사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광주광역시의 비전 및 국가 및 상위단체 정책 대응, 환경 및 주민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신규기능 여부를 판단하였음

〈표 4-26〉 신규 기능 검토: 공무원 의견

실국명	구분		기능	신규사유 및 관련조치
	과명	담당명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과장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업무	- 중앙부처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사업	- 중앙부처 시범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 중앙부처 시범사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팀	장애인 일자리	- 일자리 중요도
-	여성 가족	보육팀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 긴급으로 이용 가능한 아이 돌봄 체계 구축

구분			기능	신규사유 및 관련조치
실국명	과명	담당명		
	정책관		보육 지도감독 기능 강화	-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부정 관리 예방
			보육교사 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질 육성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지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용률 40% 확대 공약 실천으로 업무 증가
			어린이집 안전관리	- 차량 등 안전관리 업무 증가
	가족 복지팀		가족센터 설치, 운영	- 가족센터 신규설치 확대

○ 검토 결과

-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업무’ 등 6개의 기능이 신규기능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표 4-27〉 신규 기능 검토: 검토 결과

구분			기능	판단기준 적용			적합여부
실국명	과명	담당명		광주시 비전 부합성	국가 및 상위단체 정책대응	환경 및 주민수요 변화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과장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업무		○		적합
			커뮤니티케어 사업		○		적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		적합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팀	장애인 일자리	○		○	적합
-	여성 가족 정책관	보육팀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	적합
		가족복지팀	가족센터 설치, 운영			○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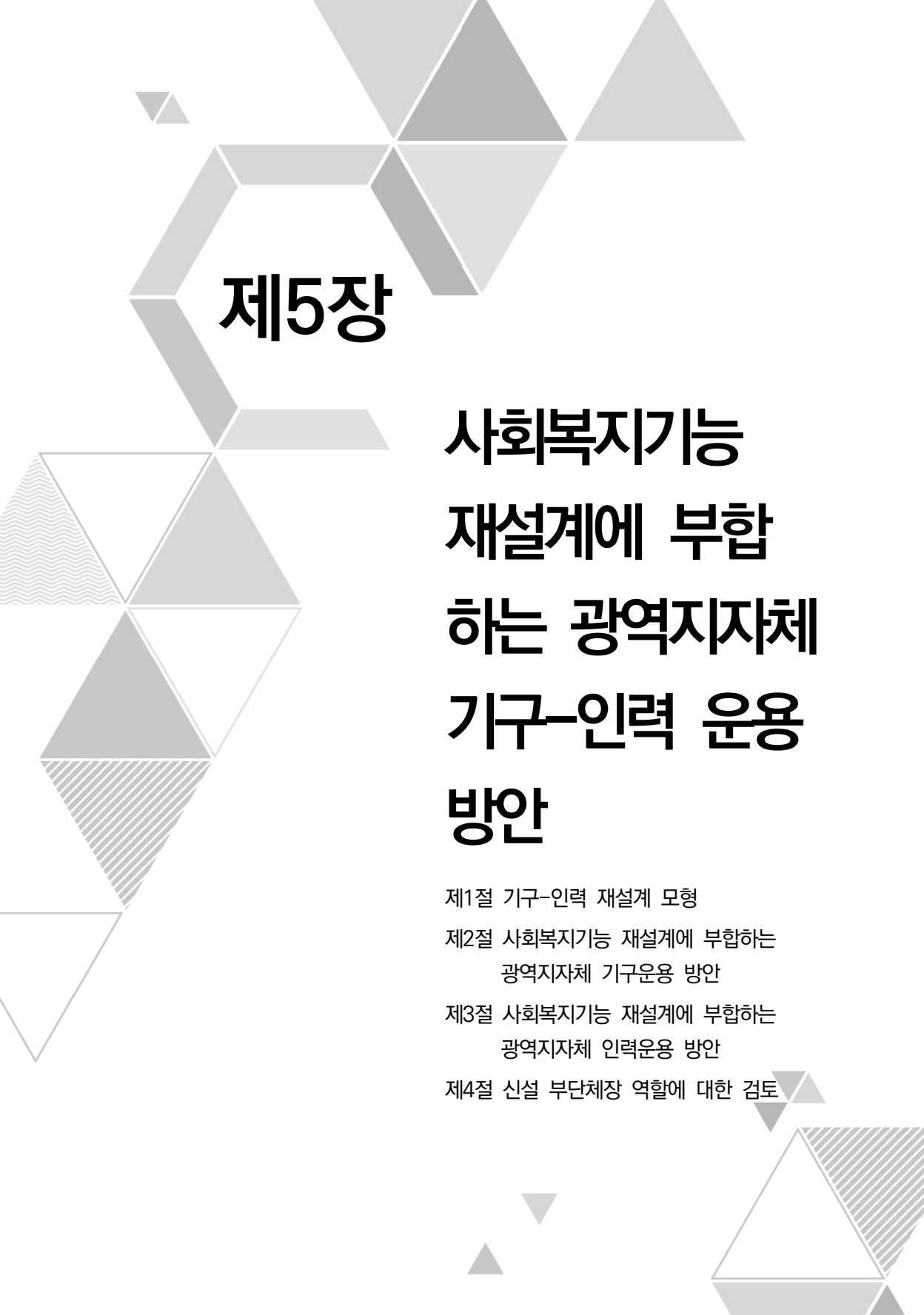
제4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환경분석 결과, 국정과제 및 광주시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획기능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조정 기능이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능분석 결과, 기능위탁 2개, 기능강화 25개, 기능신설 4개, 기능조정 이관할 기능과 이관받을 기능 각각 1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4-28〉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실국명 (기관명)	구분		기능위탁	기능강화	기능축소·폐지	기능신설	기능조정(이관)	
	과명	담당명					→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여성정책		• 여성가족정책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 여성재단 지도·감독				
		보육		• 보육시설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평가인증조력지원사업 • 어린이집 지도점검 • 어린이집 안전관리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가족복지		•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가족센터 설치, 운영		
		저출산이동		• 돌봄 기능 • 인구정책 컨트롤 기능 • 출산장려 임무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구분			기능위탁	기능강화	기능축소·폐지	기능신설	기능조정(이관)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	←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기획기능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괄 조정 업무 -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약성 증가 -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강화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사업		
			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사회공헌지원 및 기부금 관련 업무(자치 행정과)	
			보훈복지					
			다문화가족	- 외국인 지원 업무 -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업무				
			고령사회정책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 커뮤니티케어 사업 적극 추진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복지						
		노인시설지원	도심 내 모지공원 관리 및 운영					
		노인문화지원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정책	환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원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시설						
		장애인 재활지원						
합계			2개	25개	0개	4개	1개	1개



제5장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 하는 광역지자체 기구-인력 운용 방안

제1절 기구-인력 재설계 모형

제2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운용 방안

제3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인력운용 방안

제4절 신설 부단체장 역할에 대한 검토

제5장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인력 운용 방안

제1절

기구-인력 재설계 모형

-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검토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에 부합하는 광주광역시의 기구-인력 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정수 확대에 따른 기능 재설계안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 기구재설계안에서는 국·과·팀단위 기구 통폐합, 신설, 부서명칭 변경, 이관 등을 검토하게 됨
 - 인력재배분안에서는 현행부서를 대상으로 추가인력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고, 신설부서를 대상으로 적정 인력배정안을 검토하게 됨

〈표 5-1〉 기구-인력 재설계 모형

구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기구재설계	• 국·과·팀단위 기구 통폐합, 신설, 부서명칭 변경, 이관 등 검토 - 환경분석에 따른 수요 변화 및 기능분석에 따른 업무량에 따라 기구통폐합 및 신설 검토 - 유사지자체의 기구 운영 현황이 최소한의 근거가 됨	• 다각도의 검토요소를 고려한 전문가 판단 - 환경분석 결과(국정과제 수요, 광주복지수요 등), 기능분석 결과, 유사지자체 분석 결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검토
인력재배분	• 현행부서대상 추가인력 적정성 검토 - 주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기준으로 기구재설계에 따른 업무량 변화를 고려하여 인력 배정 • 조직개편안(신설부서) 대상 인력배정 검토 - 신설부서의 업무량 및 타지자체의 유사기능 부서의 인력을 고려하여 배정 검토	• 다각도의 검토요소를 고려한 전문가 판단 - 기구재설계 결과, 유사지자체 분석 결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검토

제2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운용 방안

1. 검토 요소

- 보건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 운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였음
- 환경분석 결과(국정과제 수요, 광주복지수요 등), 기능분석 결과, 유사지자체 분석 결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음
- 기타 검토에서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추진되었던 광주복지혁신포럼에서 제안되었던 내용을 검토하였음(〈부록〉 참고)

〈표 5-2〉 기구재설계를 위한 검토 요소

실국명 (기관명)	구분		환경분석 결과	기능재설계 검토 결과	기타 검토
	과명	담당명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 기능강화 3개	
		보육	• 저출산 대응 보육기능 강화	• 기능강화 6개 • 기능신설 1개 • 기능이관(→) 1개	
		가족복지		• 기능강화 1개 • 기능신설 1개	
		저출산아동	•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	• 기능강화 4개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 커뮤니티 케어 사업 대응	• 기능강화 4개 • 기능신설 1개	• 복지법인시설관 리전담기능필요 • 광주형 복지모 델 수립을 위한 복지혁신 조직 필요
		생활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수요 증가 대응	• 기능강화 1개 • 기능이관(←) 1개	
		보훈복지			
		다문화가족	•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	• 기능강화 2개	
	고령사회	고령사회정책	• 베이비부머세대재원	• 기능강화 2개	

실국명 (기관명)	구분		환경분석 결과	기능재설계 검토 결과	기타 검토
	과명	담당명			
	정책과	고령복지	• 노인복지수요 급증 예상	• 기능강화 1개	
		노인시설지원			
		노인문화지원		• 기능위탁 1개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 기능위탁 1개 • 기능강화 1개 • 기능신설 1개	
		장애인시설	• 장애인 일자리 수요 증가		
		장애인재활지원			

〈표 5-3〉 기구재설계에 관한 조사 결과: 공무원 의견

실국명	구분		기타 의견
	과명	담당명	
시장	여성 가족 정책관	저출산 아동팀	-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요보호 아동복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팀 운영 - 지역사회 아동 돌봄체계 구축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을 위한 아동친화팀 신설 - 저출산문제 상황에 따른 인구,출산 정책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팀 신설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생활보장 담당팀	- 생활보장팀에서 기초생활보장업무, 긴급지원업무, 부정수급업무, 자활근로사업 일체, 의료급여사업, 사회복지법인 등록 및 사회복지관 관리 등 수행으로 복지업무 업무량 과다로 효율성이 떨어짐 - 또한, 다문화팀에서 다문화업무 외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임 - 신규 복지정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총괄 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복지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봄
		다문화 가족팀	-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시 총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업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담당 인력은 업무 수요에 따른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함

구분			기타 의견
실국명	과명	담당명	
			-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추진 준비를 위한 전담인력을 2019년 최소 1명 이상, 2020년 전담팀 구성(1팀 3명) 필요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정책팀	- 능력과 재능을 겸비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우대방안 마련 필요 (일반적으로 1년 이내 업무 변경됨)
		장애인 시설팀	- 장애인자립기반팀으로 명칭 변경 필요 - 이 때, 업무분장은 장애인일자리 창출(정책개발), 장애인고용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육성, 직업재활 전문인력 운영지원, 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및 육성, 장애인생산품시설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자립 및 창업 자금에 관한 사항,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업무

2. 검토 결과

- 각각의 요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제시함
- 국단위와 과단위의 검토내용은 없으며, 팀단위와 명칭변경 측면에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음

〈표 5-4〉 기구재설계 검토 결과

구분	검토내용
국단위	• 검토내용없음
과단위	• 검토내용없음
팀단위	• 저출산아동담당 팀 분리 및 명칭 변경 - 최근 중요해지는 인구정책은 기획 업무의 특성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저출산아동담당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아동정책 업무의 집행 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팀(인구정책)으로 분리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은 법무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담당은 아동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아동권익보호 업무를 포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담당으로 명칭 변경 필요

구분	검토내용
	• 법인시설관리담당 신설(사회복지과 소속)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과 더불어 점검 기능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업무 수행이 현재 체제로서는 원활하지 못하므로 지도감독 기능 확대 및 시설점 검메뉴얼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팀 신설 필요 - 부산(법인시설지도팀), 경북(법인시설지도팀)에서 유사 팀 운영 • 사회서비스혁신TF 신설(사회복지과 소속) - 사회서비스원 설립, 커뮤니티케어 등 여러 부처 및 여러 민간 주체들과 협의의 필요성이 있는 국정과제에 대비한 업무 수행 담당을 위해 팀 신설 필요 - 복지정책담당이 수행하였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등의 업무 등을 이관 하여 복지정책담당의 업무량 조정 및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 통합 운영 • 다문화가족담당 이관 및 통폐합(사회복지과 → 여성가족정책관) - 현재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설립관련 업무를 신설 지역복지담당에 이관한 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합쳐가는 현재 중앙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하여 가족복지담당과 통폐합 고려 필요 - 다문화가족담당 업무에는 고려인주민, 외국인(학생, 근로자) 지원 업무도 포함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다문화’로 명칭 변경²⁸⁾
부서명칭개선	• 장애인시설담당명칭 변경 - 장애인자립기반담당으로 명칭 변경(요청사항) : 최근 장애인일자리지원 업무가 배정되어 기존 업무와 추가된 업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의 변경 요청

28) 대구광역시 ‘가족다문화팀’이 유사사례임

○ 최종개편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세 개의 팀을 신설하고 1개의 팀을 통폐합하며, 1개의 팀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함

〈표 5-5〉 최종 기구재설계안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구분			변경사항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	여성가족 정책관 (정책기획 관실)	여성정책	이관·통폐합 팀분리
		보육			보육	
		가족복지			가족다문화	
		저출산아동			아동복지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신설
		-			법인시설관리	
		생활보장			생활보장	
		보훈복지			보훈복지	
		다문화가족			-	
		-			사회서비스혁신 TF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고령복지			고령복지	
		노인시설지원			노인시설지원	
		노인문화지원			노인문화지원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명칭변경
		장애인시설			장애인자립기반	
		장애인재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제3절 사회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인력운용 방안

1. 검토 요소

- 보건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였음
- 기구 재설계 결과, 유사지자체 분석 결과,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음

〈표 5-6〉 인력재배분에 관한 조사 결과: 공무원 의견

실국명	구분		기존 인력	희망 인력	희망 이유
	과명	담당명			
시장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행정직(6급) 1 행정직(7급) 4	행정직(6급) 3 행정직(7급) 3 (1명 추가)	- 여성재단 지도·감독 전담직원 필요 - 여성정책 발굴 -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
		가족복지팀		사회복지직(7급) 1명 추가	- 1인가구 또는 여성가구로 정책 대상 확대 - 여성폭력방지법 등의 개정으로 업무량 증가가 예상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	노인시설지원담당	사회복지직(8급)	시설직(8급)	- 노인의료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등 시설 기능보강 업무 추진시 전문가 필요
	사회복지과	과장	-	행정직(5급) 1, 행정직(6급) 2, 행정직(7급) 1, 사회복지직(7급) 1	- 사회서비스원 설립 1팀 신설
			-	행정직(6급) 1, 사회복지직(6급) 1, 사회복지직(7급) 2	- 커뮤니티관련 복지정책 추진
		생활보장담당팀	사회복지직(6급)	행정직(6급)	-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전달체계 이외에도 광주형 저소득 일자리 창출 등 적극행정 필요

실국명	구분		기존 인력	희망 인력	희망 이유
	과명	담당명			
					⇒ 타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정책팀	행정직(6급) 3	행정직(6급) 2 건축직(6급) 1	- 장애인 시설 건립 및 운영
		장애인 시설팀		1명 추가	- 일자리 업무 추가

2. 검토 결과

- 각각의 요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제시함
 - 조직 개편 이전 단계와 조직 개편 이후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최종 인력 배분안을 제시하였음
 - 적정 인력 규모만을 검토하고 직렬 또는 직급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았

〈표 5-7〉 조직 개편 이전 인력 배분 검토 결과

실국명 (기관명)	구분		현원 (2019.6월 현재)	검토내용 (추가 인력 요청사항)	검토결과 (*현원기준)
	과명	담당명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6명	• 여성재단 지도·감독 전담,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의 업무량은 다소 중복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여성정책 발굴 등 기획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1명 배치	7명
		보육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가족복지	4명	(아래에서 검토)	-
		저출산아동	8명	(아래에서 검토)	-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7명	(아래에서 검토)	-
		생활보장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보훈복지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구분			현원 (2019.6월 현재)	검토내용 (추가 인력 요청사항)	검토결과 (*현원기준)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다문화가족	3명	(아래에서 검토)	-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고령복지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노인시설지원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노인문화지원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장애인시설	4명	• 장애인일자리 업무 추가 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필요	5명
		장애인재활지원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합계			73명		

〈표 5-8〉 조직개편이후 인력배분 검토결과

실국명 (기관명)	구분		검토내용 (신설팀 중심)	최종 인력재배분 결과 (*현원기준)
	과명	담당명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7명
		보육		5명
		가족다문화	- 가족다문화팀은 다문화가족팀에서 수행하던 사회서비스 설립 업무만을 제외하고 가족복지팀과 다문화가족팀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함 - 여성폭력방지법 등의 개정으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나 다문화가족팀의 인력(팀장 제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7명
		아동복지	- 기존의 저출산아동팀이 인구정책팀과 아동복지팀으로 분리되는 상황이나 기존의 저출산아동팀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정도에 불과함 - 현재 주로 수행하는 아동지원업무, 돌봄 시설관리 업무에 더하여 아동학대방지 업무가 확대 추세에 있는데 이는 단순 집행 업무가 아닌 조정 등의 전문적인	8명

실국명 (기관명)	구분		검토내용 (신선팀 중심)	최종 인력재배분 결과 (*현원기준)
	과명	담당명		
복지 건강국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이어서 업무량(또는 업무강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팀분리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력 유지	
		인구정책	인구정책 업무는 정책의 중요성은 높으나 구체적인 업무를 기획하는 단계이므로 많은 인력보다는 기획능력이 있는 소수 인력으로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2명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의 업무가 신선팀에 이관되므로 현재 인력으로 업무량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됨	7명
		법인시설관리	- 법인시설을 전담하여 지도관리하는 유사지자체(대구, 대전, 인천)의 기구의 인력 규모는 3명에서 5명 정도임 - 타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광주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담 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므로 우선적으로 3명을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명
		생활보장	-	5명
		보훈복지	-	4명
		-	-	
		사회서비스혁신TF	- 광주시에서는 내년 7월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할 전담팀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팀에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으나 업무의 성격이 여러 주체들과 밀도있는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기존의 집행 위주의 업무와 차별화된 성격이 있으므로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전담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커뮤니티케어 업무,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 팀의 업무량 조정 및 사회서비스 업무의 유기적 통합	3명

구분			검토내용 (신설팀 중심)	최종 인력재배분 결과 (*현원기준)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성을 기하고자 함(타지자체 운영 사례 참고) • 현재는 최소 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향 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 는 것이 바람직함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	5명
		고령복지	-	4명
		노인시설지원	-	4명
		노인문화지원	-	4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	5명
		장애인자립기반	-	5명
		장애인재활지원	-	5명
합계				83명

제4절 신설 부단체장 역할에 대한 검토

1. 논의 배경

□ 획일적인 부단체장 제도 운영

-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제도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민선 단체장 선출을 앞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비되었음
 - 당시 법 개정으로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2명씩 둘 수 있게 되었음
 - 2000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인구 80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부단체장 제도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표 5-9〉 현행 지방자치법의 부단체장 제도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 6. 29.〉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

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13., 2012. 6. 29.>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도의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2. 6. 29., 2014. 6. 3.>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8. 13.>

- 법령은 부단체장의 정수뿐만 아니라 신분, 직급을 정하고 있으며, 복수의 부단체장을 정무와 행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부단체장에 대한 명칭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제도는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 이에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부단체장 정수확대 요구가 있었으며, 최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부단체장 정수확대를 예정하고 있음

□ 부단체장 정수 확대 가능성

-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 확대가 반영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인구 800만 미만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수는 2명이지만,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음

〈표 5-10〉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부단체장 제도

제122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는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 1명(인구 500만 이상의 시·도는 2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중 1명과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두는 부시장·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추가로 두는 부단체장의 자격기준은 광역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음

-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 자격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추가로 두는 경우,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부단체장 유형 논의, 그리고 해외 사례를 검토를 통해 부단체장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운영 방안을 구상함

2. 부단체장 유형

□ 부단체장 유형 구분

- 부단체장 역할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크게 보아 전문성 보좌역할, 정치적 보좌역할, 매개자적 보좌역할, 독자적 역할 등이 제시되고 있음(이경훈, 2001)
- 이경훈(2001)은 이를 법령상의 역할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부단체장의 기대역할로써 견제자적 역할까지 보고 있음

〈표 5-11〉 부단체장의 역할

역 할		내 용
법령상 역할	전문성 보좌역할	부단체장이 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지니는 전문 능력을 의미함. 구체적으로는 행정수요의 정확한 예측 및 적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관련되는 '직업전문성', 정책과학과 관련한 지식 및 경험과 관련되는 '정책전문성', 행정조직 관리에 대한 지식·경험을 의미하는 '관리 전문성'으로 구분됨
	정치성 보좌역할	지방자치에서 의사결정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구조로 분산되면서 부단체장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및 조정 능력이 요구됨
	매개자적 보좌역할	부단체장이 상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연결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독자적 역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의 부단체장 역할을 의미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을 통해 위원장으로써 심의·의결 결정권한을 지닐 때 독자적 역할이 보다 강화됨
기대 역할	견제자적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을 전횡하는 것을 견제하여 지방행정이 안전성·지속성·능률성을 확보하도록 함

자료: 이경훈(2001) 재구성; 박해욱·이세진(2012), p.29. 재인용

-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윤영근 외(2014) 연구에서는 부단체장 운영의 중심이 단체장과 의회 가운데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그리고 기획·자문과 집행 기능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유형을 구분함
- 주요 국가의 부단체장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은 지방의회가 부단체장 임명 같은 제도 운영의 중심에 있었고, 미국이나 일본은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미국과 영국은 부단체장의 기능이 기획·자문에 가까웠으며,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은 집행 기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표 5-12〉 주요 국가의 부단체장 유형 구분

부단체장의 기능 운영의 중심	기획·자문 기능	⇔	집행 기능
단체장 ⇕ 의회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일본 가나가와
	영국 런던 영국 레스터		프랑스 파리 프랑스 마르세유 독일 베를린 중국 베이징

자료: 윤영근 외(2014), p.80.

- 그러나 미국도 로스앤젤레스는 기획·자문 기능이, 뉴욕은 집행기능 중심으로 다양하며, 프랑스와 독일은 집행기능 위주지만 분야에 따라서 기획·자문 기능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실들은 부단체장 제도 운영이 각국의 정치·행정 환경이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 우리나라 광역시 부단체장 운영 유형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부단체장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지금까지 부단체장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 ⑤항에 규정된 것처럼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을 조례로 정하는 정도였음
-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조례에 나타난 부단체장 역할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13〉 광역시의 부단체장 사무분장

광역시	부단체장 사무분장
부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시장)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개정 2018. 11. 7>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 9> - 행정부시장 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 다만, 경제부시장의 분장사무는 제외한다. 나. 시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 - 경제부시장 <개정 2019. 1. 9> 가. 성장전략본부,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해양농수산국 및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9> 나.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대구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③ 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혁신성장국, 교통국 및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인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 (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둔다. <개정 2014-12-15> <개정 2016-07-13> <개정 2018-10-08>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6-07-13> <개정 2018-10-08> -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5> <개정 2016-07-13> <개정 2018-10-08> -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및 도시균형계획국<개정 2016-05-19>(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개정 2018-10-08)

광역시	부단체장 사무분장
대전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③ 정무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삭제 <2018. 10. 5.> 8. 그 밖에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광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문화경제부시장을 둔다. <개정 2018. 7. 24.>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문화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24.>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③ 문화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24.> 1.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전략산업육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 27., 2016. 1. 1., 2018. 7. 24.> 나. 국비관련 및 국책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 15.> 다. 일자리경제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7. 27.>, <개정 2014. 9. 1., 2016. 1. 1., 2018. 7. 24.> 라. 문화관광체육실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7. 24.> 마.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1.>, <개정 2018. 7. 24.>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울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부시장) 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광역시	부단체장 사무분장
	② 행정부시장은 시 행정사무(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일자리경제국,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 문화관광체육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 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부단체장은 정무부시장의 명칭 정도만 다르고, 대동소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다만, 행정부시장의 사무는 ‘행정사무 총괄’과 ‘공무원 지휘·감독’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정무부시장은 ‘경제부시장’처럼 그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특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서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정책 기획 수립 및 그 밖의 정무적 업무로 정한 것과 관련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부시장을 1명 더 증원한다고 하면, 기존 행정과 정무업무 중 어느 부분을 분담하는 것이 적합한지 결정하여야 함
-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없으며, 앞의 <표 5-12>에서 보듯이 세계 각국에서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3. 해외 사례

☐ 미국 New York

- 뉴욕은 뉴욕시 헌장에 의해 시장의 권한으로 부시장을 임명하며, 부시장 정수는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변적임
- 뉴욕은 2011년부터 6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으며, 부시장 각자가 고유한 업무 영역의 책임을 지는 형태임
- 우리나라의 행정부시장과 같은 역할은 제1부시장(First Deputy Mayor)이 맡고 있으며, 법무, 경제, 운영, 정무, 보건복지 분야에 부시장을 두고 있음

〈표 5-14〉 뉴욕시 부시장의 업무분장

명 칭	세부 업무분장
제1부시장 (First Deputy Mayor)	- 시 전반에 걸친 행정·경영·정책적 문제에 대해 시장에게 조언 - 질병, 부재 등 일시적으로 시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뉴욕시 헌장 10조의 사유) 시장의 권한 대행 - 관할부서: 문화국, 공원·여가국, 디자인·건설국, 소비자국, 의전부서, 여성위원회, 퇴역군인지원부서, 그 외 다른 부시장에 속하지 않는 국·부서·위원회 등
법무 부시장 (Deputy Mayor for Legal Affairs)	- 법률적 문제에 대해 시장에게 조언 - 관할부서: 인권위원회, 가정폭력방지부, 장애인부, 이민부 등
경제개발 부시장 (Deputy Mayor for Economic Development)	- 경제개발, 경제환경 개선, 기업유치, 에너지, 관광, 스포츠, 방송,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해 시장에게 조언 및 지원 - 경영 부시장과 협력하여 조세, 연금정책에 대해 시장에게 조언 및 지원 - 관할부서: 도시계획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국, 소기업지원국, 주택보전 및 개발국, 교통국, 재무국, 기업유리위원회, 연금·투자부, 경제개발협력부 등
운영 부시장 (Deputy Mayor for operation)	- 인사, 관리업무와 관련된 정책 개발 및 감독·조정 - 시장의 경찰, 소방, 비상관리, 예산·회계, 노동 담당 기관 관리를 지원 - 경제개발 부시장과 협력하여 조세, 연금정책에 대해 시장에게 조언 및 지원 - 관할부서: 건설국, 행정서비스국, 환경보전국, 정보통신국, 하수도국, 기록·정보국, 계약부, 운영부, 환경협력부, 환경개선투자, 장기계획 및 지속가능부
정무 부시장 (Deputy Mayor for Government Affairs and Communication)	- 시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의회와의 관계 조정(입법, 예산 등 포함) 및 연락업무 담당 - 소통 전략 수립 지원 - 관할부서: 정부간업무담당부, 시 입법담당부, 주 입법담당부, 연방담당부
보건복지 부시장 (Deputy Mayor for Health and Human Service)	- 보건 및 복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 관할부서: 보건국, 노숙자지원국, 인적자원관리국, 사회복지국, 교정국, 보호관찰국, 아동국, 노인국, 가족조정관, 식품정책조정관, 경제적기회제공센터, 아버지서비스조정관

자료: 행정안전부(2017) 내부 자료.

□ 영국 London

-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치·행정적 성격으로 인해 부시장 제도 운영에 서도 의회중심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

- 런던시 부시장은 런던광역시장이 런던광역시의회 의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직위에 대해서도 시장이 결정, 공고하여 임명함(GLA act 제49조)
- 2014년 기준으로 런던시 부시장은 총 7명이며, 법정부시장(Statutory Deputy Mayor)이 우리나라의 행정부시장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택·토지자산, 교통, 치안, 정책기획, 산업, 교육·문화 분야에 부시장을 두고 있음

〈표 5-15〉 런던시 부시장의 업무분장

명 칭	세부 업무분장
법정 부시장 (Statutory Deputy Mayor)	- 대외적으로 시장을 대신하는 부시장의 역할 - 런던 치안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위원
주택·토지자산 부시장 (Deputy Mayor for Housing, Land and Property)	- 주택정책의 개발과 운영 - 런던의 토지와 자산의 활용전략 수립 -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 관리
교통 부시장 (Deputy Mayor for Transport)	- 교통 문제에 대한 정책조언과 의사결정 - 런던과 도시철도회사(TfL) 간 관계 감독, 교통시스템 개선
치안 부시장 (Deputy Mayor for Policing and Crime)	- 시장실의 치안국의 책임자로 런던의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정책기획 부시장 (Deputy Mayor for Policy and Planning)	- 시장실의 참모장(Chief of Staff) - 최상위 수준의 정책과 전략, 예산안에 대해 시장에게 조언 - 시장의 대변인 역할,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산업 부시장 (Deputy Mayor for Business and Enterprise)	- 산업 부분의 정책과 전략, 집행 등에 대한 조언 - 환경, 건강, 기획 위원회 위원
교육·문화 부시장 (Deputy Mayor for Education and Culture)	- 시장의 교육과 문화부문 정책수립과 집행에 조언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창구 역할

자료: 윤영근 외(2014), p.24~25.

□ 프랑스 Paris

- 프랑스는 의회 의원의 겸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특징이 있으며, 파리시 역시 의회 의원들이 부시장을 겸하고 있음
 - 프랑스는 법률로써 부단체장 정수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30% 이하로 정하고 있음(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조)
 - 구체적인 부단체장의 정수는 지방의회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파리시의 경우, 각 정당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 중에서 사전에 지명되는 것이 정치적 기본 노선이고, 이에 근거해서 파리시의회는 부단체장의 수를 의결하여 투표로 선출하였음
 - 2014년의 경우 선출된 총 파리시 의원은 163명이고, 의회-시장 통합형 지방정부 구성 원칙에 따라 다수당의 대표지방의원 중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Anne Hidalgo와 21명의 부시장(Adjointe au Maire de Paris)으로 파리시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21명의 부시장은 파리시 행정업무 중 도시개발, 건축, 지역발전, 환경, 기후변화, 교통, 재정, 안전, 주택, 문화, 사회복지 등에 대한 개별적인 행정권을 위임받아 행정책임을 행사하면서 파리시장의 시 업무를 보좌하는 형태임
 -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주로 각 국(Direction)의 업무에 따라서 부시장의 업무(기능)를 분담
 - 파리시도 제1부시장을 두고는 있으나, 파리시의 부시장들은 우리나라의 실·국장의 역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東京

- 일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부단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부단체장 1인을 두며, 정수는 조례로 증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경도 부지사의 정수 조례」는 4명의 부지사를 두고 있음

- 부지사의 직무(일본 지방자치법 제167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장 보좌, 장의 보조기관인 직원이 담당하는 사무를 감독,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의 직무 대리 등임
- 동경도 부지사의 업무분장 [도쿄도 부지사의 담임사항(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음

〈표 5-16〉 동경 부지사의 업무분장

구 분	세부 업무분장(2016.4.)
제1부시장	- 국가와 조정 업무 - 관할 국: 정책기획국, 생활문화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항만국, 교통국, 수도국, 하수도국 - 행정위원회 등과 연락: 교육위원회, 수용위원회
제2부시장	- 방재·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 타마도서(多摩島嶼) 진흥에 관한 사항 - 관할 국: 총무국, 재무국, 주세국, 환경국, 복지보건국, 산업동국, 회계관리국, 동경소방청, 청소년·치안대책본부, 병원경영본부 - 행정위원회 등과 연락: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公安위원회, 노동위원회
제3부시장	- 시장운영전략본부에 관한 사항 - 관할 국: 산업노동국 산하 중앙도매시장(中央卸売市場)
제4부시장	-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된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관할 국: 올림픽·패럴림픽준비국

자료: 행정안전부(2017) 내부 자료.

□ 시사점

- 주요국의 부단체장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제도의 운영 방식은 다양하지만, 부단체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되, 정책적 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행정부시장처럼 업무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경우는

없음

-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한 확실한 책임 부여, 정책적 보좌 이 두 가지가 선진국들의 부단체장 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개정 후 부단체장 운영 방향도 기존 행정부시장의 모호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여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고,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은 우선 사무 분장 측면과 증원된 부단체장 간 직무대리 순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함

4. 부단체장 역할 정립 방안

☐ 사무 분장

- 현재 광주광역시의 부시장은 행정부지사 1인과 2018년 7월 개편된 문화경제부시장 체제임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관광체육실, 일자리경제실, 전략산업국, 수영대회지원본부를 관할하며 기타 정책보좌 역할을 맡고 있음
- 그 외 문화경제부시장 소관 이외의 업무를 행정부시장이 담당함
- 부시장을 1명 증원하는 경우 문화경제부시장은 그대로 두고, 현재 업무범위가 넓은 행정부시장 소관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1안)과 행정기능을 재검토하여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2안)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5-1〉 광주시 조직구조



○ (1안) 행정부시장 소관 업무 분담

- 기존 행정부시장을 실질적인 제1부시장으로 정하고, 시정 기획·운영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부시장 명칭은 ‘행정안전부시장’으로 칭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시장 소관 업무는 광주시의 기획과 행정,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민주인권평화국, 복지건강국, 소방안전본부등을 배치할 수 있음
- 신설되는 제2행정부시장은 ‘도시환경부시장’으로 칭하고, 환경생태국, 도시재생국,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교통건설국 등을 배치할 수 있음
- 문화경제부시장은 현재와 같이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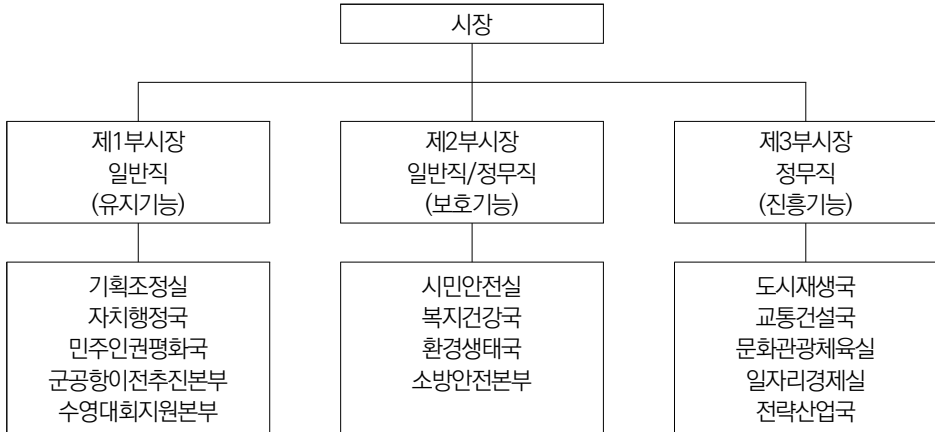
〈그림 5-2〉 행정부시장 소관업무 분담 (제1안)



○ (2안) 행정기능 재설계 후 배치

- 두 번째 대안은 광주광역시의 행정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부시장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것임
- 도시의 기능을 유지, 보호, 진흥으로 구분하고 유지기능은 전통적인 행정부시장의 업무로 설정하여 제1부시장으로 두고, 보호기능과 진흥기능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각각 제2부시장, 제3부시장으로 함
- 유지기능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민주인권평화국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수영대회지원본부를 배치함
- 보호기능은 시민안전실, 복지건강국, 소방안전본부, 환경생태국을 배치함
- 진흥기능은 도시재생국, 교통건설국, 문화체육관광실, 일자리경제실, 전략산업국을 배치함
-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부시장은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으므로, 유지기능을 담당하는 제1부시장은 일반직으로 하고, 보호기능과 진흥기능을 담당하는 나머지 부시장들은 정책기능을 고려하여 정무직으로 둘 수도 있음

〈그림 5-3〉 행정기능 재설계 후 배치 (제2안)



□ 직무 대리

〈표 5-17〉 현행 지방자치법의 직무대리 규정

[지방자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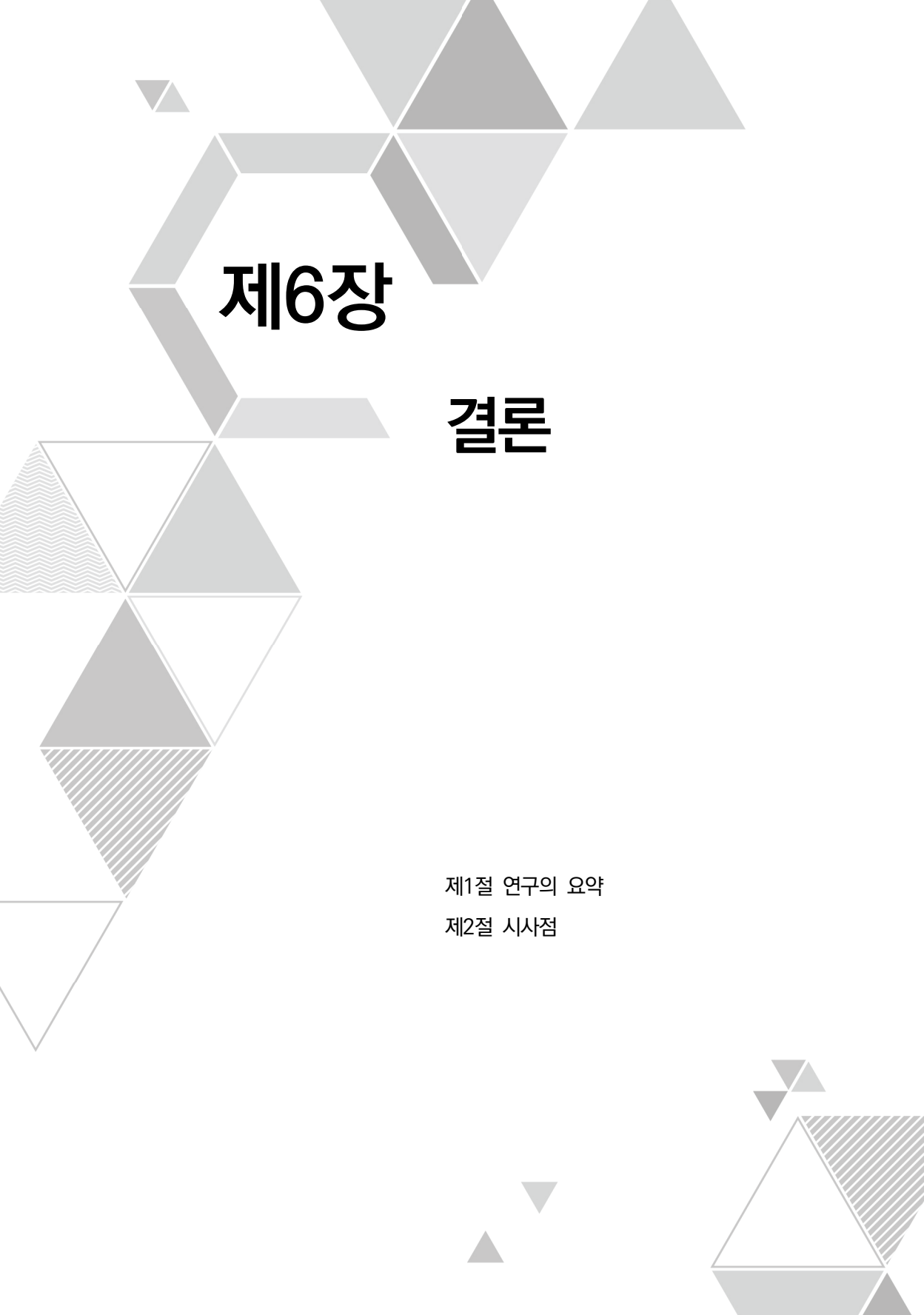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⑤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1. 2.>

-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부단체장을 3명 두는 경우 행정(1), 행정(2), 정무 순으로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광역시 조례로 부단체장을 1명 더 둘 수 있고,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무직 부단체장이 2명 있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

- 단체장의 직무 대리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시장이 우선하고, 정무직 부시장이 2명인 경우에는 조례를 근거로 임명된 부시장을 가장 후순위 직무대리자로 지정함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시사점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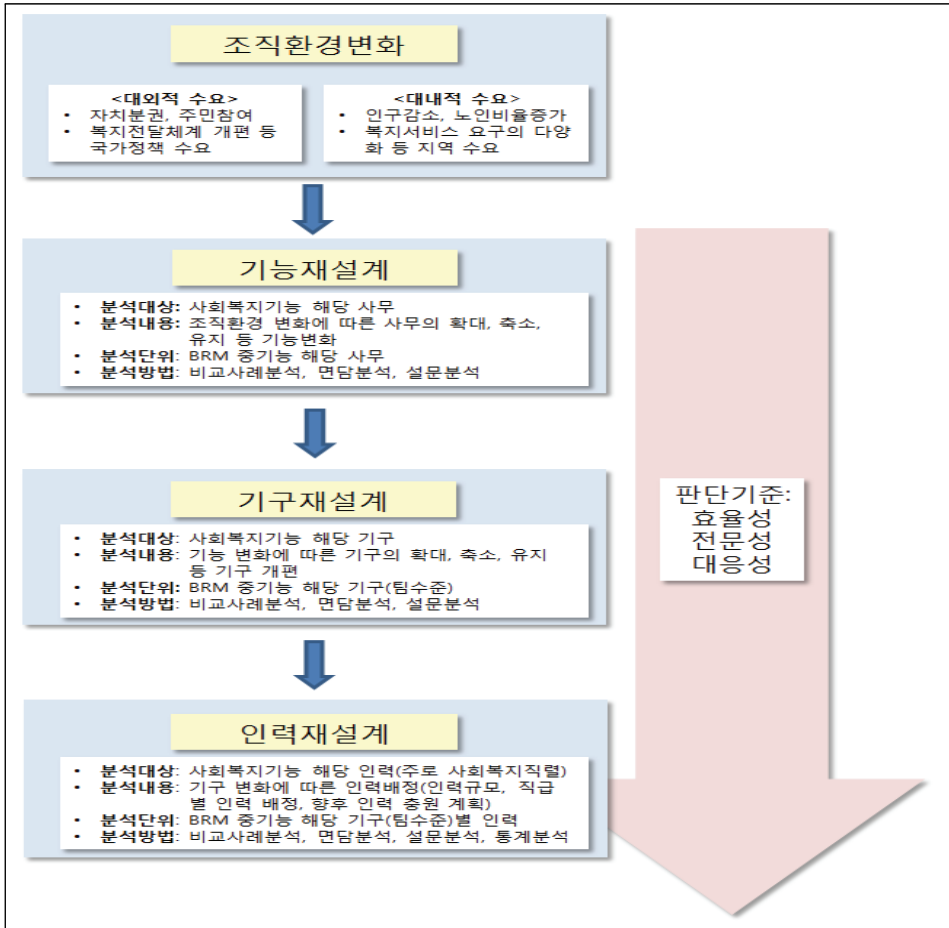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재검토해보고, 이에 부합하는 기구 재설계 및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최근 수도권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복지기능은 기존의 지원 중심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치분권 기조가 강화되고 주민 참여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분절적인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통합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기능을 재설계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역지자체의 기존 사회복지행정 업무는 주로 중앙의 예산을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집행적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하였으나 자치분권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사회복지행정 영역에서도 기획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사회복지기능 수행의 적정 기구 설계와 이에 따른 적정 인력 규모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2. 연구 방법

- 조직환경변화에 따른 복지기능재설계와 이에 부합하는 광주광역시의 적정 기구 및 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복지기능재설계는 지자체 BRM의 중기능 수준에서 분석할 예정이며, 이에 부합하는 적정 기구 및 인력 재설계 방안은 현행 팀수준에서 제시할 예정임

〈그림 6-1〉 본 연구의 분석틀



3. 연구 결과

□ 지자체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직적 전달체계상의 복지수행 현황 및 유사지자체의 조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에 비해 기획·계획 기능은 약하면서 기초지자체에 비해 집행 사무의 포괄범위가 좁으나 광역도에 비해 광역시의 경우 관리감독 강화 수요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
 - 기획기능 강화 및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타 광역지자체와 기구 및 인력 규모 비교 결과, 광주광역시는 평균 기구 수 4.6개에 못미치고, 사회복지직렬 인력 수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임

〈표 6-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수행 현황 요약

구분	분석 결과	검토사항
수직적 전달체계 비교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수행 기구는 총 29개 과이며, 광주광역시는 4개의 과급 기구에서 수행, 기초지자체인 광산구청에서는 5개과에서 수행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사무의 종류와 양은 중앙정부 또는 기초지자체에 비해 다소 적음 - 중앙정부에 비해 기획·계획 기능은 약하면서 기초지자체에 비해 집행 사무의 포괄범위가 좁음 ■ 법령 검토 결과 지자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동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대다수이므로 광역과 기초의 업무 배분 방식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음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분야 적정 사무의 범위 검토 ■ 기획기능 강화 필요 ■ 광역시의 경우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필요 여부 검토
유사지자체 조직 비교 분석 결과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 수행 기구수는 평균(4.6개)에 약간 못미침 ■ 광주광역시와 유사하게 4개의 과급 기구를 설치한 지자체들은 과별 기능편제 방식이	■ 기구편제의 유사성이 복지 수요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한 검토 ■ 복지수요의 차별성에 따른

구분	분석 결과	검토사항
	거의 유사함 ■ 광주광역시: 광역지자체 평균에 비해 사회복지지력 비율이 낮음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사하거나 약간 높음)	기구 편제 차별화 검토

□ 자치분권 강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조직재설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능재설계 모형은 다음과 같음
 - 조직환경 분석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환경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성과지향적 조직 설계를 목적으로 하며, 복지분야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검토하고, 복지수요를 나타내는 지표 추이 및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게 됨
 - 기능 분석은 현재 광주광역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 중 위탁, 타부서이관, 확대·축소·폐지, 신설 기능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효율지향적 조직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표 6-2〉 기능재설계 모형

구분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성과 지향적 조직 설계 목적 (조직환경 분석)	■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 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	- 문헌분석
	■ 광주광역시 복지수요 분석 - 지표별 복지수요 분석 - 공무원 인식 조사	- 통계분석 - 유사지자체 비교분석 - 공무원 설문 조사
효율지향적 조직 설계 목적 (기능 분석)	■ 기능 분석 - 위탁기능 분석 - 이관 기능 분석 - 확대·축소·폐지 기능 분석 - 신규 기능 분석	- 공무원 설문 및 면담 조사 - 전문가 FGI

-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기능과 관련된 환경분석 결과, 조직재설계를 위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사

- 업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이를 대응할 적정 조직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광주광역시의 복지수요지표 분석 및 공무원 설문 조사 결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요, 노인복지, 일자리 수요 등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빗고을 50+일자리 지원사업, 광주형 노인복지 최소보장제도, 빗고을·효령노인복지타운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은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사무는 광역이 담당하는 반면, 일선에서의 집행은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주시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성 있는 기획기능,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및 외부자원 활용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6-3〉 환경분석 결과

구분	분석 내용	검토 사항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측면	■ 사회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현황 - 사회서비스원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 광주광역시에서도 2020년 7월 사회서비스원 개원 예정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수행 관련 대응 조직 적절성
광주광역시 복지수요 측면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수요 - 복지수요지표 분석 및 공무원 설문 조사 결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요, 노인복지, 일자리 수요 등이 증가 예상	■ 광주광역시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 적절성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환경분석 결과, 국정과제 및 광주시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획기능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조정 기능이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기능분석 결과, 기능위탁 2개, 기능강화 23개, 기능신설 4개, 기능조정 이관할 기능과 이관받을 기능 각각 1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6-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능 재설계 방안

실국명 (기관명)	구분		기능위탁	기능강화	기능 축소·폐지	기능신설	기능조정(이관)	
	과명	담당명					→	←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 여성가족정책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보육		• 보육시설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평가인증조력지원사업 • 어린이집 지도점검 • 어린이집 안전관리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긴급 아이돌봄 센터 운영	• 사회복지법인 관리(사회복지 과)	
		가족복지		•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가족센터 설치, 운영		
		저출산아동		• 돌봄 기능 • 인구정책 컨트를 기능 • 출산장려 업무 • 보호종로아동 자립지원				
		복지정책		•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한 기획기능 •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익성 증가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		• 자활근로사업				• 사회공헌지원 및 기부금 관련 업무(자치 행정과)
		보훈복지						

실국명 (기관명)	구분		기능위탁	기능강화	기능 축소·폐지	기능신설	기능조정(이관)	
	과명	담당명					→	←
		다문화가족		- 외국인 지원 업무 -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업무				
		고령사회정책		-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복지		커뮤니티케어 사업 적극 추진				
		노인시설지원						
		노인문화지원	도심 내 모자공원 관리 및 운영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원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시설						
		장애인재활지원						
합계			2개	23개	0개	4개	1개	1개

□ 보건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인력 운용 방안

○ 보건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기구 운용 방안

- 환경분석 결과와 기능분석 결과, 유사지자체 분석 결과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적정 기구 개편안을 제시하였음

〈표 6-5〉 기구재설계 검토 결과

구분	검토내용
국단위	• 검토내용없음
과단위	• 검토내용없음
팀단위	• 저출산아동담당 팀 분리 및 명칭 변경 - 최근 중요해지는 인구정책은 기획 업무의 특성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저출산아동담당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아동정책 업무의 집행 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의 팀(인구정책)으로 분리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은 법무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담당은 아동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아동권익보호 업무를 포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담당으로 명칭 변경 필요 • 법인시설관리담당 신설(사회복지과 소속)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기능과 더불어 점검 기능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업무 수행이 현재 체제로서는 원활하지 못하므로 지도감독 기능 확대 및 시설점검메뉴얼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팀 신설 필요 - 부산(법인시설지도팀), 경북(법인시설지도팀)에서 유사 팀 운영 • 사회서비스혁신TF 신설(사회복지과 소속) - 사회서비스원 설립, 커뮤니티케어 등 여러 부처 및 여러 민간 주체들과 협의의 필요성이 있는 국정과제에 대비한 업무 수행 담당을 위해 팀 신설 필요 - 복지정책담당이 수행하였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등의 업무 등을 이관하여 복지정책담당 업무량 조정 및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 통합 운영 • 다문화가족담당 이관 및 통폐합(사회복지과 → 여성가족정책관) - 현재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설립 관련 업무를 신설 지역복지담당에 이관한 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합쳐가는 현재 중앙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하여 가족복지담당과 통폐합 고려 필요 - 다문화가족담당 업무에는 고려인주민, 외국인(학생, 근로자) 지원 업무도 포함되므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다문화'로 명칭 변경²⁹⁾

구분	검토내용
부서명칭개선	- 장애인시설담당명칭 변경 - 장애인자립기반담당으로 명칭 변경(요청사항) : 최근 장애인일자리지원 업무가 배정되어 기존 업무와 추가된 업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의 변경 요청

〈표 6-6〉 최종 기구재설계안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구분			변경사항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변경사항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	여성가족 정책관 (정책기획 관실)	여성정책	이관·통폐합 팀분리
		보육			보육	
		가족복지			가족다문화	
		저출산아동			아동복지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신설
		-			법인시설관리	
		생활보장			생활보장	
		보훈복지			보훈복지	
		다문화가족			-	
		-			사회서비스혁신 TF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고령복지			고령복지	
		노인시설지원			노인시설지원	
		노인문화지원			노인문화지원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명칭변경
		장애인시설			장애인자립기반	
		장애인재활지원			장애인재활지원	

29) 대구광역시 ‘가족다문화팀’이 유사사례임

○ 보건복지기능 재설계에 부합하는 광역지자체 인력 운용 방안

- 기구재설계 결과와 유사지자체 비교 분석,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적정 인력 배분안을 제시하였음

〈표 6-7〉 조직개편이전 인력배분 검토결과

구분			현원 (2019.6월 현재)	검토내용 (추가 인력 요청사항)	검토결과 (*현원기준)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6명	• 여성재단 지도·감독 전담, 성별영향평가 업무 등의 업무량은 다소 중복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여성정책 발굴 등 기획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1명 배치	7명
		보육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가족복지	4명	(아래에서 검토)	-
		저출산아동	8명	(아래에서 검토)	-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7명	(아래에서 검토)	-
		생활보장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보훈복지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다문화가족	3명	(아래에서 검토)	-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고령복지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노인시설지원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노인문화지원	4명	(검토사항 없음)	4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장애인시설	4명	• 장애인일자리 업무 추가에 따른 추가 인력 배치 필요	5명
		장애인재활지원	5명	(검토사항 없음)	5명
합계			73명		

〈표 6-8〉 조직개편이후 인력배분 검토결과

구분			검토내용 (신설팀 중심)	최종 인력재배분 결과 (*현원기준)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	여성가족 정책관	여성정책		7명
		보육		5명
		가족다문화	- 가족다문화팀은 다문화가족팀에서 수행 하던 사회서비스 설립 업무만을 제외하고 가족복지팀과 다문화가족팀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함 - 여성폭력방지법 등의 개정으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나 다문화가족팀의 인력(팀장 제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7명
		아동복지	- 기존의 저출산아동팀이 인구정책팀과 아동복지팀으로 분리되는 상황이나 기존의 저출산아동팀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 정도에 불과함 - 현재 주로 수행하는 아동지원업무, 돌봄 시설관리 업무에 더하여 아동학대방지 업무가 확대 추세에 있는데 이는 단순 집행 업무가 아닌 조정 등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이어서 업무량(또는 업무강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팀분리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력 유지	8명
		인구정책	인구정책 업무는 정책의 중요성은 높으나 구체적인 업무를 기획하는 단계이므로 많은 인력보다는 기획능력이 있는 소수 인력으로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2명
복지 건강국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커뮤니티케어 사업 등의 업무가 신설팀에 이관되므로 현재 인력으로 업무량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됨	7명
		법인시설관리	- 법인시설을 전담하여 지도관리하는 유사지자체(대구, 대전, 인천)의 기구의 인력 규모는 3명에서 5명 정도임 - 타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광주시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담 기구를	3명

구분			검토내용 (신선팀 중심)	최종 인력재배분 결과 (*현원기준)
실국명 (기관명)	과명	담당명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므로 우선적으로 3명을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활보장	-	5명
		보훈복지	-	4명
		-	-	
		사회서비스혁신TF	- 광주시에서는 내년 7월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할 전담팀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팀에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으나 업무의 성격이 여러 주체들과 밀도있는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기존의 집행 위주의 업무와 차별화된 성격이 있으므로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전담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커뮤니티케어 업무,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 팀의 업무량 조정 및 사회서비스 업무의 유기적 통합성을 기하고자 함(타지자체 운영 사례 참고) - 현재는 최소 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명
	고령사회 정책과	고령사회정책	-	5명
		고령복지	-	4명
		노인시설지원	-	4명
		노인문화지원	-	4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	5명
		장애인자립기반	-	5명
		장애인재활지원	-	5명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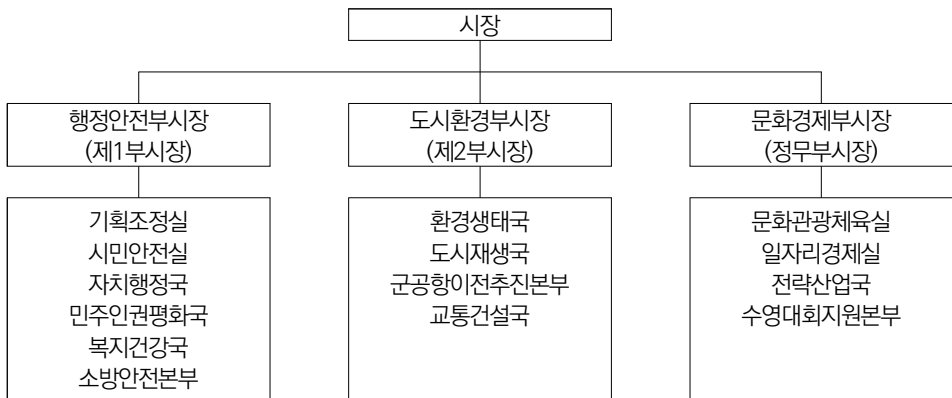
□ 신설 부단체장 역할에 대한 검토

-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제도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민선 단체장 선출을 앞 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비되었으며, 최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부단체장 정수 확대를 예정하고 있음
 - 당시 법 개정으로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를 2명씩 둘 수 있게 되었음
 - 2000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인구 80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지금까지 부단체장 제도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그동안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부단체장 정수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부단체장 역할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전문성 보좌역할, 정치적 보좌역할, 매개자적 보좌역할, 독자적 역할 등으로 유형화되거나(이경훈, 2001), 부단체장 운영의 중심이 단체장과 의회 가운데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그리고 기획·자문과 집행 기능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있음(윤영근 외, 2014)
 - 우리나라에서 부단체장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부단체장은 정부부시장의 명칭 정도만 다르고 대동소이함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의 부단체장 제도를 살펴본 결과, 부단체장 운영이 각국의 정치·행정 환경이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주요국의 부단체장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제도의 운영 방식은 다양하지만, 부단체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되, 정책적 지원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 후 부단체장 운영 방향도 기존 행정부시장의 모호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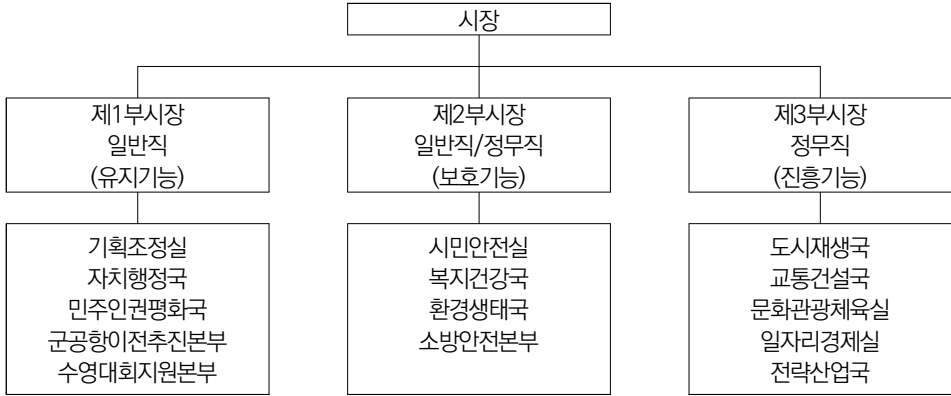
범위를 세분화하여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고,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광주광역시 부시장은 행정부지사 1인과 2018년 7월 개편된 문화경제부시장 체제임
- 부시장을 1명 증원하는 경우 문화경제부시장은 그대로 두고, 현재 업무범위가 넓은 행정부시장 소관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1안)과 행정기능을 재검토하여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2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제1안) 행정안전부시장 소관 업무는 광주시의 기획과 행정,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민주인권평화국, 복지건강국, 소방안전본부 등을 배치, 신설되는 제2행정부시장은 '도시환경부시장'으로 칭하고, 환경생태국, 도시재생국,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교통건설국 등을 배치
- (제2안) 도시의 기능을 유지, 보호, 진흥으로 구분하고 유지기능은 전통적인 행정부시장의 업무로 설정하여 제1부시장으로 두고, 보호기능과 진흥기능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각각 제2부시장, 제3부시장으로 하되, 제1부시장은 일반직으로 하고, 보호기능과 진흥기능을 담당하는 나머지 부시장들은 정책기능을 고려하여 정무직으로 둘 수도 있음

〈그림 6-2〉 행정부시장 소관업무 분담 (제1안)



〈그림 6-3〉 행정기능 재설계 후 배치 (제2안)



제2절 시사점

- 본 연구는 자치분권 강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능 수행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 및 인력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사회복지기능 수행에 있어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관한 거의 최초의 연구임
- 특히,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사회복지기능에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광역지자체의 대응이 개편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님
- 그러나 광역지자체는 여전히 기초지자체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 업무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에는 지자체의 수요를 더욱 정밀히 분석하여 지역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타지자체와 차별되는 기획 업무 차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광역도와 달리 광역시는 주민들과 다소 밀접한 거리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복지 수요가 있는바, 특히 지원 위주의 복지 기능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부족할 수 있는 지도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영주·최지민. (2018).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 설계 및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권.
- 강혜규. (201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기능 -실태와 과제」. 지방행정 65권753호.
- _____. (2016). 「복지부문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 분담의 과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6권2호.
- _____. (2006). 「지방화시대의 중앙 지방 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강혜규·박해육·김은정·박경희·최현수·전봉기·장은진. (2011).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 규모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강혜규·박세경·함영진·이정은·김태은·최지선·김보영·John Hudson·Aniela Wenham. (2016).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 (201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154호(2012-35).
- 고승연. (201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 현대경제연구원: 서울.
- 고종환. (1999).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3권1호.
- 김승연·장동열. (2017). 「사회복지분권을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2호.

- 김이배. (201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렬통합 논의의 쟁점과 향후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진우 외. (2009).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맞춤형 기능조정방안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덕성여대산학협력단.
- 김찬우. (2015). 고령장애인의 개념 정립과 복지욕구 비교를 통한 돌봄 서비스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고찰. 「비판사회정책」. 제46호. pp.164-200.
- 문경삼·박철민. (1998).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 분담실태 -재정지출구조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2권2호.
- 박광덕. (1999). 「중앙- 지방간 사회복지사무배분의 실태와 과제」. 자치발전 1999권 11호.
- 박혜자. (2008). 「보건복지행정의 기능과 재정분담에 있어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권3호.
- 백정현. (2007).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20호.
- 선우덕 외. (2007). 「노인복지시설 및 인력의 기능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소순상. (2002).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과정과 평가, 그리고 방향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6권4호.
- 신지연. (2005). 「지방자치시대 보육인력정책의 과제와 방향」. 아동복지연구 3권3호.
- 심윤무. (2018). 「전문적 복지수행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효율적 인력운용 방안(1)」. 자치발전 2018권3호.
- 심재신. (2001). 「사회복지행정의 인력관리 上·下」. 자치발전 2001권7호.
- 양봉민·김진현. (1992). 「중앙-지방 정부간 보건행정기능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방안」. 보건행정학회지 2권2호.
- 윤영근·박해육·안영훈. (2014). 「해외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제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 윤영진. (2010).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성격에 관한 논고. 「사회서비스연구」. 1: 9-32.
- 이미옥·명성준. (2015).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 이상림. (2014). 「저출산 대응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보건복지포럼 213권.
- 이상수. (2000).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어떤 사무가 이양되어야 하는가? 보건복지분야에 있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 사무」. 자치발전 2000권3호.
- 이재호. (2016). 「사회복지체계 정부조직 기능과 인력 재조정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2호.
- 이현주. (2019).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역사와 현 단계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327-328.
- 전광희. (2017). 이탈리아의 초저출산과 정책부재의 원인. 「사회과학연구」. 28(3): 57-77.
- 정경배·이성기·권선진. (1993).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정책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경희. (2009).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0권 제 156호. pp.6-14.
- 정성호. (2013).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한국인구학」. 36(2): 27-44.
- 정용덕. (2001). 한일 중앙-지방정부간 국가기능 배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공선택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2): 1-23
- 정홍원. (2013). 「지역사회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기능 강화」. 보건복지포럼 195권.
- 주상현. (2006). 「지방정부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현황과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0권 1호.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 「국가사무 수행체계 및 지방이양 대상사무 연구: 고용,

- 복지, 산업 분야 위탁사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최영·김슬기. (2017).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60: 59-86.
- 최은희 외. (2017). 「지방자치단체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통합방안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권 2호.
- 최진수 외. (2011). 「도시별 복지기능 특성 연구」. 통계연구 18권
- 최진혁. (2016).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정부기능과 지방재정의 대응역할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2016권 6호.
- 한국유럽학회(편). (2011). 「유럽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책」. 유럽학연구총서.
- 한국행정학회. (2016).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Theodore J. Lowi,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roy", World Politics, Vol.16: 677-715.

부록

□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광주복지혁신포럼 추진과정

추진 과정

1.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18. 11. 27. 경제·산업, 시민사회, 복지, 환경, 청년, 언론 등 각계 혁신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시정전반에 대한 혁신정책을 제안·자문, 조정하는 시장직속기구로 출범함.
2. '19. 4. 16.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요청에 따라 복지 혁신 권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복지혁신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 심의 승인함.
3. 「복지혁신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 4. 16. ~ 6. 16.까지 집중토론(7회), 포럼(2회), 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설문조사(4차례), 현장 간담회(1회) 등을 실시하여 복지혁신 권고안을 마련함.
※ 복지혁신포럼(2회)은 광주광역시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함.
4. '19. 6. 21. 「복지혁신특별위원회」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이 반영된 복지 혁신안을 마련하여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 상정함.
5. '19. 6. 24.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복지혁신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복지 혁신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에 권고하기로 채택함.